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2008. 2

손원익 · 박태규

서 언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정부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욕구의 일부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충족될 때 정부재정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비영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민간기부가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민간기부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민간기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간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민간기부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기부를 구성하는 개인기부와 기업기부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민간기부의 현황, 결정요인, 그리고 민간기부의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 민간기부에 대한 학계의 연구의 시발점이 되고,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박태규 교수가 본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본 연구원의 손원익 박사와 공동연구한 결과이다. 연구진들은 본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해준 송은주 주임연구원과 원고정리 및 편집에 도움을 준 이현영 연구행정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유익한 논평을 제공한 익명의 심사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 성 현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민간기부의 현황에서부터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기업기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세제의 기업기부에 대한 효과 및 기업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최근에 개정된 세제를 포함하고, 주요국의 기부 및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를 소개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국별로 정리된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1. 개인기부 및 기업기부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에 대한 폭 넓은 심층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부 동기 및 세제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 기부의 소득공제 한도(현재 소득의 5%) 때문에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윤극대화 모형에서도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즉,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개별 기업의 기부규모와 당해기업의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들의 예상 기부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대효과를 산출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기부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소득,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그리고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개인기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은 개인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외국의 연구들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반드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기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앞서 설명한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특정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대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총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기부참가율, 개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자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활동에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로

1)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공제제도가 기부에 미치는 효과는 2002년의 자료분석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6th ISTR Conference, Toronto, Canada, 11-14 July 2004 참조.

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동시에 주는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공익적 활동에 자신들의 시간을 기부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금전적 기부인 기부활동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 보다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개인들의 기부금액뿐 아니라 전체 개인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선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기부활동에 이미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대

2) 자원봉사와 기부참가율, 기부금액에 대한 영향은 1999년과 2001년의 자료분석에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규·정영석(2003),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참조.

부분 간헐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정기적인 기부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이미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기부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가.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개인기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과 기부금액에 조세혜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비율이 5%에서 10%로 증가한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세 법상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비율이 5%로 한정되었다가 200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10%로 상향조정되면서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부금 악용의 사례가 숫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이는 기부문화 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허위,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나. 자선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인기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선단체를 비롯한 기부의 대상 기관들의 투명성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선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자격을 받는 경우에는 재무회계상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³⁾.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자선적 단체들의 경우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사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단체의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해 가산세를 상향 조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정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자선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경험이 개인들의 기부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뿐 아니라 기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3)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토록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되어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법적 지위 획득,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제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9
II. 기부금 지출 현황	27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 현황	27
가. 개인	27
나. 법인	28
다. 기타	34
2. 주요 외국의 기부금 지출 현황	37
가. 미국	37
나. 영국	40
III.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44
1. 우리나라	44
가. 기부금 관련 세제	44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47
2. 미 국	48
가. 기부금 관련세제	48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56
3. 영 국	59
가. 기부금 관련 세제	59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66

4. 일 본	67
가. 기부금 관련 세제	67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69
5. 프랑스	71
6. 독 일	73
7. 대 만	75
8.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	76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78
1. 우리나라	78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78
나. 정보 공개제도	80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82
라. 기부금 관리제도	85
2. 미 국	87
가. 비영리단체의 범위	87
나.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관리제도	89
다. 정보공개제도	92
3. 일 본	97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97
나. NPO법인	98
다. 인정 NPO법인	107
라. 공익법인	113
V. 개인기부의 현황과 분석	119
1. 개인의 기부 동기	120

가. 순수공공재 모형(pure public good model).....	121
나. 사적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	123
다. 비순수공공재 모형(non-pure public good model).....	125
라. 기부대가 모형.....	127
2. 개인기부행위 요인분석.....	128
가. 모형의 설정과 주요 변수.....	128
나. 2000년 조사자료의 분석.....	133
3.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154
가. 기부횟수 분석의 의미와 분석방법.....	154
나. 2001년 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 분석.....	156
다. 2005년도 기부조사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162
VI. 기업의 기부.....	167
1. 기업의 기부 관련 선행연구.....	167
가. 이론적 분석.....	167
나. 실증적 분석.....	171
2. 실증분석	175
가. 자료.....	175
나. 모형 및 변수.....	176
다. 방법 및 결과	180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87
1.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190
가.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191
나. 자선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192
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194

2. 법인기부에 대한 정책시사점.....	195
참고문헌.....	197
부록: 개인기부에 대한 자료.....	205
1. 한국에서의 개인기부 설문조사자료.....	207
2. 1999~2005년 기간 동안의 개인기부 현황.....	210
3. 기부참여율, 기부의 정기성, 기부횟수.....	229
4. 개인기부 정착의 세 지표.....	232

표 목 차

〈표 I -1〉 각국의 GDP 대비 개인 기부금의 비율.....	23
〈표 I -2〉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기부금 공제액 및 구성비.....	24
〈표 II -1〉 개인의 기부금 조세지출 추이.....	28
〈표 II -2〉 법인의 외형계급별 기부금 지출 현황.....	29
〈표 II -3〉 법인의 기부금 유형별 현황(2005년).....	29
〈표 II -4〉 법인의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추이.....	30
〈표 II -5〉 2005년 기업 현황.....	31
〈표 II -6〉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의 기술통계(2005년).....	31
〈표 II -7〉 기업형태별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의 평균값(2005년).....	31
〈표 II -8〉 매출액 규모별 기부금 및 기부금 비율.....	32
〈표 II -9〉 업종별 기부금 및 기부금 비율.....	33
〈표 II -10〉 전경련 회원사의 기부처별 기부 현황(2005년).....	34
〈표 II -11〉 기부처별 기부 참여율.....	34
〈표 II -12〉 연도별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35
〈표 II -13〉 연도별 지원대상 유형별 배분액.....	35
〈표 II -14〉 미국 비영리분야의 규모와 재정(1994~2004년).....	37
〈표 III -1〉 한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46
〈표 III -2〉 미국의 기부 관련 소득공제규정	49
〈표 III -3〉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77
〈표 III -4〉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77
〈표 IV -1〉 공익법인의 소관부처.....	114
〈표 IV -2〉 회계기준의 적용상황별 법인 수.....	115

〈표 IV-3〉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수 추이	117
〈표 V-1〉 소득구간별 Givingprice의 추계	135
〈표 V-2〉 Tobit 모형 추정결과(1999)	142
〈표 V-3〉 Heckman's Two-step 모형 추정결과(1999)	142
〈표 V-4〉 Tobit 모형 추정결과	146
〈표 V-5〉 Heckman's Two-step 모형 추정결과	147
〈표 V-6〉 Givingprice(1)	149
〈표 V-7〉 한계세율에 의한 Givingprice(2)	150
〈표 V-8〉 Tobit 모형 추정결과	151
〈표 V-9〉 Tobit 추정결과(표본-1, Givingprice(2))	151
〈표 V-10〉 Heckman's two-step 추정(표본1, Givingprice2)	154
〈표 V-11〉 2001년도 기부횟수 분포	157
〈표 V-12〉 혼합 포아송 분포의 기부횟수 분석 추정결과(2001)	160
〈표 V-13〉 2004년 기부횟수	162
〈표 V-14〉 기부횟수에 대한 혼합 포아송 회귀모형 추정결과(2004)	163
〈표 VI-1〉 연도별 한계법인세율	179
〈표 VI-2〉 기본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82
〈표 VI-3〉 확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ixed-Effects Regression)	185
〈부표 1〉 설문조사별 기부의 규정범위	210
〈부표 2〉 1999년도 기부참가 비율	212
〈부표 3〉 기부분야별 기부금액(1999)	213
〈부표 4〉 2001년도 기부 참가율	217
〈부표 5〉 2001년도 기부금액별 기부자 분포	218
〈부표 6〉 2001년도 기부처별 기부참가 분포	219
〈부표 7〉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비율	220

〈부표 8〉	2004년 기부 참가율.....	221
〈부표 9〉	2004년도 기부금액의 분포.....	223
〈부표 10〉	2004년 기부처별 기부분포.....	224
〈부표 11〉	기부 참여율, 정기성비율(1999~2004).....	230
〈부표 12〉	기부횟수의 분포.....	236

그림목차

[그림 II-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대상 유형별 배분액(2006년).....	36
[그림 II-2] 적십자회비 사용내역(2006).....	36
[그림 II-3] 미국의 기부금 규모(1966~2006).....	38
[그림 II-4]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액(1967~2006).....	39
[그림 II-5] 미국의 분야별 기부금액 비율(1967~2006).....	39
[그림 II-6] 월평균 기부금 규모별 기부자와 수혜자 비율.....	40
[그림 II-7]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자금액 비율.....	41
[그림 II-8] 연령별 1인당 평균 월기부액.....	41
[그림 II-9] 기부방식에 따른 기부자의 평균기부금액.....	42
[그림 V-1] 기부횟수 분포(2001).....	157
[그림 V-2] 기부횟수 분포(2004).....	163

I. 서론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민간부문 역할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예술, 종교 등의 분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 활발하게 비영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¹⁾.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민간부문의 비영리조직들의 활동은 기부라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이뤄지고 있다²⁾. 즉, 민간의 자발적 기부행위는 민간 스스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민간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정부의 역할이 강해 상대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낮았던 나라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³⁾. 물론 민간의

1) 민간의 비영리조직은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service-providing NPO)과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거나 주장하는 비영리조직(advocacy NPO)으로 구분된다.

2) 민간 비영리조직의 재원조달은 민간기부, 정부의 재정지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의 경우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서비스요금수입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민간기부는 민간 비영리조직의 재원조달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비영리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의 방법이 된다.

3) 민간은 금전적 기부뿐 아니라 자원봉사로 불리는 시간적 기부를 통해 민간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원봉사를 포함하게 되면 민간기부의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원봉사를 포함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GDP 대비 거의 5%에 이르고 있으며, 스웨덴 4.41%, 영국, 프랑스 등이 3%대를 보이고 있다.

기부활동은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다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내외부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인 비영리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해진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률적인 공공재(서비스)의 공급을 통해서서는 이뤄질 수 없지만 민간 비영리조직들은 소규모로 각 계층과 지역에 맞는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⁴⁾. 또한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활동에 의한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정부재정의 팽창현상을 완화시켜 준다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국민경제의 성장 및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정부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욕구의 일부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충족시킬 때 정부재정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⁵⁾.

Salamon et al.(2004)

4) Weisbrod(1988)

5) 유엔의 경제통계국에서는 국민계정 내에 비영리부문에 대한 규모를 추계한 위성계정

그러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간의 비영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 민간기부는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 민간기부는 대체로 개인기부와 기업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⁶⁾. 기부활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기업보다 개인의 기부가 민간기부를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기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부는 자신들의 역량에 의해 축적한 부 또는 소득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부는 기업의 기부와는 달리 기부행위가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을 가져오지 않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기부활동이 기업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인 이윤추구와 주주들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활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⁷⁾. 물론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 교육기관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기부는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추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⁸⁾.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satellite account)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추계한 바 있다.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와 시험적 추계에 대해서는 Salamon et al.(2004)참조.

- 6)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는 개인, 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활동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재단에 대한 기부도 역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는 민간 기부의 주체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부는 다시 생존한 개인들의 기부와 개인이 사망시 유증에 의해 기부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Clotfelter(1985).
- 7) Milton Friedman은 1970년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기부행위와 사회공헌(corporate philanthropy)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8) 예를 들어 1953년 미국의 제조사인 A.P. Smith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1,000달러를 기부한 것에 대해 이를 주주의 권익에 대한 침해로 보고 New Jersey 법원에 소송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은 기업측의 기부행위의 정당성을 받아들여 주

사회적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부는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기부는 장기적이거나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업 주주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두 기부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특징과 역할의 차이에서 볼 때 민간기부는 개인기부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주장은 민간의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부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민간 비영리단체인 'Giving USA Foundation'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뤄진 민간의 총 기부금액은 2,9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것이다⁹⁾. 이 중 개인에 의한 기부는 전체 기부금 가운데 75.6%인 2,229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개인기부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또한 개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금 규모는 2006년도에 229.1억달러로 전체의 7.8%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일 상속을 포함한다면, 개인에 의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기부금의 규모는 전체 민간기부금액의 83.4%에 이른다. 이에 비해 기업의 기부는 기업재단이 행한 기부를 포함하여 전체 민간기부의 4.3%인 127.2억달러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7.6% 감소한 결과이다¹¹⁾. 그리고 나머지 민간기부의 12.4%의 365억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립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found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¹²⁾.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민간 기

면서 기업의 기부를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비영리학회(2007)참조.

9) Giving USA Foundation(2007).

10) 이 금액에는 Warren Buffet이 기부한 190억달러의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다.

11) 미국의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재단의 기부를 기업의 기부에 포함하고 있다.

부금 규모가 큰 미국의 경우, 개인(또는 가계)에 의해 이뤄지는 기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CAF(Charity Aid Foundat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개인기부의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은 1.67%였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0.73%와, 0.72%로 미국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가 가장 낮은 0.14%였고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개인기부의 비율은 평균 0.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각국의 GDP 대비 개인 기부금의 비율¹⁾

(단위: %)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독일	프랑스
비율	1.67	0.73	0.72	0.69	0.64	0.47	0.45	0.29	0.29	0.23	0.22	0.14

주: 1) 각 나라에 대한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는 주로 2004년에 실시된 것임.
자료: CAF(2006)

외국의 경우처럼 민간기부에서 차지하는 개인기부의 역할은 한국의 기부에 대한 최근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기업의 기부가 민간기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개인기부가 전체 민간기부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2) 미국의 재단은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재단(Grant-making foundation)과 실제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재단(Operating Found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2〉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기부금 공제액 및 구성비

(단위: 조원, %)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기부금 계		2.9	4.45	4.67	5.9	6.64	7.13
개인	근로소득자	0.8	2.0	2.7	3.2	3.5	3.6
	종합소득자	0.05	0.23	0.28	0.54	0.67	0.74
	소계	0.85	2.23	2.98	3.74	4.17	4.34
	구성비	29.3	50.1	63.8	63.4	62.8	60.9
법인	금액	2.05	2.22	1.69	2.16	2.47	2.79
	구성비	70.7	49.9	36.2	36.6	37.2	39.1

자료: 손원익(2007)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기부금이 법인기부금을 초과하면서 법인(기업)의 기부금액이 전체 민간기부금의 40%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민간기부에서 기업의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개인기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개인기부에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이 개인기부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금 규모의 증가도 있었겠지만 근로소득자 중 기부에 참여하는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소득자 중 기부에 참여한 인원 수는 1999년 174만명에서 2000년에는 244만명으로, 2003년 286만명, 2004년에는 292만명, 2005년에는 310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민간 기부금 중 근로자들 중 개인기부금의 공제를 신청한 인원을 보면 2005년에 310만명으로 1999년의 174만명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소득자들이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기부를 하는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개인을 중심으로 한 기부가 확산되는 것을

13) 법인기부의 수는 2005년 32,744개로 전체 법인의 9.1%에 해당된다. 손원익(2007)

보여주고 있다. 반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기부금의 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수는 2001년 3만 7천여개에서 2005년에는 3만 2,700여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기부자 수의 증가와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민간의 기부는 개인기부와 기업기부로 구성되고 있지만 개인기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1년 이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개인기부도 국제적인 추세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기부의 규모와 역할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민간기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민간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았던 이유 이외에도 자료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민간기부의 이런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민간기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민간기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민간기부에 대한 현상을 소개하고 민간기부를 구성하는 개인기부와 기업기부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민간기부의 현황, 결정요인, 그리고 민간기부의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의 동기와 주체가 상이한 개인기부와 기업기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II 장에서는 민간기부의 현황을 소개한다. 기부와 관련된 통계를 생성하는 여러 기관의 기부 자료 및 주요국의 기부 현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기부의 현 주소를 알아본다.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한다. 제 IV 장에서는 주요국의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관련된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다. 제 V 장에서는 개인의 기부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Ⅵ장에서는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우리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Ⅶ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기부금 지출 현황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 현황

기부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출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발표하는 통계치는 없다. 다만, 기부금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조세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의 기부금 규모로도 파악할 수는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 외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도 대략의 규모는 파악할 수는 있다.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할 때,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볼 수도 있지만 기업 또는 개인이 대가 없이 지출하고 조세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은 여러 유형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가. 개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기부금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발표하고 있으나 기부금의 종류별로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조세지출 규모로 정확한 기부금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세지

원 대상이 되는 기부금 지출의 증감 변화 정도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까지 적용대상이 근로자이고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5%였으나 2000년부터 대상은 거주자로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10%로 공제율이 확대되었다. 소득공제 확대에 의한 기부금 지출 실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 조세지출보고서 상의 ‘기부금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금액의 추이를 보면 <표 II-1>과 같다. 2001년에 전년 대비 150%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기부금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조세지원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 개인의 기부금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기부금 특별공제 ¹⁾	증가율
1998	1,163	
1999	1,164	0.09
2000	1,194	2.58
2001	2,986	150.08
2002	4,022	34.70
2003	4,702	16.91
2004	4,448	-5.40
2005	5,067	13.92
2006	5,045	-0.43
2007 ²⁾	6,054	20.00

주: 1) 1999년까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5% 한도, 2000년부터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의 10% 한도

2)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나. 법인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05 과세연도의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는 2조 4천억원이고 기업당 기부금 규모는

Ⅱ. 기부금 지출 현황 29

741만원이다. 이는 법인세신고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부금 지출 규모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4.6%와 14.4% 증가하였다.

〈표 II-2〉 법인의 외형계급별 기부금 지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매출액	2003		2004		수입금액	2005	
	기업 수	기부금	기업 수	기부금		기업 수	기부금
10억 미만	185,827	77,537	189,514	46,163	10억 미만	199,080	48,196
10억~100억	102,035	135,699	109,866	130,646	10억~100억	114,871	135,369
100억~1000억	14,089	341,478	15,745	289,388	100억~1000억	17,547	298,085
1000억~1조	1,313	478,319	1,452	474,968	1000억~5000억	1,433	325,700
1조 이상	198	850,446	200	1,217,526	5000억 이상	382	1,662,916
계	303,462	1,883,479	316,377	2,158,691 (14.6%)	계	333,313	2,470,266 (14.4%)

- 주: 1.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임.
 2. 법인세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금액임.
 3.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2006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은 42.6%를 차지한 지정기부금이고 특례기부금도 42.0%로 지정기부금과 유사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합이 전체 기부금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이 공제율이 가장 높긴 하나 실제 지출액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표 II-3〉 법인의 기부금 유형별 현황(2005년)

(단위: 개, 백만원, %)

수입금액	기부금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억 미만	48,196	10,111	21.0	5,374	11.2	32,711	67.9
10억~100억	135,369	30,247	22.3	18,248	13.5	86,874	64.2
100억~1000억	298,085	41,752	14.0	96,025	32.2	160,308	53.8
1000억~5000억	325,700	68,606	21.1	123,554	37.9	133,540	41.0
5000억 이상	1,662,916	230,275	13.8	793,744	47.7	638,897	38.4
계	2,470,266	380,991	15.4	1,036,945	42.0	1,052,330	42.6

주: 2005년 법인세 신고 기준임. 법인세 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법인의 경우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규모가 1999년에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133% 증가하는 등 기부금 지출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에 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법인의 기부금 지출규모는 조세 정책보다는 경기 변동 등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I-4〉 법인의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기부금 손금산입 ¹⁾	증가율
1998	3,663	
1999	1,891	-48.38
2000	4,417	133.58
2001	4,270	-3.33
2002	3,551	-16.84
2003	4,083	14.98
2004	4,530	10.95
2005	5,295	16.89
2006	5,390	1.79
2007 ²⁾	5,983	11.00

주: 1) 법인의 법정, 지정, 특례기부금 모두 포함.

2)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결산재무자료에 의해 기부금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05년의 상장, 등록, 외감 법인 전체 15,250개 기업 중 기부금이 없는 기업 7,505개를 제외하면 7,745개 기업이 기부금 지출이 있는 기업이고, 이 중 당기순이익이 0보다 작거나 매출액이 0인 1,465개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고,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비율이나 매출액 대비 기부금비율이 100%를 넘는 47개 기업도 그 비율이

Ⅱ. 기부금 지출 현황 31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6,233개 기업 중 최종적으로 관리대상인 2개를 제외하고 남은 6,231개 기업에 대한 기술 통계를 <표 Ⅱ-6>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Ⅱ-5> 2005년 기업 현황

(단위: 개, %)

	기업 수	비중
중소기업	5,121	82.19
대기업	1,110	17.81
계	6,231	100.00

자료: 한신평, 「결산재무자료」

<표 Ⅱ-6>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의 기술통계(2005년)

(단위: 개, 천원, %)

	기업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	6,231	160,551,286	1,165,649,600	12106	57,457,670,000
기부금	6,231	257,697	3,563,467	1	173,563,000
당기순이익	6,231	11,710,902	130,492,986	1680	7,640,213,000
기부금의 매출액 비율	6,231	0.156	0.696	0.000008	27.229
기부금의 당기순이익 비율	6,231	3.258	8.595	0.000066	94.817

자료: 한신평, 「결산재무자료」

<표 Ⅱ-7> 기업형태별 기부금 관련 계정과목의 평균값(2005년)

(단위: 개, 천원, %)

	거래소	코스닥	등록	외부감사
매출액	456 1,243,557,684	476 98,908,558	509 249,606,746	4,790 54,113,247
기부금	456 2,400,990	476 99,712	509 357,778	4,790 58,724
당기순이익	456 97,319,852	476 6,263,642	509 17,368,676	4,790 3,501,176
기부금의 매출액비율	456 0.162	476 0.125	509 0.133	4,790 0.161
기부금의 당기순이익비율	456 3.276	476 2.209	509 2.886	4,790 3.400

자료: 한신평, 「결산재무자료」

매출액 규모별로 기부금 지출실태를 보면,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당 기부금 규모는 987만원이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당 기부금은 47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1개 기업당 기부금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59%에서 0.14%로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표 II-8〉 매출액 규모별 기부금 및 기부금 비율

(단위: 개, 천원, %)

매출액	기업 수	기업당 기부금	매출액 비율	당기순이익 비율
10억 미만	37	9,871	2.59	4.44
10억~100억	844	13,934	0.25	3.80
100억~1,000억	4,188	40,679	0.12	3.18
1,000억~5,000억	915	272,193	0.13	3.11
5,000억 이상	247	4,753,706	0.14	3.21
계	6,231	257,697	0.16	3.26

자료: 한신평, 「결산재무자료」

업종별로 볼 때, 기부금의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¹⁴⁾은 0.5%인 부동산·임대업이고 그 다음으로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0.41%), 금융·보험업(0.4%) 순으로 나타났다.

14) 보건·사회복지사업도 0.49%로 기부금 매출액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대상기업이 1개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표 II-9〉 업종별 기부금 및 기부금 비율

(단위: 개, 천원, %)

	기업 수	기업당 기부금	매출액 비율	당기순이익 비율
농업 및 임업	17	28,153	0.14	2.08
어업	12	50,460	0.09	7.14
광업	23	29,446	0.11	6.88
제조업	3,329	252,246	0.10	2.80
전기·가스·수도업	54	4,142,554	0.24	4.17
건설업	649	167,023	0.16	3.12
도소매업	673	125,816	0.12	3.99
숙박·음식점업	90	78,619	0.23	5.60
운수업	288	163,579	0.12	3.32
통신업	25	6,188,473	0.15	2.09
금융·보험업	12	640,862	0.40	2.20
부동산·임대업	344	66,316	0.50	3.23
사업서비스업(M)	382	96,811	0.18	3.47
교육서비스업(O)	19	204,403	0.11	1.93
보건·사회복지사업	1	69,112	0.49	1.8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249	246,101	0.41	5.42
기타개인서비스업(R)	64	91,237	0.29	6.52
계	6,231	257,697	0.16	3.26

자료: 한신평, 「결산재무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2005 기업·기업재산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2004년과 2005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회원사 등 매출액 상위 6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응답기업 수는 208개 기업(응답률 32.1%)이고 조사기간은 2006. 3. 14~2006. 5. 26이다. 동 조사자료에 의한 기부처 및 기부금액 규모는 〈표 II-10〉 및 〈II-11〉과 같다.

〈표 II-10〉 전경련 회원사의 기부처별 기부 현황(2005년)

(단위: 백만원, 건)

기부처	기부금액		기부건수		전당기부금액
	총액	기업평균	총 건수	기업평균	
특정공익법인 (자사출연단체)	228,618 (139,720)	1,242 (759)	1,23 (60)	83 (0,3)	150 (2,328)
지정기부금	80,645	438	5,468	31	14
국가·지자체	15,347	83	538	3	28
시민단체 등 NGO	30,271	164	894	5	33
기타	39,820	216	1,560	9	25
계	394,701	2,145	9,970	57	39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표 II-11〉 기부처별 기부 참여율

(단위: %)

	1998	2000	2002	2004	2005
특정공익법인	38.0	53.9	60.9	28.8	29.6
지정기부금	54.3	58.1	58.9	44.2	46.7
국가·지자체	63.6	55.0	58.9	33.1	32.2
시민단체 등 NGO	24.0	36.1	36.5	38.5	45.7
기타	74.4	49.2	51.8	37.5	43.7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다.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개인기부가 29.37%, 법인기부가 70.63%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기부 비율은 2003년 34.72%에서 2006년 29.37%에 이르기까지 매년 감소해 왔다.

〈표 II-12〉 연도별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6	2005	2004	2003
계	217,693 (100)	214,697 (100)	175,630 (100.0)	138,247 (100.0)
개 인	63,937 (29.37)	62,074 (28.91)	62,175 (35.40)	47,999 (34.72)
법 인	153,756 (70.63)	152,622 (71.09)	113,456 (64.60)	90,248 (65.28)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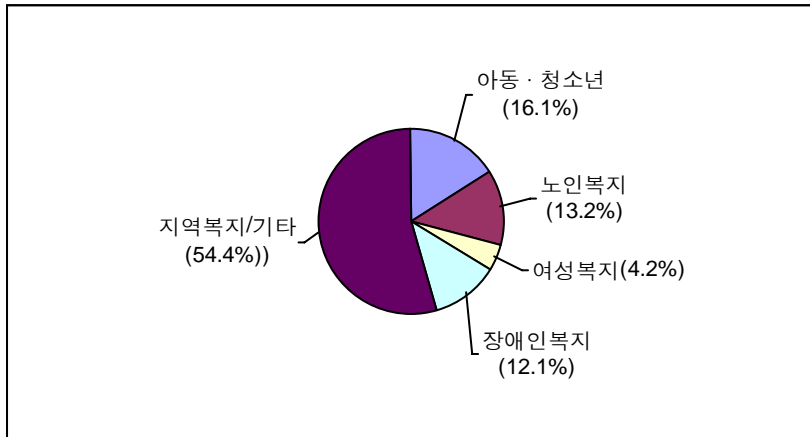
〈표 II-13〉 연도별 지원대상 유형별 배분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6	2005	2004	2003
합 계	183,722 (100.0)	177,206 (100.0)	145,347 (100.0)	119,183 (100.0)
아동·청소년	29,527 (16.1)	26,387 (14.9)	20,126 (13.8)	21,236 (17.8)
노인복지	24,299 (13.2)	21,742 (12.3)	14,729 (10.1)	14,721 (12.3)
여성복지	7,761 (4.2)	5,361 (3.0)	3,450 (2.4)	2,566 (2.2)
장애인복지	22,274 (12.1)	23,372 (13.2)	17,731 (12.2)	14,189 (11.9)
지역복지/기타	99,861 (54.4)	100,344 (56.6)	89,311 (61.5)	66,471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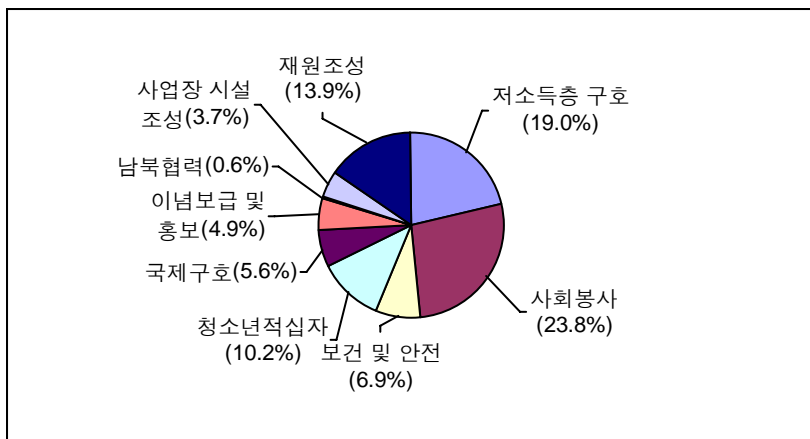
주: 1. 법 개정(회계기간 변경)으로 인한 2002.10.1~12.31 실적 27,857백만원 별도
2. () 안은 구성비임.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림 II-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대상 유형별 배분액(2006년)



적십자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2006년도 모금액은 총 432억원¹⁵⁾이며 회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2] 적십자회비 사용내역(2006)



15) 2006년 1월~11월 기간 동안의 모금액임.

2. 주요 외국의 기부금 지출 현황

가. 미국

2003년 미국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 소득공제로 인한 총 조세 지출은 406억달러로, 근로자의 의료보험과 의료비에 대한 조세지출(1,085억달러)을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큰 조세지출 항목이다¹⁶⁾.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수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27% 증가하는 등 비영리단체의 수, 자산규모, 기부금, 비용규모,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II-14〉 미국 비영리분야의 규모와 재정(1994~2004년)

(단위: 개, 억달러, %)

	1994	1999	2004	증가율 1994~2004	증가율 1994~2004 (불가상승률 조정)
총 비영리단체 수	110만	120만	140만	27.0	n.a.
등록된 비영리단체	388,621	398,405	486,982	25.3	n.a.
수입	6,780	9,500	13,610	101.0	61.5
지출	6,210	8,510	12,550	102.0	62.6
자산	12.52	20.52	29.67	137.0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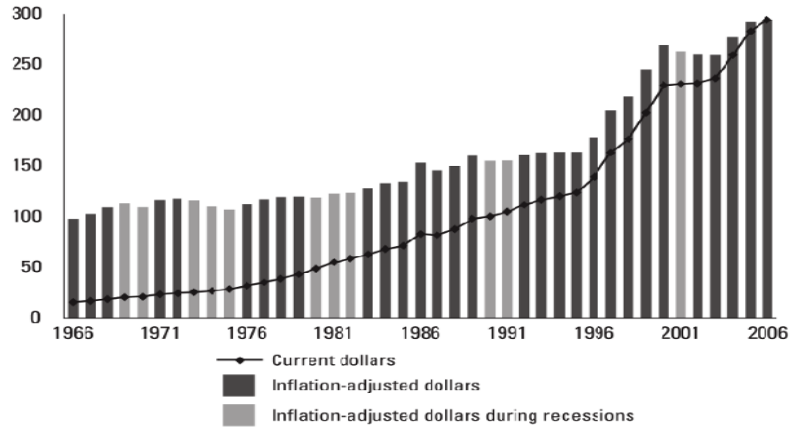
자료: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Facts and Figures from the Nonprofit Almanac 2007.

기부금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증권시장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후반에 특히 크게 성장하였다. 기부금규모는 1966년 이후 2,792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규모 성장의 50% 이상은 1996년도 이후 발생한 것이다.

16) Tax expenditures Chapter From President's Fiscal 2004 budget

[그림 11-3] 미국의 기부금 규모(1966~2006)

(단위: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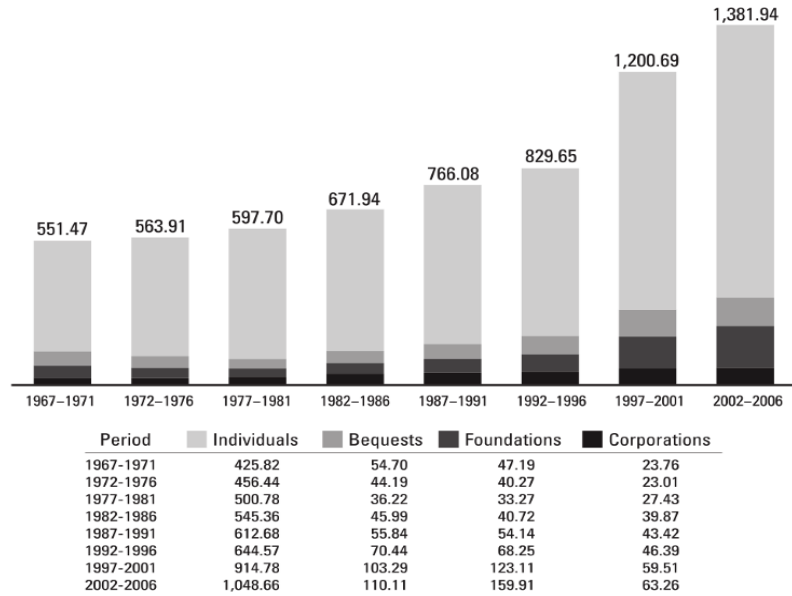


자료: Giving USA 2007

2006년의 기부금 총액은 2,950억달러이고 기부자별로 보면, 개인이 2,229억달러(75.6%), 재단이 365억달러(12.4%), 유증에 의한 기부가 229억달러(7.8%), 법인(주식회사)이 127억달러(4.3%) 규모이다. 개인 기부는 50년 동안 미국 전체 기부규모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1967~1971년에 개인기부금액이 4,258억달러이던 것과 비교할 때 2002~2006년 개인기부금액은 10,490억달러로 146.3%의 증가(인플레이션 조정시가 기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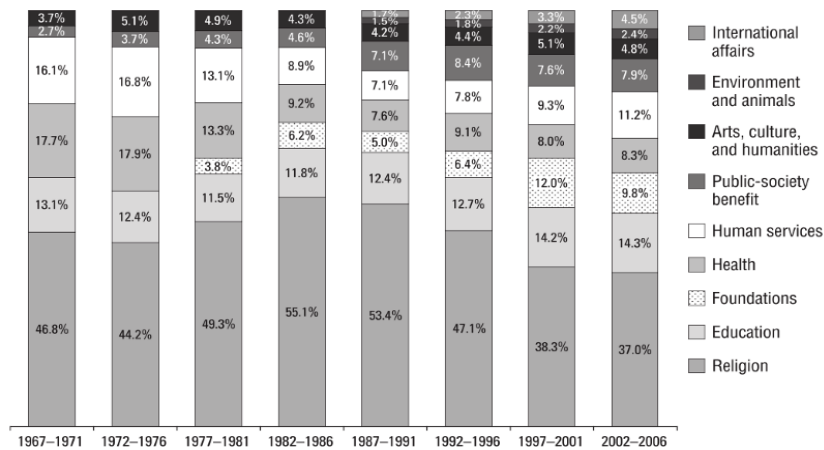
기부받는 분야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종교에서 기부받는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기부받은 분야별 기부금액은 종교 968억달러(32.8%), 교육 410억달러(13.9%), Human service 296억달러(10.0%), 보건 202억달러(6.9%), 공공사회복지 214억달러(7.3%), 예술·문화·인문 125억달러(4.2%), 국제 113억달러(3.8%), 환경과 동물보호 66억달러(2.2%), 재단 295억달러(10.0%), 기타 260억달러(8.8%)로 구성된다.

[그림 II-4]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액(1967~2006)



자료: Giving USA 2007

[그림 II-5] 미국의 분야별 기부금액 비율(196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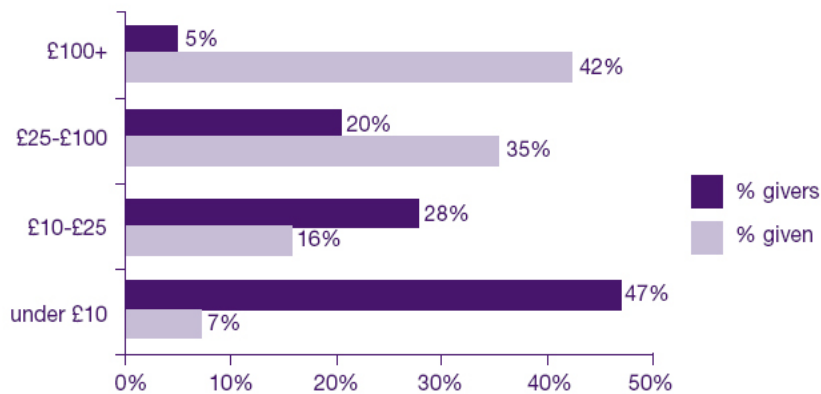
자료: Giving USA 2007

나. 영국

1) 기부금 규모

기부자들의 월평균 기부금액은 1페니부터 천파운드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월평균 기부되는 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25파운드 이상을 기부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부자들에 의한 기부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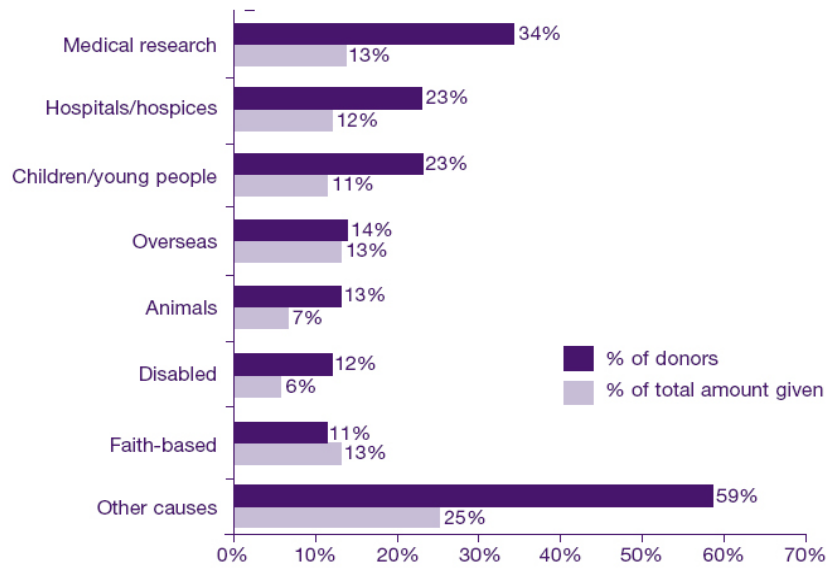
[그림 II-6] 월평균 기부금 규모별 기부자와 수혜자 비율



자료: UK Giving 2004/05,

기부 분야별 기부자와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의학연구 분야로, 기부자의 3분의 1 이상이 기부금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의학연구를 다른 건강 관련 분야들(병원, 영양원 등과 각종 치료센터 등)과 같이 묶어 살펴보면, 건강 관련 분야가 총 기부금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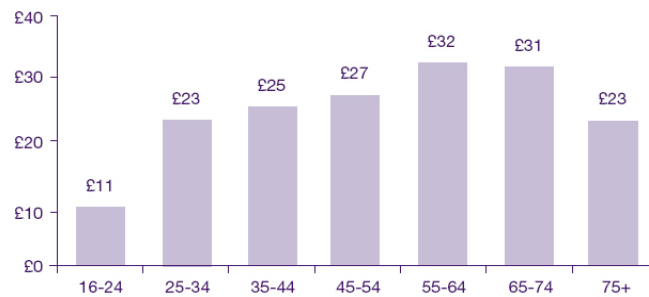
[그림 II-7]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자금액 비율



자료: UK Giving 2004/05

월 평균기부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로, 1인당 31.68 파운드이고 가장 적게 기부하는 연령대는 16세에서 25세로 1인당 월기부액이 11.32파운드이다.

[그림 II-8] 연령별 1인당 평균 월기부액



자료: UK Giving 2004/05

가장 많은 기부금액이 모인 기부방식은 신용카드와 개인수표 지불방식이다. 한편 3% 정도의 기부자들만이 회비 등(Fees)의 방식으로 기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부금액이 높아 평균 1인당 기부금액은 27.84파운드이고, 총 기부금액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9] 기부방식에 따른 기부자의 평균기부금액



자료: UK Giving 2004/05

2) 기부금 관련 사회경제적 배경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영국의 개인 기부자 수가 감소하였다. Institute of Fiscal Studies(IFS)¹⁷⁾에 따르면, 기부자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기부금액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하여 총 기부금액의 규모는 유지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¹⁸⁾되고 있다.

17) UK Giving 2004/05, CAF

1990년 중반까지 부유층과 빈곤층의 갭이 확연히 커지게 되어 소위 'Super-Rich'라는 계층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상류층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평균 기부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기부자의 특정 그룹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반면 기부에 대한 참여도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수입이 더욱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소가족과 독신자들의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수가 많아졌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도 적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의 변화도 기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1990년 이후 수십년 동안 16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이 3%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가 3% 증가함으로써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좀 더 많이 기부하게 되었고, 노년층의 기부 증가가 기부금액의 규모가 커지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Ⅲ.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우리나라

가. 기부금 관련 세제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종류를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기부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조세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1) 법정기부금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5%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법 24②). 2005년까지는 공제한도가 100%였으나 2006~2008년 기간은 75%, 2009년부터 50%로 점차 축소되었다. 2005년 세법개정 이전까지 법정기부금에 대해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으나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손금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대상도 법인보다 광범위하다.

본장의 내용은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손원익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7)에서 요약·발췌한 것임.

2)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으로서 법정기부금 공제 후 개인 및 법인 소득의 5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개인에 한해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의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은 소득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공제한도를 소득의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및 의료법인 등이 있다.

〈표 Ⅲ-1〉 한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종 류	법인 (손금한도)	개인 (비용한도)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법정기부금 (50%, '06~08 75%, '09 이후 50%)	법정기부금 (100%)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구역, 정치자금	해당없음	
-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인정하는 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특례기부금 (50%)	특례기부금 (50%/30%)
- 개인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 지정기부금 단체: 학교·기능대학,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2007.3 말 현재 1,123개),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2007.3 말 현재 42개) -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지정기부금 (10%)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의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 이자소득금액 등의 100%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다음의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학교법인·산학협력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비용공제제도는 각 기부금 유형별로 적용대상 단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에 대해 75% 소득공제, 개인에 대해 100% 비용으로 인정되는 등 조세지원 내용도 차이가 있고 대상단체도 일부 차이가 있다. 법인의 경우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상단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법인의 법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하여 다음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구역, 정치자금
- 지정기부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 및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2007년 3월 말 현재 1,123개 단체
 -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만 적용되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립학교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2. 미 국

가. 기부금 관련세제

미국에서의 기부에 관한 소득공제규정은 소득세(Income tax),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소득세법이 기부에 대한 조세의 기본원칙이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내용 등 여러가지 조건과 제한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표 Ⅲ-2〉 미국의 기부 관련 소득공제규정

기부 주체	기부받는 단체		소득공제 제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C §170(c)에 속하는 단체이어야 함 •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특정국가(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자선단체 	Public Cha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30% Limit(예외)
		Private Foundation 중 operating Foundation ¹⁾	
법인		Non operating Foundation 중 특정요건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20% Limit(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170(c)의 단체 • 자선단체를 위한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받는 단체별로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구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10%의 소득공제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주: 1)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란, 다른 자선단체들에게 모금 등을 통하여 재정 지원 등의 소극적 활동만이 아니라 직접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의미(IRC §170(e)(1)(B)(i))

1)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일반 원칙은 개인의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 30%, 20%로 분류된다. 소득공제 한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는 두 가지로,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 혹은 현물자산)과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세법상 분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부가 소득공제를 합쳐서 신고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부분이 합쳐지게 되어 부부의 기부금 합계에 대한 한도규정이 적용된다.

다음의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소득의 50%를 넘지 못한다.

- Public Charity Organizations

- Private Operating Foundation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nduit Foundation¹⁹⁾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mmon Fund Foundation²⁰⁾

위에 열거한 50%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Qualified Organization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 금액은 개인 총 소득의 30%이다. 자선단체 사용을 위한(For the use of any organization) 기부²¹⁾의 경우도 30%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이득자산을 50% 제한규정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30%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기부자가 자산을 판매했다면 장기자본이익이 될 시장 공정가액만큼을 감소시키기로 선택한다면, 30% 한도는 적용되지 않고, 50% 한도만이 적용된다. 30% 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²²⁾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50%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단체외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가 자본이득자산이면 20%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기부주체인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법인 과세소득의 10%이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 기부자의 경우와는 달리, 기부대상이나 기부자산에 따른 한도규정이 없다.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5년 동안 소득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한다. 이월공제금액은 그 해 총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의 경우, 1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공제는 당해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이후에 적용한다.

19) IRC §§170(b)(1)(A)(vii) and 170(b)(1)(E)(ii) 참조

20) IRC §§170(b)(1)(A)(vii) and 170(b)(1)(E)(iii) 참조

21) 신탁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22) 후술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 참조

2)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목적의 기부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란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 권리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보존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단체(Qualified Conservation Organization)는 다음과 같다.

- 정부관련 기관
- 대중에게 지원을 받는 자선, 종교, 과학,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위의 정부 관련 기관이나 대중에게 지원을 받는 단체에게 지배되고, 위의 단체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Qualified Real Property Interest)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에 대하여 광물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 Remainder Interest
 -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사용제한에 대한 권리
- 보존의 목적이란 기부의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레크레이션이나 교육, 그 밖의 공공목적에 위한 보전
 - 물고기나 야생동물, 식물, 그 외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 보호
 - 공공의 중요 이익을 내는 농경지나 산림을 포함한 환경 보전. 이 경우 공공의 자연경관을 위한 것이거나, 정부보전 정책을 위한 것
 -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증명된 역사적 건축물인 경우

역사보전 구역에 등록된 건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이득권(저당권이나 빌딩 외부에 대한 제한권인 경우)을 기부한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제한권의 경우 빌딩의 외부를 보전해야 하고, 역사보전의 성격과 불일치하는 외부변화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기부자와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서면으로 다음을 증명하는 합의서 작성
 - 단체는 환경보호, 토지보전, 역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일 것
 - 단체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Resources)과 위원회가 있을 것
- 2006년 이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신고시 다음 사항들을 첨부할 것
 - 감정서, 건물 외부사진, 건물개발과 관련된 모든 제한과 규제사항들에 대한 설명서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CC: 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에 대해서는 50% 특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QCC에 대한 기부자의 소득공제는 총 수입의 50%에서 다른 기부금액 전부를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부자가 농업이나 낙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 QCC의 소득공제는 총 수입에서 다른 기부금액 총액을 뺀 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농업이나 낙농업 종사자의 자격요건은 기부자의 농업이나 낙농업을 통한 총 수입이 당년도 기부자 총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이다.

3)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적용 순서

기부자가 한 가지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한다.

Ⅲ.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53

- ① 기부금이 50% 제한규정에만 해당되는 경우: 기부자의 총 수입 (Adjusted Gross Income)의 50% 한도까지
- ②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임
 -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30% 혹은
 - 총 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30% 특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 포함)
- ③ 30% 특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Capt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한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임
 - 총 수입의 30% 혹은
 - 총 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 ④ 2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임
 - 총 수입의 20%,
 - 총 수입의 30% -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 총 수입의 30% - 30% 특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이득자산의 기부금액,
 - 총 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을 받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총액과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 ⑤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에 대한 특별 50% 제한 규정
 - 총 수입의 50% -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기부금액이 한도임
- ⑥ 농부나 낙농업자들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 100% 제한규정
 - 총 소득의 100% - 그 외의 모든 기부금액

4) 소득공제 금액

소득공제 대상은 현금인 기부금액과 기부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이다. 기부자산의 경우, 500달러를 넘는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서에 증명서(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정평가서 수수료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항목별 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다. 250달러를 넘는 기부금의 경우, 수혜단체로부터 기부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야 한다(IRC §170(f)(8)). 수혜단체는 증명문서에 기부에 대한 급부로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 그 가치도 명시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산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기부의 목적으로 자선단체에 판매했다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는 매매로, 일부는 기부로 인정된다(IRC §170(e)(2)).

서비스(노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인정되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Out-of-Pocket Expenses)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운전중 사용한 주유비(IRC §170(i) 1마일당 14센트), 주차비 등은 별도로 지출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수리비나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자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판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판례는 납세자인 회사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학교 짓는 데 기부했지만, 새로 짓는 학교에서 만드는 도로가 그 회사가 소유하는 나머지 토지를 훨씬 비싸게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납세자인 회사가 공공에게 주는 이득보다 개인적인 이득이 더 많으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판례는 납세자가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이 납세자에게 해당 대학교의 운동경기 시즌 티켓을 구입하는 권리를 준 사례이다. 이 때 기부금의 80%가 소득공제가 가능하

다. 이 경우에도, 실제 티켓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IRC § 170(l)). 세 번째 판례는 납세자가 기부재단으로부터 자산이나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인정(a quid pro quo contribution)하였다. “a quid pro quo contribution”이 75달러를 넘으면 수혜단체는 기부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기부금액이라는 사실을 설명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판매유치시나 기부금을 받을 때에). 이러한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 “a quid pro quo contribution” 제공마다 자선단체는 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모금 행사나 메일 송부는 5천 달러로 제한된다(IRC §§6115, 6714).

5) 기부금 공제시기 및 기부금액 산정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결정되는 시기에 있어서, 미국연방세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Title)이 이전되는 시기가 기준이 되고 소유권이 기부받은 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 된다.

현금 기부의 경우 현금이 기부받은 단체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 되는데, 현금은 기본적으로 점유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현금을 기부하겠다는 의도를 알리는 것, 예를 들어 장부에 기입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제는 실제로 지불이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표를 통한 기부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가 공제시점의 기준이 된다. 즉, 수표가 기부받은 단체에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 된다.

기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의무발생시점이 공제시점이다. 즉, 기부자가 카드로 기부금액을 결제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다(실제로 기부자가 카드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시점이 아님).

전화를 통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주로 폰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시점이 소득공제시기이다. 이는 금융기관을 기부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채권, 그 밖의 증권들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시점은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증권이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된 시기이다. 만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라면, 우편물을 부친 날짜가 공제시점이 된다.

가치가 상승한 장기보유자산인 경우는 기부금액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기부시점의 시장가치가 기준이 되지만,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동산에 대하여서는 자산의 원가로 산정한다.

가치가 하락한 자산 혹은 가치가 상승한 자산 중에서 단기보유자산(가치가 상승한 장기보유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의 경우는 기부시점의 시장가치와 자산의 원가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기부금이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에 기부(gift)하는 돈을 의미하며, 자선단체가 IRC §170(c)에서 규정하는 단체들에 속하여야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이 인정된다. IRC §170(c)의 자선단체의 범위는 많은 부분이 연방소득세법상 면세가 인정되는 자선단체들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연방세법에서는 면세단체(Tax Exempt Organization)를 명시하는 규정과 기부금의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방소득세법상 면세받는 자선단체들은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는 공공안전에 대한 테스트(Public Safety Test)²³⁾가 있다. 다음의 단체들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가 인정되지만, 연방소득세법상 면세 자선단체에 속하지 않는 단체들이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정치적 기관들- 이 경우는 기부금이 공공의 목적으로만 기부되어진 경우임(IRC §170(c)(1))
- 참전용사들의 단체들(IRC §170(c)(3))
- domestic fraternal society, order 혹은 association(IRC §170(c)(4))
- 장묘단체들(IRC §170(c)(5))

연방세법 중 기부금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는 조항은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소득세법상의 면세(IRC §501(c)(3)),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Charitable donee들에 대한 자격사항들을 규정하고, 면세단체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단체들을 규정하고 있다(IRC §170(c)). IRC §2522(a)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부분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들을 분류해 놓았고 IRC §2055(a)는 기부금에 대한 유산세(Estate tax)의 소득공제부분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들을 분류해 놓았다.

Charitable Organization은 기본적으로 Private Foundation으로 추정된다. Private Foundation으로 보는 추정은 해당단체가 Public Charities이거나 다른 예외단체임을 입증함으로써 부정할 수 있다. Private Foundation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들은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이나 그 밖의 단체들로 인정받아 Private Foundation의 연방세법상의 의무를 경감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3) 공공안전에 대한 테스트 업무를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연방소득세법상 면세를 인정 받음(IRC §501(c)(3)). 그러나 이러한 Public safety testing organization에 기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IRC §170).

1)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은 기부금 혜택을 인정받는 자선단체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체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50%이며, Public Charitable의 범위는 IRC §170(b)(1)(A)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교회나 교회단체
- 교육기관
- 의료기관이나 의료교육기관이거나 의료연구기관인 경우
- 정부지원을 받고, 대학교를 위하여 자산관리하는 기관
- 미국정부 관련 기관
- 정부 관련 기관이나 일반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 Public Organization들을 지원하는 조직(Supporting Organization)

2) Private Foundation

Private Foundation은 공중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 명 혹은 몇 명의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를 의미한다. 보통 한 명의 개인 기부자나 가족들, 혹은 회사 자산의 투자 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지원받는다.

Private Foundation 중 대부분의 수입과 자산을 직접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단체들을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라 한다. 이 단체들은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50%까지 인정된다.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 성립되기 위한 충족조건들은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은 미국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Income Test²⁴⁾를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Asset Test²⁵⁾,

24) Treas. Reg. §53,4942(b)-1(b)(2)

Expenditures Test²⁶⁾, Support Test²⁷⁾의 세 가지 테스트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영국

가. 기부금 관련 세제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감면 사항	비고
개인	1. CC(Charities Commis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Charities	Gift Aid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	2000년 기부금액 한도규정 삭제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 대상	2000년과 2002년 신설제도
		Payroll Giving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tax relief가 이루어짐	2000년 기부금액 제한규정 삭제
법인	2. “Charities”의 성립요건들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로 발전	Gift Aid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과세수익에서 제외	2000년 기부금액 한도규정 삭제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 대상	2000년과 2002년 신설제도

25) IRC §4942(j)(3)(B)(i)

26) IRC §4942(j)(3)(B)(iii)

27) IRC §4942(j)(3)(B)(iii)

1) 개인

가) Gift Aid

Gift Aid는 영국의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서 199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Basic Rate)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되고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는 기부금액이 증가된다. 기본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여기에서 기부금 관련 문제가 끝나지만, Higher Rate의 납세자는 소득공제시에 Higher Rate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Higher Rate납세자가 기부한 Gift Aid에 대하여 자선단체는 기본세율 기준으로만 청구(Reclaim) 가능하다.

〈사례〉

기본세율의 납세자의 경우:	
- 기부금	1,000.00
- 자선단체의 기본세율(22%)의 청구 ($22/78 \times 1000$)	282.00
- 총 자선단체에 전달된 기부금액	1,282.00
Higher Rate의 납세자의 경우:	
- 자선단체의 기본세율(22%)의 청구	282.00
- 총 자선단체에 전달된 금액에 대한 기부자의 Higher Rate의 Tax Relief 청구(Higer Rate인 40%와 22%의 차이인 18%)	230.76
- 기부자의 비용	769.24

기부자의 Gift Aid를 통한 조세혜택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일 1,000파운드 이상을 한 해에 기부한 기부자의 경우, 그 해에 특정 자선단체가 받은 기부금액이 250파운드가 넘지 않으면, 기부금액

의 2.5%까지는 조세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선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한데, Gift Aid가 유효한 조세혜택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부자나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기부의 결과로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
-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이 규정된 한도를 넘는지의 여부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란 기부자의 배우자이거나, 친척, 배우자의 친척인 경우를 말한다. 혜택(Benefit)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선단체나 제3자로부터 기부자나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기부의 대가로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기부자가 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 공지, 자선단체의 재산이나 야생서식지 등을 구경하는 입장권, 자선단체들의 재산을 구경하는 권리 등은 혜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자 및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음의 제한한도를 넘는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부금액	혜택의 가치
0 ~ 100파운드	기부금액의 25%
101 ~ 1,000파운드	25파운드
1,001파운드 이상	기부금액의 2.5%

기부자가 받은 혜택의 가치와 해당 기부 전에 동일 기부자가 동일 자선단체에 한 다른 기부금액의 대가로 받은 혜택(동일 연도이어야 함)을 합한 가치가 25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법률적 서식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부금이 Gift Aid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자선단체에게 신고서(Declaration)를 만들어야 한다. 신고서의 형식은 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참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연속적 기부를 1회의 신고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소급적, 혹은 그 이후부터 효력 발생 모두 가능). 기부금의 최대금액이나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지만(2000년에 250파운드의 최소기부금액 제한 규정 삭제), 자선단체 내에서 Reclaiming tax 절차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Gift Aid의 신고서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내용, 기부내용이 Gift Aid로 인정된다는 확정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Gift Aid 신고(Declaration)는 UK resident인 개인이 기부한 경우, Crown Servants인 개인 혹은 UK 군대 멤버인 개인이 기부한 경우, 그밖의 non-resident인 개인에게 UK에서 부과하는 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 최소한 기부금 총액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postal order, standing order 등이 가능하며 “telegraphic transfer”로도 가능하다. 외환도 가능하며, 자선단체가 claim을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기부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기부는 실제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채권 포기나 보증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기부가 될 수 없다. 서비스나 권리, 기타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은 기부가 될 수 없고, 기부세제 혜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들은 Gift Aid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특정인에 대한 학비에 대한 지불
- 책이나 음식 등의 구입에 대한 비용, 바자회 등에서 구입 비용
- 행사 등에 대한 입장료
- 복권이나 복권식 판매(Raffle)에 대한 구입비용. Raffle 티켓 구입 비용은 기부가 아니지만, Raffle 행사 입장권은 기부로 인정. 상을 탈 가능성이 적고, 기대가 낮다는 것은 기부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상의 가치가 낮다는 것 등도 기부 여부와 무관

나) Payroll Giving

Payroll Giving이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이다. 고용주가 Payroll Giving Scheme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조세감면을 받는다. 조세감면은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고용주는 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국세청이 승인한 Payroll Giving Agency에 보내고 Agency는 모아진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한다.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repayment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고,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은 2000년 개정조항에서 삭제되었다.

2000년부터 3년 동안, 정부는 Payroll Giving 기부금의 10%를 추가로 자선단체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Payroll Giving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사례〉

매달 공제금액	자선단체에 전달되는 금액(정부지원금액인 10% 포함)	기본세율 납세자의 비용 (소득세 22% 경감)	Higher Rate 납세자의 비용 (소득세 40% 경감)
10.00	11.00	7.80	6.00
100.00	110.00	78.00	60.00

Agency Charities는 “Charitable Deductions Regulations 1986” 시행규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이다. 영국 국세청의 산하기관인 IR Charities에서는 Agency Charities 신청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gency Charities와 고용주는 시행규칙에서 요건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Agency의 역할은 기부금을 기부자들이 명시한 기부단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모든 조세경감은 소득원에서 기부자에게 주어지므로, Agency Charity나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들에게는 세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다)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

2000년부터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부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이 인정된다. 조세감면 대상은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Benefit)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조세감면은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례〉 기부자가 5,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기부 당시 가치는 각 주당 10파운드. 기부자는 브로커 수수료로 50파운드를 지출하였고 감사의 표시로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50파운드 가치의 책을 증정하였다.

주식 가치	50,000
+ 브로커 수수료	<u>50</u>
	50,050
- 받은 혜택	<u>50</u>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50,000

〈사례〉 주식을 팔고 Gift Aid의 절차를 통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의 가치와 기부자의 비용을 고려한다.

Ⅲ.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65

Higher Rate인 납세자가 100,000파운드 가치인 주식을 판 경우,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순 이득이 25,000파운드이며, 여기에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 방법 1: 판매 후 Gift Aid

1. 판매	
판매 총수입	100,000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25,000×40%)	10,000
세금 후의 순이익	90,000
2. Gift Aid	
기부	90,000
자선단체의 기본세율 reclaims(22%) (22/78×90,000)	25,384
총 자선단체가 가져간 금액	115,384
총 자선단체가 가져간 금액에 대한 기부자의 Higher Rate Tax Relief 18% (기본세율22%와 Higher Rate40%의 차)	20,769
기부자의 비용	100,000
주식의 가치	20,769
- Tax Relief	79,231

- 방법 2: 자선단체에 주식기부

자선단체가 얻은 주식의 가치	100,000
가치에 대한 기부자의 Tax Relief (at Higher Rate Tax 40%)	40,000
기부자의 비용	60,000

2) 법인

가) Gift Aid

법인에 의한 Gift Aid의 경우는 신고서(Declaration)가 요구되지 않는다. 법인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조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과세수익(Taxable Profit)에서 제외한다. 기부금 자체는 세금부과 없이 자선단체에게 전달되고, 개인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

2000년부터 법인이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이 인정된다. 2002년부터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이 인정된다. 조세감면대상 금액은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1) 자선단체

‘자선단체(Charities)’란 “자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나 신탁”을 의미한다. 자선의 목적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The British Muse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 Commission and 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들은 일반적으로 자선단체가 받는 조세혜택을 인정하므로,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경우도 자선단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CC(Charity Commis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을 두고 있다. CC와 OSCR에서는 자선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 자선단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등록한다. 여기에 등록된 자선단체들에게만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에 세제상 혜택이 인정된다. 그 밖에 CC와 OSCR에서는 자선단체들을 관리, 규제하며 자선활동을 지원한다. 자선단체들은 CC와 OSCR에게 매년 필수사항(활동 내역, 재정사항 등)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커뮤니티(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로 등록된 스포츠 클럽은 2002년부터 다양한 세금경감조치와 자선단체와 유사한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의 Gift Aid의 경우, 자선단체로 취급되어 동일한 조세혜택이 인정된다. 즉,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은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본세율 세금 반환을 국세청에 청구 가능하다.

4. 일 본

가. 기부금 관련 세제

일본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하다.

기부금 공제액은 다음 ①,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5천엔(2005년 이전 분은 1만엔)을 차감한 금액이다.

- ①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 ② 당해 연도 총 소득 금액의 30% 상당액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의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재무대신의 지정에 의함),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의 기부금, ④ 정치단체 등에의 기부금을 말한다. 총 소득금액이란 결손금, 잡손실,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공제 후의 총 소득금액, 특별공제 전의 분리과세의 장·단기 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 선물거래에 관한 잡소득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일반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손금인정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단체 유형별 손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 특정공익증진법인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일정의 금액을 한도록 손금산입
-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동일한 손금산입한도
-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금액은 (소득금액×2.5% + 자본금액×0.25%)의 50%임

	기부금 유형	공제 한도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액(소득금액의 30% 한도) - 5천엔)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공제 없음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 × 50%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일본의 경우 기부받은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받는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일반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일반기부금)

1) 지정기부금 대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재무대신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법37④二, 영75).

-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하는 것이 확실한 것

2) 특정공익증진법인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영 77).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 지방독립행정법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다음의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

- 시험연구, 병원사업의 경영, 사회복지사업의 경영
-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종합연구개발기구,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일본적십자사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재)일본체육협회, (재)무역연수센터, (재)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방송프로그램센터, (재)장수사회개발센터, (재)일본올림픽위원회,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재)대판만지역 개발추진기구, 정신장애자사회복귀촉진센터, 학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육영회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지정을 받은 것
- 민법법인으로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인문과학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함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또는 학교 및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 설립된 준학교법인에서 전수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인

3) 인정NPO법인

NPO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각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NPO

법인을 「인정NPO법인」이라 부르며, 이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NPO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간단한 법인격의 취득과 지원세제를 주로 하여 법정비가 추진되어 왔으나 지원세제의 논의를 보류하고 1998년에 NPO법이 성립되었다. 법이 제정될 당시 「NPO법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세제를 포함한 NPO제도의 개선」을 행한다고 하는 부속결의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 시작한 인정NPO법인제도는 1998년의 NPO법의 부속결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세특별조치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 실시되었다. 또한 2002년의 NPO법 개정에 따라 NPO법에 인정 NPO법인제도가 규정되어, NPO법은 일단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인정 NPO법인은 매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재 그 단체 수는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

5. 프랑스

프랑스는 2003년 8월 1일 세법 개정으로 과거에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던 방식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개인이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s, associations of general interest),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s)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66%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한다.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470유로까지는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0%까지 6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한 후 차기 5년간 이월하여 개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legal entities)은 공익협회(public utility associations, general

interest associations), 공익재단(public utility foundation)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매출의 0.5%를 한도로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한 후 5년간 차기로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단순한 기부(simple donations)’와 ‘계약에 의한 기부(contractual donation)’를 구분하고 있다. 계약에 의한 기부는 일반적으로 보조금(grant)이나 기부금 수취로 인해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 기부(conditional gift) 같은 기부를 말한다. 유언에 의한 기부도 계약에 의한 기부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s)는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가 지급하는 계약에 의한 기부와 단순한 기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단체들은 행정관청의 승인에 따라 공익단체 이외의 단체로부터 계약에 의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
-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
- accredited federations of family association
- associations carrying out exclusively medical or scientific research or charitable assistance
- associations financing electoral campaigns
- associations financing political parties

계약에 의한 기부는 다음 단체에 지급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수수료(registration fee)가 부과된다.

- 수입이 과학·문화·예술, 환경 및 자선, 동물보호에 지출되는 공익단체
- 수입이 과학 및 의학 연구에 지출되는 협회(association)
- 고등교육과 대중교육의 수행하는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공익단체
- 종교단체

○ 전쟁기념물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

	기부 유형	공제한도
개인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470유로까지: 기부액의 75% 세액공제 470유로 초과금액: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법인	공익단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매출의 0.5%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자료: U.S. International Granting, 2006.

고용인 2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기부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인 이상 고용기업인 6,000여개의 기업 중 18%에 해당하는 기업이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²⁸⁾. 2005년 기업기부금 지출액 규모는 10억유로이며, 기부법인의 53%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았다. 법인 기부의 52%가 문화분야에 대한 기부이고 31%가 기술지원에 대한 기부였다.

6. 독 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 따라 5%인 경우와 10%인 경우가 있다.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

28)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아르코에서 발췌

가 비영리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이고, 소득공제 한도에 있어서 총 수입의 5% 혹은, 매출액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0.2% 중 한 가지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소득공제의 한도가 5% 대신 10%로 증가하는데, 총 수입의 10% 혹은, 매출액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0.2% 중 한 가지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특정 재단(공법상 재단과 특정 민간 비영리법상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과 회사 모두 20,45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개인기부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한 경우, 307,00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9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하다.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을 위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25,565유로를 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1년 차기이월, 5년 전기 이월이 가능하다. 기부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6년 차기이월이 가능하다.

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조세혜택 사항
개인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일반 비영리단체)	• 소득금액의 5%까지 혹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 소득금액의 10%까지 혹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
법인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일반 비영리단체)	• 총 소득의 5%까지 혹은 총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2% 중 기업이 선택하여 소득공제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 소득금액의 10%까지 혹은 총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2% 중 기업이 선택하여 소득공제

기부금 세제개정안이 의회 표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총 소득의 5~10%에서 20%로 인상하고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랐던 규정을 20%로 단일화하였다. 특정의 자원봉사활동(노인, 환자, 장애인을 매월 20시간 이상 무보수로 돌보는 경우, 혹은 공법상의 법인이나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부정확한 기부금 증명에 대한 책임 완화, 잘못 사용된 기부금에 대한 법규를 완화하고 법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7. 대 만

개인의 경우 정부, 교육, 문화, 공공복지,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정부, 국방, 군대 후원 등에 기부한 경우는 20%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 문화, 자선, 공공복지 단체들의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0%를 한도로 한다. 정당에 기부한 경우는 총 소득의 20%를 넘지 않고, NT\$200,0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기부한 경우는 NT\$20,0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에 기부한 경우는 총 수입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영리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다음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국방을 위한 건설, 군대 지원, 그 외의 재무부가 인정하는 목적을 위한 기부인 경우,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공공복지와 관련된 민법 규정과 그 밖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육, 문화, 공공복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최대 10%까지 인정된다.

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조세혜택 사항
개인	정부, 국방, 군대후원	소득금액의 100%
	등록된 교육, 문화, 자선, 공공복지	소득금액의 20%
	정당, 공직후보자	20만NT\$(소득금액의 20%) 2만NT\$
법인	정부, 국방건설, 군대위문, 정부와 재무부가 허가한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손금산입
	교육, 문화, 공익,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는 단체	소득금액의 10% 손금산입

8.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요건들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 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대만이며, 프랑스만이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방식 국가들 대부분은 전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정하여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기부금의 조세지원 범위를 비교하면,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공제 한도가 가장 크다.

〈표 Ⅲ-3〉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국	기부금액의 22% 또는 40%, 공제한도 제한은 없음		
일본	(기부금액(소득금액의 30% 한도) - 5천엔) 소득공제		
대만	소득금액의 20%		
한국	소득금액의 100%~10%		
독일	10% 또는 5% 한도내(개정안: 20%)		

주: 한국의 경우, 개인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100%, 50%), 지정기부금(10%)에 따라 다름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의 조세지원의 범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동소이하다. 대개의 국가들의 경우,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표 Ⅲ-4〉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매출의 0.5% 한도)
영국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일본	기부받는 단체별로 다름		
한국	손금산입 한도 50%~5%		
대만	손금산입 한도 10%		
독일	5% 또는 10% 한도내(개정안:20%)		

주: 1) 일본의 경우, 기부단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전액 손금산입, (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 (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 × 50%로 나뉘어짐
 2) 한국의 경우, 법인기부금이 법정기부금(50%), 특례기부금(50%), 지정기부금(5%)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달라짐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1. 우리나라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공익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그 설립근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설립근거 법에서 해당 법인의 운영 및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관리 제도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유지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 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이란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동법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법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²⁹⁾.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79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나. 정보 공개제도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의무규정이 2007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공익법인 등은 법에 명시된 서류를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이 해당 서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³⁰⁾. 공시의무 대상인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종교단체와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³¹⁾. 2007년 현재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23,961개로 전체의 8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영명세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³²⁾.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해당 장부 및 관련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³³⁾.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①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또는 ②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자산가액 합계액의 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³⁵⁾. 공

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①, ②

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개정안(2008.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3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3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①

3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②

익법인 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은 상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³⁶⁾.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포함) 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와 다음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³⁷⁾.

-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 포함)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등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상 독립된 2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³⁸⁾. 세무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3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⑤

3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⑤

3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①

3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①, ②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 여부³⁹⁾,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의 준수 여부,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⁴⁰⁾.

일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즉 출연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⁴¹⁾. 공익법인 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

3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참조

4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③

4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⑤

의 규모,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은 상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07년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⁴²⁾.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외부감사에서 제외한다⁴³⁾. 참고로, 2007년 현재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현재 26,303개로 전체의 약 95.6%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신설된 제도로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다⁴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하며, 종교단체는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한다⁴⁵⁾.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수입과 지출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지급받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 인건비·임차료 지급,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지출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등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으나 전용계좌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③

4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3항, 4항

4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4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⁴⁶⁾. 주무관청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 공익법인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지도나 관계전문기관의 감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때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감사의 대상도 주무관청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⁴⁷⁾.

라. 기부금 관리제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에는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2009년 1월 1

4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②

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2007. 12. 31 개정). 또한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2007. 12. 31 신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 12. 31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⁴⁸⁾.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다⁴⁹⁾.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①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④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⑤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⑦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⑧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

48)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로 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⁵⁰⁾. 기부금품의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회계감사의무도 부여하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청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미 국

가. 비영리단체의 범위

미국세법은 §501(c)에서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면세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세청으로부터 §501(c)(3)의 단체로 인정되면 연방소득세 면세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자선기부금으

50)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②

로 인정한다.

§501(c)(3)에 해당하는 면세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순수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정의⁵¹⁾ 하고 있으며 면세단체의 유형에서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제외하고 있다.

IRC §501(c)(3)의 단체는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으로 구분된다⁵²⁾.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은 독립재단, 기업재단, 지역사회재단 및 사업재단으로 분류되며, 이 중 사업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재단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주로 자선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비사업재단(nonoperating Foundation)이라는 특징이 있다.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은 소수의 개인 혹은 가문으로부터 조성금을 받아 설립되고 그 후 이들 혹은 이들의 후손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운영되는 재단이다. 기업재단(Company Sponsored foundation)은 기업으로부터 조성

51) Corporations, and any community chest, fund, or foundation,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testing for public safety, literary, or educational purposes, or to fost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but only if no part of its activities involve the provision of athletic facilities or equipment), or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no part of the net earnings of which inures to the benefit of any private shareholder or individual, no substantial part of the activities of which is carrying on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h)), and which does not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ing the publishing or distributing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or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52) 김진수(2007), p. 41

금을 받아 설립되고 그 후 이 기업으로부터 이윤의 일부를 기부받아 운영되는 재단이다.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대도시 지역의 다양한 자선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이고 사업재단(Operating Foundation)은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재단이다.

나.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관리제도

미국 내국세법 §501(c)(3)에 의해 면세 자격이 있는 기관은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공공안전 점검, 전국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활성화,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법인, 기금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세법에서는 면세 자격이 주어지는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의 형태로 법인이나 기금 및 재단(communitry chest, fund, foundation)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협회(association)나 신탁도 기금 및 재단의 자격으로 면세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파트너십의 형태는 자선단체로서 면세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만일 면세단체의 설립 형태(form)에 변화가 발생하면 면세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IRS로부터 면세단체로 인정받은 법인이 아닌 단체가 만일 법인이 되었다면 다시 면세단체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익성 테스트를 만족해야 하는데, 공익성 테스트는 조직테스트(Organization Test)와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하면 면세자격을 잃게 된다.

1) 조직테스트(Organizational Test)

조직테스트는 해당 기관의 면세목적 활동, 자산의 사용 및 기관의 해

산 등에 관하여 정관에 적절히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소득세 시행규칙(regulation)에서는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인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과 단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 내규(bylaws)가 그것이다⁵³⁾. 법인의 형태를 지닌 단체의 경우 정관을 articles of incorporation이라 하고 법인 형태가 아닌 단체의 경우 constitution, agreement of trust, declaration of trust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이 아닌 경우 두 가지의 규정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규정은 단체가 조직테스트를 위배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IRS가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자선단체가 비과세단체가 되려면, 자선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단체의 목적이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에 해당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치안점검, 전국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대회 활성화, 아동 및 동물학대 방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단지 “기부금을 받고 §501(c)(3)에 설명된 단체에게 기부금을 지불하고 IRC의 §501(a)에 의해서 과세 면제”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organizational test의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는 단체가 “자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로 organizational test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구체적인 자선 목적을 명시한 경우라도 면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⁵⁴⁾. 예를 들어,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social club 운영에 종사하는 단체는 정관에서 §501(c)(3)의 자선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조직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단체가

53) Reg. §1.501(c)(3)-1(b)(2).

54) Rev. Rul. 69-279, 1969-1 C.B. 152; Rev. Rul. 69-256, 1969-1 C.B. 151.

구체적인 자선 목적보다 광범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독점적으로 하나 이상의 면세 자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자산도 면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자산이 정관 등에 명시된 면세 목적 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분배되거나 판결에 의해 해산된 단체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단체에 분배되어야 한다. 정관 등에서 해산시 구성원이나 주주에게 자산이 분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자선단체는 조직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체의 해산으로 자산이 적격 자선단체가 아닌 개인 재단설립자(individual founders)에게 갈 수 있다면 자선단체로서의 연방세 면제자격은 없어진다. 자산 기부(dedication-of-assets) 요건은 자선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자선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 목적과 과세 목적 모두를 지니는 단체는 조직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한다⁵⁵⁾.

2)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

운영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면세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단체의 기능을 보는 것이다. 세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테스트는 면세자선 단체와 관련한 테스트이다. 자선단체의 자격을 얻으려는 단체는 독점적으로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IRS는 단체의 자원이 반드시 §501(c)(3)과 관련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의 자선 목적에 사용되어 operational test를 만족하는지 조사한다. 만일 순이익(net earnings)이 주주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된다면,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을 위해 독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운영테스트는 단체의 서류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55) Rev. Rul. 69-256, 1969-1 C.B. 151; 1969-1 C.B. 152.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정에 나타난 규정만으로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입법·선거운동기관(Action organization)이란 활동의 상당부분이 선전 등을 통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체를 말하며, 이러한 입법·선거운동기관은 독점적으로 하나 이상의 자선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제도

1) IRS에 신고

§6033에 의하면, §501(a)에 의해 과세가 면제되는 모든 단체는 해당 단체의 총 소득, 매출액(receipts), 지출액(disbursements)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매년 IRS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⁵⁶⁾. 교회, 각 과세연도에 총 수취액(gross receipts)이 5,000 달러 미만인 특정 단체, 독점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⁵⁷⁾. 특정단체란 다음과 같다.

- §501(c)(3)에 기술된 종교단체
- §170(b)(1)(A)(ii)에 기술된 교육단체
- §501(C)(3)에 기술된 자선단체 또는 아동 및 동물 학대 금지를 위한 단체로서 만일 해당 단체가 미국정부 및 주정부, 정당지부(political subdivision)가 제공한 자금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일반대중의 기부금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
- §501(c)(3)에 기술된 단체로서 해당 단체가 상기에 기술된 종교단

56) §6033(a)

57) §6033(a)(2)(A), §6033(a)(2)(C)

체에 의해 운영되고 감독·통제되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

- §501(c)(8)에 기술된 단체
- §501(c)(1)에 기술된 단체로서 해당 단체가 미국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agency or instrumentality)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의 자회사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501(c)(3)에 기술된 모든 단체는 매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⁵⁸⁾.

- 당해 연도의 총 소득
- 소득과 관련이 있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용
- 면세 목적을 위한 당해연도 지출
- 자산, 부채, 자본 규모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 해당연도에 수취한 총 기부금 및 증여 금액과 모든 중요한(substantial)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 재단관리자⁵⁹⁾와 고임금인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 재단관리자와 고임금 종업원으로 기술된 개인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된 보수 및 기타 지급금
-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501(h)⁶⁰⁾)한 것으로서 로비활동과 관련된 금액
- §501(c) 또는 단체의 면세 목적으로부터 자금의 이전 또는 수입 및 지출의 §527⁶¹⁾에 기술된 다른 단체들과 직·간접적인 거래 등에 관한 정보
- 다음의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 중에 단체의 관리자 또는

58) §6033(b)

59) §4946(b)(1) ‘an officer, director, or trustee of a foundation(or an individual having powers or responsibilities similar to those of officers, directors, or trustees of the foundation),’

60) §501(h) Expenditures by public charities to influence legislation

61) §527 Political Organization

단체에 관련된 세금의 예상액

-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출 초과분에 대한 세금 (§4911)
- 특정 단체의 적격 로비 지출에 대한 세금 (§4912)
- §501(c)(3)의 정치적 지출에 대한 세금 (§4955)
- §4958(relating to taxes on private excess benefit from certain charitable organizations)에 의해 당해연도에 단체 관리자 또는 비적격자와 관련하여 단체에 부과된 세금과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 단체가 보상한 금액
- 세입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면세단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penalty)를 부과하고 있다⁶²⁾.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배한 경우 또는 신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로부터 매일 20달러씩 부과되고 최고금액은 하나의 신고서에 대해 10,000달러 또는 총 수입(gross receipt)의 5%이다. 해당 단체의 총 수입이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일 가산세가 20달러가 아닌 100달러가 되고 최고금액은 50,000달러가 된다.

2005년 1월에 IRS는 특정 면세단체에게 2006년부터 전자신고서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regulations)을 발표하였다⁶³⁾. 자산이 1억달러를 초과하는 면세단체는 Form 990의 전자신고서를 의무화하였다. 전자신고 의무조항은 2007년부터 총 자산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면세단체로 확대한다.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과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2007년부터 Form 990-PF에 의한 전자신고가

62) §6652(c)(1)(A)

63) PWC(2005), "Mandatory Electronic Filing of Exempt Organization Tax Returns Soon to be a Reality"

의무화된다.

2005년 2월 IRS는 특정 면세단체에 대해 2006년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2006년 신고분(2005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총 자산이 1억달러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7년 신고분부터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재단과 자선신탁(charitable trusts)에 대해 Form 990-PF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과거에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던 소규모 면세단체에 대해서 2008년부터 매년 Form 990-N을 통한 전자신고(electronic notice)를 의무화 하였다⁶⁴). 소규모 면세단체란 총 수입이 25,000달러 이하인 단체로서 Form 990(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Income Tax) 또는 990-EZ(Short Form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신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는 Form 990-PF를 신고하는 민간재단, Form 990 또는 990-EZ를 신고하는 supporting organization(§509(a)(3)), 신고의무가 없는 교회 및 교회 관련 단체이다.

3개년 연속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IRS는 면세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3년째 되는 해의 신고 마감일에 면세자격이 취소된다.

2) 신고자료의 공개

IRS에 제출된 비영리단체의 신고서 자료는 Guidesta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Guidestar의 역할은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선기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선 및 비영리 활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Guidestar

64) IRS, "New annual Electronic Filing Requirement for Small Tax-Exempt Organizations-e-Postcard(Form 990-N)"

는 비영리단체들이 자신의 정보를 솔직하고 완전하게 공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Guidestar에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과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으며 Guidestar는 IRS 외의 다른 원천을 통해 제공되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자, 자금모집인, 연구자, 교육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 정부 및 방송매체들이 Guidestar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Guidestar는 현재 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⁶⁵⁾.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서비스를 통해 자선단체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유료서비스를 통해 기부를 원하는 단체의 상세 정보를 입수해 유사한 단체와 비교를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는 단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감독과 인가를 위해 연방·주·지역 정부와 시스템 관리, 유지, 배포 등에 관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면세요건의 정기적인 검토

면세자격이 있는 단체들은 단체의 재정, 관리규정,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Form 990, 990-EZ, 990-PF 양식을 통해 IRS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세단체는 Form 990 또는 990-PF 등을 통해 면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나 설립 및 관리 규정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공개해야 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 단체가 더 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IRS는 단체의 면세 자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65) http://www.guidestar.or.kr/guidestar/guide_us.asp

3. 일본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일본의 경우 「NPO」는 영어의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비영리조직을 의미하지만, 이는 광의의 개념이고 다양한 의미로 NP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정의한다면, 지방공공단체나 동창회 등도 포함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 하면 ‘민간조직으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공익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공익 목적을 갖는 민간비영리조직」으로서 광의의 NPO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NPO라고 하면, 광의의 NPO에서 민법상의 공익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한 조직을 의미한다.

NPO법인이란 1998년 12월 1일에 시행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라 법인격을 얻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한다.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NPO법’으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NPO법인으로 약칭하여 많이 사용한다. NPO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비영리활동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간단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고 민간 자선단체(프론티어)조직이 재해 원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NPO법이 제정되었다.

나. NPO법인

1) NPO법인의 정의

NPO법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NPO법인이라 정의하고 있다⁶⁶⁾.

- 특정비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단체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사원 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건이 없고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인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NPO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다음에 열거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⁷⁾.
- 보건, 의료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
 - 사회교육의 추진을 위한 활동
 - 마치즈쿠리⁶⁸⁾ 추진을 위한 활동
 - 학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동
 -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 재해지원 활동
 - 지역안전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 추진을 위한 활동

66) NPO법 제2조 2항

67) NPO법 제2조 1항

68) 주민 주체의 커뮤니티형성 운동으로서,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물리적·사회적·문화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임.

- 국제협력활동
-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 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
-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
-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직업능력의 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
- 상기 열거된 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원조 및 지원 활동

2) NPO법인의 정보공개 및 감독

가) 정보공개

NPO법은 NPO법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즉, NPO법인은 설립이 인정된 후에도 NPO법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 외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된 배경은 「NPO법 해석(191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 상호의 확인에 의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NPO법인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에 의한 확인을 통해 NPO법인을 사회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관여를 사후적인 것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NPO법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PO법인은 매 사업연도 초 3개월 이내에 전 사업연도에 대한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다음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즉 3년간)주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NPO법 제28조 1항).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

류는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등과 임원명부 및 전년도 보수를 받은 자의 명부, 10인 이상의 사원 서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등이다. NPO법인은 사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등, 정관, 증명, 등기에 관한 서류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되어야 한다(NPO법 제28조 2항). 이해관계인으로는 예를 들어, NPO법인에 대한 채권자, 자금 제공자, 서비스 수익자 등이 있다.

NPO법인은 내각부령·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매 사업연도 1회, 다음의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NPO법 29조 1항).

- 내각부령·도도부현 조례에서는 사업연도 초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서와 함께 공개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 변경이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임원명부 등
 - 전 사업연도에 정관 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제출서류: 전기 사업보고서 및 임원명부 등에 추가하여 정관, 정관변경에 관한 인증서류의 사본(단, 정관 변경이 인증사항인 경우), 정관 변경에 관한 등기서류의 사본(단, 정관 변경이 등기사항인 경우)
- 관할청은 NPO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기 서류에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내각부령·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열람해야 함(NPO법 29조 2항)
 - 이 열람청구는 사무소 비치서류의 열람 경우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라도 열람청구를 할 수 있음
- NPO법인은 임원의 성명·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임원이 새로 취임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을 한 경우 등에는 관할 부서에 당해 사항을 신고해야 함

나) 감독제도

NPO법은 민간비영리조직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NPO법인이 해야 하는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시민이 해당 NPO법인의 활동을 파악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NPO법인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제도로서 NPO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제도도 마련하였다. 감독 방법으로는 보고 및 검사(NPO법 41조), 개선명령(NPO법 42조), 설립인정의 취소(NPO법 43조)에 관한 규정 외에 NPO법인에 대한 폭력단의 관여를 배제하는 측면에서 경찰청장관, 경시총감, 도부현 경찰본부장과 관할청과의 사이에 의견청취 등의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

(1) 보고·검사

관할청은 ① NPO법인의 의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② 해당법인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들어가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NPO법인의 자주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보고·감사는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다고 하는 혐의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NPO법 41조 1항). 검사에 있어서 검사를 행하는 직원은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검사대상 사무소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교부 요구가 있으면, 당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NPO법 41조 2항). 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가 NPO법에 근거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NPO법 41조 3항).

보고·검사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이유’는 단순한 ‘의혹’으로는 부족

하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2003년 2월에 내각부 「NPO법의 적절한 운용 등에 관한 검토회」에서 발표한 「시민활동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NPO법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 논점정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 경찰당국, 검찰당국이 NPO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해 당해 NPO법인의 임원 등을 강제 수사한 경우(절도죄나 상해죄 등, 법인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범죄는 제외)
- 그 시행행정이 법령에 근거하여 NPO법인에 대해 업무의 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 NPO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동종의 심각한 소비자피해 등이 다수 보고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고, 법령위반 등의 의심이 상당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고 보여지는 경우
- 허위의 내용 보고가 행해지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한 경우

NPO법상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및 정관에 위배하는 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보고징수 등을 할 수 있다(NPO법 41조 1항). 그러나 보고 징수 등은 관할청의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보고 징수 등의 감독권한의 행사 이전에 NPO법인이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하여 사태가 개선되고 있다면 관할청이 감독권한을 굳이 행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민활동의 발전을 목표로 한 NPO법 운용방법에 대하여 - 논점정리 -」에서는 법령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NPO법의 설립취지·이념이 NPO법인의 설립책임과 시민에 의한 검토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우선은 당해 NPO법인에 대해, 그러한 혐의에 대한 자발적인 설명을 시민에게 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NPO법인에 대해서 시민을 향해 자발적인 설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관할청에게

요구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본래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것이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행정지도를 받는 측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지도가 있고 그것이 활발해지면 NPO법인의 자주성을 상당히 손상시키게 되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법령위반 등의 의혹이 '상당한 이유'의 존재가 확실하고 관할청에 의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보고징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다면 감독권한의 행사보다도 NPO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NPO법인제도에서도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NPO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청은 NPO법인에 법령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상당한 이유'를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 해당 NPO법인에 대하여 그 의혹에 대한 자발적인 설명을 시민에 대해 행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설명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보고징수 등을 행해야 한다.

NPO법인은 NPO법이 규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청으로부터 인정받아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NPO법인으로의 설립인증을 받은 후에도 운영상으로 NPO법 소정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설립인증 후에 NPO법 소정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므로 관할청으로부터의 보고·검사의 대상이 된다. 내각부는 2003년 3월 25일부로 「'NPO법의 운용방침'에 대하여」라고 하는 서면에 따라 「특정비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NPO법 2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NPO법 2조 2항 1호)의 요건에 관하여 보고·검사의 대상이 되는 감독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의 지출규모가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총지출액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② 기타사업에 있어서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서 적자인 경우, ③ 기타 사업의 수익이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서

특정비영리활동 관련 사업회계에 전액 이월되지 않은 경우, ④ 관리비가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3분의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고·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준이 많은 NPO 법인의 실태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NPO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개선명령

개선명령은 관할청이 NPO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NPO법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NPO법 제32조).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① NPO법 12조 1항 2호, 3호 또는 4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③ NPO법인의 운영이 뚜렷하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NPO법인의 인증요건은 법인 인증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NPO법 41조의 보고징수·검사 또는 NPO법인으로부터 받은 제출서류를 통해 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청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NPO법만이 아니라 일반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다. NPO법인의 내부적인 규범인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할청에 의해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라면 감독권한의 행사보다도 NPO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되는 것이 NPO법인제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NPO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활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NPO법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 논점정리 -」에는 NPO법인으로부터 보고징수 등을 행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우선은 당해 NPO법인에

대하여, 자발적인 설명을 시민에 대하여 하도록 요청하고 사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NPO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은 당해 NPO법인에 개선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보고징수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당해 NPO법인에 대하여 자주적인 설명을 시민에게 하도록 요구하고, 후에 사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3) 인증 취소

NPO법은 NPO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청이 법인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⁹⁾. NPO법 설립의 인증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므로 설립인증이 취소되면 NPO법인은 청산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인격이 소멸된다⁷⁰⁾.

관할청이 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NPO법인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⁷¹⁾.

- 첫째, NPO법인이 NPO법 42조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방법에 의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둘째, 3년 이상에 걸쳐 NPO법 2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임원명부 및 정관 등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만, NPO법인의 법령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개선명령에 의해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고 다른 법에 의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고 관할청은 NPO법인의 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NPO법 43조 2항)

69) NPO법 43조

70) NPO법 31조 1항 7호

71) NPO법 43조 1항

설립인증의 취소처분은 NPO법인에 있어서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수속법에 의거하여 「청문」의 수속이 필요하다(행정수속법 13조 1항 1호). 이러한 審理에는 관할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NPO법인이 공개에 의해 심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할청은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NPO법 43조 3항). 그러나 공개의 심리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에 의해 행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 NPO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NPO법 43조 4항).

(4) 벌칙

NPO법은 NPO법 위반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벌칙에는 형벌로서 벌금형과 행정상의 처벌로서 과태료(過料)가 있다.

벌금형의 경우, NPO법 위반의 벌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NPO법 47조 및 48조가 규정하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이것은 NPO법 42조가 규정하는 업무개선명령에 따른 자에 대한 벌칙으로 이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NPO법 47조에 의해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수속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또한 벌금형에 처해지면 전과가 된다. NPO법인의 이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NPO법 47조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가 NPO법 4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외에 NPO법인도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NPO법 48조). 즉, NPO법인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과태료(過料)의 경우,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NPO법 4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過料」란 금전을 지불하는 제재로서 형법 9조에서 규정하는 벌금 및 科料와는 다른 것이다. 「過料」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형벌은 아니며, 수속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수속법이 적용된다.

다. 인정 NPO법인

1) 인정 NPO 법인의 성립 요건

가) public support 테스트

public support 테스트란 NPO법인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는지 수입 면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정 NPO법인의 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public support 테스트의 요건에 있어 실적판정기간에 대해 다음의 판단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적판정기간이란, 신청사업연도의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종료일 전 2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전 2사업연도를 합한 기간을 말한다.

○ 판단기준: 수입기부금총액 등 ÷ 총수입금액 등 \geq 1/5

단, 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기비율 \geq 1/10 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기 기준은 원래 3분의 1이지만 특례에 의해 5분의 1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수입기부금총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부자의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1인당 연간 1,000엔 미만의 기부금, 1인당 기준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이다.

○ 1인당 기준한도액 = 수입기부금 총액 \times 5%

총수입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수입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위탁사업 수입
-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 수입

-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임시적인 수입
- 상속·유증에 의한 기부 중 1인당 기준한도초과액
- 1인당 연간 1,000엔 미만의 기부금
- 기부자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소규모법인(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800만엔 미만인 법인)이 실적판정기간에 임원 및 사원을 제외한 50인 이상의 기부자로부터, 1인당 3,000엔 이상의 기부금으로 기부자가 명확한 것을 받는 경우에는 2006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신청에 대해 public support 테스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만일 이 계산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기준(1/1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 $\{(\text{수입기부금 총액} - 1\text{인당 기준한도초과액}) + \text{국가 등의 보조금} + \text{사원의 회비}\} / (\text{총수입금액} - \text{국가등의 위탁사업수입등}) \geq 1/3$

나)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요건

단체 구성원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된 요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을 합계한 것이 전체의 사업활동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 회원 등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활동(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 제외) 및 회원 등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 범위의 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의 저작물 또는 특정인과 관련된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인의 뜻에 반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원 등이란 ① 법인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나 대부를 받는 자로서 그 법인의 장부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 동시에 그 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나 대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자 ②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에 참가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장부서류 등에 이름이 기재된 자, 동시에 실제로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에 참가한 자 ③ 임원을 포함한다.

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 등은 다음의 행동을 포함한다.

- 이용자가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활동
- 이용자가 통상의 대가보다도 극히 적은 대가(약 10% 정도)를 지불하는 활동
-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비용 중 이용자가 본래 부담할 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의 어느 것이든 실비상당액만을 이용자가 지불하는 활동
- 법인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의 금액과 그에 부수하는 실비상당액만을 이용자가 지불하는 활동

특정 범위의 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이란 특정 단체의 구성원, 특정 직위의 자, 특정 지역의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인에 관련된 활동이란 특정의 저작물이나 특정인에 관련하여 보급계발, 광고선전,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다) 운영조직·경리의 적정성 요건

인정 NPO법인은 운영조직 및 경리에 대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영조직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frac{\text{임원 또는 사원 중 친족 등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사람 수}}{\text{임원 또는 사원의 총 수}} \leq \frac{1}{3}$$

$$\frac{\text{임원 또는 사원 중 「특정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자」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사람 수}}{\text{임원 또는 사원의 총 수}} \leq \frac{1}{3}$$

- 회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것 혹은 청색신고법인과 동일한 거래기록, 장부를 보존할 것
- 부적정한 경리를 하지 않을 것

라)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인정 NPO법인이 상시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만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특정의 공직자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 종업원 또는 기부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을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 등에게 기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인정 NPO법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사업비에서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frac{\text{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text{총사업비}} \geq 80\% (\text{실적판정기간에 판정함})$$

이 비율을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따라 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그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 따라 산정한 비율 대신,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비율에 의해 그 요건을 판정할 수 있다.

수입기부금 총액 중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에 상당한 금액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는데, 이는 기부금의 70% 이상을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111

NPO법인의 본래 목적인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금을 모집하여, NPO법인의 급여나 관리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건이다.

$$\frac{\text{수입기부금총액 중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에 충당한 금액}}{\text{수입기부금 총액}} \geq 70\%$$

(실적판정기간에 판정함)

마지막으로, 200만엔 초과 해외송금 등을 행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제출).

마) 정보공개적 적정성 요건

인정 NPO법인은 항상 다음의 서류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및 정관 등
 - NPO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에 일괄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임원명부, 사원 중 10명 이상의 자를 기재한 명부
- 임원보수 또는 종업원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중 조성금의 지급 및 해외송금 또는 해외 송금시 국세청장관에 제출한 서류
- 자금에 관한 정보: 수입금액의 원천별 명세, 차입금 명세 등
-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정보: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는 경우 그 내용, 요금조건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함
- 거래에 관한 정보
 - 수입·지출에 대한 거래 금액의 상위 5위까지의 거래처 이름, 명칭, 주소,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에서 임원 등과의 거래에 관한 거래처 이름, 명칭, 관계, 주소, 거

- 래금액,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
- 회원제도에 관한 정보
 - 회원의 자격요건, 회비제도, 회원의 주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시정촌별 수 등을 기재한 서류
- 기부에 관한 정보
 - 기부금모집에 관한 사항, 수입기부금의 사용,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20만엔 이상의 기부자에 관한 사항
 - 20만엔 이상 기부를 한 자의 이름, 명칭, 기부금액, 수령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임원보수와 종업원의 급여에 관한 정보
- 지출기부금의 정보
 - 지출한 기부금액, 지출처의 이름, 명칭, 주소, 지출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200만엔 이하의 해외송금 금액 등
-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바) 기타

기타 요건으로 인정 NPO 법인은 항상 법령위반, 부정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어야 하고 인정 NPO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 개시일에 있어서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정 NPO법인의 인정시에는 관할청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사) 인정 NPO법인 선택의 장단점

인정 NPO법인 선택의 장점은 기부자에게 세제상 우대조치가 있기 때

문에 기부를 모집하기가 일반 NPO법인보다 쉽다는 점이다. 또한 인정 NPO법인은 간주기부금제도가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 등이 경감된다. 간주기부금제도란 세법상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부터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동일법인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의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므로 외부로 지출한 기부금과 합산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인정 NPO법인의 인정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고 많은 일반 NPO법인에 있어서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다.

인정 NPO법인 선택의 단점은 인정 NPO법인이 일반 NPO법인에 비해 운영상의 관리비용·사무비용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인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의 연장이나 갱신이라는 절차가 없고 인정을 계속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상의 관리비용·사무비용의 발생·증대뿐만 아니라 20만엔 이상의 기부자(임원 및 사원 또는 그 친족 등에 한해)의 이름 또는 명칭, 임원·종업원(사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친족에 한함) 개인의 보수액이 열람대상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public support 테스트 요건을 계속 만족하려면 특정의 단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는 것이 어렵다.

라. 공익법인

민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다. 공익법인의 목적 또는 사업이 복수의 주무관청에 관련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지도 감독한다.

〈표 IV-1〉 공익법인의 소관부처

(단위: 개)

	내각부 및 11개의 성	내각부 외의 국	소계	지방사무소의 장							도도부 현지사	도도부 현교육 위원회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후생 노동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소관 부처의 수	12	2	183	1	11	8	31	94	31	7	47	47

자료: 일본 총무성, 『평성 19년판 공익법인백서』, 2007.

1)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회계에 대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1977년 3월에 公益法人監督事務連絡協議會에서 결정하고 1978년 4월 1일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상기 기준의 운용 결과에 따라 1985년 9월에는 동 협의회의 역할을 이어받은 공익법인지도감독연락협의회에서 기준을 개정하였다. 2004년 10월 14일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검토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새로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200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지도감독기준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실제 회계처리 상황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완전히 적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75.7%(18,838개 법인), 수익사업을 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일부만 적용하는 경우가 15.9%(3,963개 법인),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2.5%(621개 법인) 기타가 5.9%(1,471개 법인)이다.

〈표 IV-2〉 회계기준의 적용상황별 법인 수

(단위: 개, %)

		법인 수	회계기준의 적용상황별 법인 수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완전 적용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일부 적용	기업회계 기준 적용	기타
국가 소관	사단	3,683	3,286	342	27	28
	재단	3,093	2,795	248	27	23
도도부현 소관	사단	8,985	6,282	1,825	225	653
	재단	9,263	6,594	1,563	343	768
합계		24,893	18,838	3,963	621	1,471
		비율	75.7	15.9	2.5	5.9
전년도 합계		25,263	18,899	4,151	668	1,545
		비율	74.8	16.4	2.6	6.1

자료: 일본 총무성, 『평성 19년판 공익법인백서』, 2007.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인회계사, 세리사의 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하지 않는 법인이 49.1%(12,234개), 공인회계사감독을 받은 법인이 12.6%(3,135개), 회계·경리 업무를 의뢰하고 있는 법인이 11.8%(2,934개), 지도·상담을 받는 법인이 26.2%(6,511개),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11.5%(2,873개)이다.

2)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가) 공익법인 감독체제의 충실

공익법인 운영 및 지도감독의 바람직한 방향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기 위해 지도감독의 책임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立入検査⁷²⁾에 충실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9일 공익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관계각료회의간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지도감독체제의 충실 등에 대하여」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도감독의 책임체제 확립
 - 각 府省에 총괄공익법인지도감독관 및 연락회의를 설치
- 立入檢査의 충실
 - 立入檢査를 적어도 3년에 1회 실시
 - 立入檢査실시계획을 작성
 - 확실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표(check list) 작성
 - 立入檢査의 실시 결과를 공표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청
 - 각 府省은 자산액 100억엔 이상 및 부채액 50억엔 이상, 또는 수지결산액 10억엔 이상의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요청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각 府省이 立入檢査를 실시한 소관 법인 수는 7,100개 법인(국가 소관 법인 수 전체(7,242개)의 98%)이고 국가 소관 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모든 법인이 적어도 1회의 立入檢査가 실시되었다. 또한 2005년 결산 기준으로 외부감사의 요청의 대상이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소관 법인은 1,127개 법인이고 이 중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국가 소관 법인이 832개 법인이다. 각 도도부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72) 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법규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소·영업소·공장·창고 등에 가서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설비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표 IV-3〉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수 추이

(단위: 개, %)

	2004년			2005년			2006년		
	대상 법인 수	실시 법인 수	비율	대상 법인 수	실시 법인 수	비율	대상 법인 수	실시 법인 수	비율
국가소관	1,159	801	69.1	1,125	799	71.0	1,127	832	73.8
도도부현 소관	1,767	329	18.6	1,785	363	20.3	1,725	371	21.5
합계	2,907	1,119	38.5	2,889	1,151	39.8	2,831	1,192	42.1

주: 합계는 중복된 법인을 제거한 법인 수입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대규모일반사단법인 및 대규모일반재단법인(부채액 200억엔 이상)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의 공개

2001년 7월 23일에 개최된 행정개혁추진본부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따라, 공익법인의 공개 충실에 의한 업무운영의 투명화·적정화를 도모하면서 「행정개혁대강」 등을 기초로 공익법인개혁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년 8월 28일, 공익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關係閣僚會議幹事會에서 「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의 공개에 대하여」를 합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 府省이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 가능한 2001년 중에 업무·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공개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위탁·추천을 받은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각 府省이 2001년 말까지 소관 공익법인 중 국가로부터 사무·사업의 위탁·추천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업무·재무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각 府省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 상황의 관리 및 공익법인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현재 각 府省은 상기 합의내용을 기초로 소관 공익법인의 일람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총무성에는 전국 공익법인의 명칭·주소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검색 가능한 「공익법인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省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본 합의와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각 도도부현에서도 국가와 동일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V. 개인기부의 현황과 분석

한국의 개인기부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비중으로는 0.5%로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개인기부와 비교할 때 주요국들의 평균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개인기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개인기부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개인 기부가 민간기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향후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개인기부 문화의 정착, 그리고 정부의 개인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등에 힘입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민간기부 그리고 민간기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개인기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개인기부에 대한 연구는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적은 상태이다. 이는 개인기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을 뿐 아니라 개인기부에 대한 자료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각 사회마다 민간기부, 특히 개인들이 어떤 동기를 통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여러 복합적인 환경에 의해 개인들의 기부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인기부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갖는 개인기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개

인기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론이 제시되기까지는 우선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개인기부의 특징과 현황을 논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인기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기부와 관련해서 기부의 동기, 기부의 요인 그리고 민간기부와 정부보조금의 관계 등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위를 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소득 또는 부의 일부를 사회적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대한 특징과 현상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1. 개인의 기부 동기

왜 한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 전반 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순수공공재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부금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기부금을 합쳐 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다면 기부자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부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즉, 개인들의 기부 동기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루어짐으로써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기부에 대한 동기를 근거로 해서 기부의 동기를 설명하는 접근을 순수공공재 모형이라고 하고 이 모형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부 동기에 대한 변형된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가. 순수공공재 모형(pure public good model)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는 기부자가 속한 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⁷³⁾.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양의 공공재(또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민간에서 볼 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의 양이 부족하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민간이 스스로 부족한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뤄지게 된다. 개인의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공공재 모형에 따르면 기부자는 기부행위로부터 직접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부와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 기부가 합쳐져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고 이렇게 공급된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소비만을 위해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아껴 공공재 공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 각 개인들의 기부금액은 작을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 기부를 합치게 되면 큰 규모의 기부금액을 이루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여주는 공원, 도서관, 의료시설 등의 공공재 성격을 갖는 재화를 공급하게 되어 자신뿐 아니라 기부자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후생을 높여주게 된다⁷⁴⁾.

공공재 모형을 다룬 대다수 연구들에서는 하나의 순수공공재가 공급된다는 상황을 상정하고 소비자의 효용이 민간재에 대한 소비와 공공재

73) 기부행위에 대한 공공재 모형은 Warr(1982), Bergstrom 등(1986), Roberts(1984) 등이 있다.

74) 자선적 기부를 설명하는 공공재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기부행위가 자신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타주의 모형(Altruism model)이라고도 부른다. Andreoni(1990).

소비의 합에 의존하게 된다⁷⁵⁾. 즉, 공공재 모형에서는 개별 소비자 i 의 효용은 사적 소비와 공공재의 총합에 의존하며, 효용함수는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⁷⁶⁾.

$$U_i = u_i(x_i, g_i + G_{-i}^*) \quad (1)$$

여기서 x_i 는 민간재이며, g_i 는 기부금 수준, G_{-i}^* 는 타인에 의해 공급된 공공재, 즉 $G_{-i} = \sum_{j \neq i} g_j$ 이다. 따라서 $g_i + G_{-i}^*$ 는 개인 기부자 i 를 포함한 모든 기부자들의 기부금의 합계를 의미한다. 한편 개별 기부자 i 는 내쉬 가정에 따라 타인의 기부금 수준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G_{-i} = G_{-i}^*$),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부금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를 동일한 양만큼 감소시키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공공재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⁷⁷⁾.

순수공공재 모형의 논의에서는 이미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공공재 모형은 현실의 개인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개인들의 기부와 재정지원은 완전한 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개인기부를 완전하게 구축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즉, 현실에서는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의 기부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는 하지만 구축효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75) 여기서는 '내쉬(Nash)' 가정을 기반으로 '내쉬 균형' 상태를 분석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76) Andreoni(1989;1990) 참조.

77) Warr(1982), Roberts(1984), Andreoni(2003)

나타나고 있다⁷⁸⁾. 또한 순수공공재 모형에 따르면 매우 소수의 고소득층만이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개인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현실과 배치된다. 이런 순수공공재 이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에 대한 동기가 순수하게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보다는 다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에 따라 새로운 모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민간소비 모형, 비순수공공재 모형, 기부대가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나. 사적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

민간소비 모형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선활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들이 기부를 하는 중요한 동기는 공공재 모형에서처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공공재의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보다는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기부자가 개인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 개인이 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를 들어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기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때문에, 기부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소비재에 지출할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선을 위한 기부활동으로부터 직접 만족을 느끼게 된다⁷⁹⁾. 또한 기부자의 기부행위로부터 얻는 만족은 자신의 기부금액에 비례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부행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

78) 구축효과가 낮다는 현상은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반드시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재정지원의 구축효과는 선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축효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오히려 민간기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79) 민간소비 모형은 Menchik & Weisbrod(1987), Andreoni(1990), Brown & Lankford(1992), Smith et al(1995) 등에서 주장되었다. 민간소비 모형은 Andreoni(1990)에서 일명 'warm-glow' 모형으로 불린다.

게 되어 공공재 모형과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자선적 기여행위 자체에서도 효용이 발생하는 데서 기부 의 이유를 찾는 사적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⁸⁰⁾에서는 공공재 모형과는 달리 기부자들이 자선적 기부를 통해 직접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⁸¹⁾. 사적소비 모형에서는 자발적 기여가 소비재로 취급되며, 효용은 기여의 규모에 비례하게 되고, 개별 소비자 i 의 효용함수는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

$$U_i = u_i(x_i, g_i) \quad (2)$$

여기서, x_i 는 사용재이며, g_i 는 자발적 기여 수준으로 개별소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순수공공재 모형과는 달리 개인의 효용을 높이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g_i 가 결정된다. 따라서 소수에 의해서만 기부행위가 발생한다는 순수공공재 모형의 예측이 주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발적 기부행위가 공공재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 모형에서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사적소비 모형에 따르면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행위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민간의 기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결과를 얻

80) 사적 소비 모형(Private Consumption model)은 Andreoni(1990)에서 'Warm-glow model'로 표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Menchik and Weisbrod(1987), Schiff(1990), Brown & Lankford(1992), Smith et al.(1995), Stark and Folk(1998), Harbaugh(1998a; 1998b) 등이 있다.

81)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히 남을 도왔다는 자선적 기여 행위 그 자체로부터 자기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즉, 이타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업적, 간접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기부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을 수 있다.

다. 비순수공공재 모형(non-pure public good model)⁸²⁾

개인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행위를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만 기부활동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기부행위로부터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현실에서 개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동기가 공공재 모형에서처럼 순수하게 사회 전체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일어나는 경우와 사적소비 모형에서와 같이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부가 한 가지 이유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동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이 기부에 참가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동기 모두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이 반드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참여한다.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동기는 공공재 공급만을 위해 또는 기부행위 자체로부터의 만족만을 위해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을 위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행위 자체로부터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두 가지 동기의 혼합된 동기로부터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어느 한 동기만을 근거로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것보다 현실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

공공재 공급을 위한 기부 동기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선적 기부행위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동기들을 고려한 ‘비순수공공재 모형’은 민간의 자선적 기여행위에 대해 다양한 동기들을 함께 고려하여 공공재

82) Andreoni(1990)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급과 사적소비 동기를 혼합한 모형이다. 실제 개별 소비자의 기부활동 동기가 공공재 모형에서처럼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한 공공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적소비 모형에서처럼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기존의 공공재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대안으로 공공재 공급과 사적소비가 혼합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⁸³⁾.

기부자의 자선적 기부로 생산되는 재화는 순수공공재이지만 개별 소비자들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기부행위 자체에서도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기부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기부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_i = u_i(x_i, G, g_i) \quad (3)$$

여기서 x_i 는 민간재이며, g_i 는 기부금 수준, G 는 공공재 총량, 즉 $G = G_{-i} + g_i$ 이다. 기부금 g_i 가 공공재 G 에 포함됨과 동시에 민간재 형태로 효용함수에 포함된다. 이 모형에서는 기존의 ‘공공재 모형’, 즉 ‘순수 이타심 모형’과 마찬가지로 개별 기부자가 다른 사람의 기부 수준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각각의 기부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순수공공재 모형과 달리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가 고려되는 경우 소수에 의해서만 기부행위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구축’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⁸⁴⁾.

83) 이 모형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로는 Arrow(1972), Sandler and Posnett(1991) 등이 있다. 이 밖에 Smith et al.(1995)은 자선이나 기부행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실증연구에서 ‘이타심’을 고려한 모형을, Glazer and Konrad(1996), Harbaugh (1998a;1998b)는 각각 개인의 소득 수준에 대한 신호(signal)와 체면

라. 기부대가 모형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비공공재 모형에서는 민간소비 모형 이외에도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자가 기부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은 민간소비 모형에서처럼 단순히 이웃을 위해 경제적 기여를 했다는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이 모형은 광범위하게 민간소비 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기부행위로부터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대접 또는 기부의 수혜를 받는 단체가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등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체면 등의 주장도 이 모형에서 설명될 수 있다⁸⁵⁾.

위에서는 개인기부가 이루어지는 동기를 중심으로 개인기부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명했다. 개인의 기부 동기에 대한 모형 중 어떤 모형이 현실의 기부행위를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는 각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개인기부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사회의 개인기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기부에 대한 동기에도

84) Andreoni(1989; 1990)는 이러한 ‘혼합 모형’ 즉, ‘비순수 이타심 모형’을 이용하여 ‘불완전 구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기존의 실증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Cornes and Sandler(1984a; 1984b), Steinberg(1987), Andreoni(1989; 1990)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효용이 공공재의 총량뿐 아니라 기부 수준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85) 기부자의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 또는 그 이상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동경하는 사회적 체면(prestige) 때문이다. Glazer & Konrad(1996). 또한 자선이나 기부행위는 기부금액이 일반에 알려질 때 체면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기부자의 소득이나 사업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거나 또는 기부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기부자의 신용을 높여줄 수 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한 모형 중 어느 한 모형에 의해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기부의 동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⁸⁶⁾. 오히려 위의 여러 모형들이 복합적으로 한 사회의 개인기부의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개인기부의 동기 중에서 어떤 동기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인기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기부에 대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부대가 모형에서 주장하는 대가를 바라고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의 중요한 동기로는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공공재적 동기도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로부터 기부자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기부의 동기는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⁸⁷⁾.

2. 개인기부행위 요인분석

가. 모형의 설정과 주요 변수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경제학적 모형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

86) 예를 들어 (사)볼런티어21의 설문조사에서는 개인기부에 대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2002년의 조사보다 2005년의 조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기부의 동기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87) 뒤에서 설명할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인기부가 한 가지 동기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처음의 세 모형이 근거한 여러 동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는 가계는 기부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기부행위에 대한 참여 그리고 기부행위에 참여한 경우 기부금액은 기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 간접적 사회적 편익, 또는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 만족 등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밖에도 기부자의 소득, 기부가격(기부로 인해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기부자의 교육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부행위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자원봉사를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부의 필요성과 기부에 대한 견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기부자가 어떤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부자의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기부에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기부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 간의 관계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text{기부금액} = f(\text{소득, 기부가격, 직업, 기부 경험, 자원봉사 경험, 기부에 대한 태도, 교육, 연령, 종교, 지역})$$

위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 기부자가 속해 있는 가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나타낸다. 소득 수준과 기부행위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득 수준이 기부행위에 대한 참가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⁸⁸⁾. 그러나 소득 수준이 기부의 결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부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⁸⁹⁾.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소득 수준이 기부의 참가 여부에 미치는 효과와 기부에 참가한 경우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⁹⁰⁾.

88) Clotfelter(1980), Glenday et al.(1986), Lankford & Wyckoff(1991) 등이 있다.

89) Smith et al.(1995)을 참조.

90) 소득 수준이 기부의 결정 여부에 미치는 효과와 기부행위에 참가한 경우 기부금액

- 기부가격: 실증분석에서 기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 Givingprice는 기부를 하게 될 때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기부자가 일정한 금액을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경제적 편익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제외하게 되면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기부금액보다 낮아지게 된다. 세제 혜택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기부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부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기부금액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Givingprice의 변수가 기부에 미치는 효과는 기부의 결정 여부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⁹¹⁾. 기부가격의 변수는 세제 혜택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큰 경우가 세제 혜택이 작은 경우에 비해 기부의 결정이나 기부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Givingprice 변수는 만일 기부에 대한 조세 혜택이 없다면 '1'이 되고 조세 혜택이 커질수록 '1'보다 작아지게 된다.
- 직업: 기부 여부의 결정 또는 기부금액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 설문응답자의 직업을 나타낸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직업이 설명변수로 가정되는 이유는 기부자가 기부행위를 통해 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얻는 계층인 경우 기부행위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기부자가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로 인해 기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분석하기 위해서 기부와 설명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91) 미국에서 시행된 실증분석에서는 대체로 기부가격이 기부행위와 기부금액에 유효한 설명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Feldstein(1975a, 1975b), Glenday et al.(1986), Kingma(1989) 등이 있다.

에 근거하고 있다.

- 기부 경험: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변수에는 과거 자발적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들 수 있다. 과거 자발적으로 자선활동을 위해 기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부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⁹²⁾.
-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경험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는 화폐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기여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선이나 기부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기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의 기여에 있어 두 형태의 기여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설명변수이다. 즉, 개인 기부자가 화폐적 기여와 시간의 기여를 동시에 결정된다면 화폐의 기여와 시간의 기여가 대체(substitution)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⁹³⁾. 즉,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금전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나 금전적 기부보다는 시간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과 금전적 기부를 동시에 하지 않고 두 가지 중에서 여유가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돈을 기부하는 행위가 시간을 기부하는 자원봉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의 의미와 역할이 더 잘 이해된다면 자원봉사의 경험과 기부행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⁹⁴⁾. 따라서 이 변수는 화폐적 기여와 자원봉사

92) 과거 기부 경험의 유무가 현재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과거 이타적인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mith et al.(1995)를 참조.

93) 화폐의 기여와 시간의 기여가 상호 대체적이라는 주장은 Duncan(1999)에서 이론적으로 실증분석에서 주장되고 있다.

의 경험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변수이다.

- 기부에 대한 태도: 기부자들이 기부행위에 대한 태도 또는 기부의 동기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이미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공공적 이익을 위한 모든 일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의하기보다는 정부재정의 역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 참여를 낮추게 되거나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비해 사회적 공익을 위한 모든 형태의 일을 정부에만 맡기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공재적 동기’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의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기부에 참여한 경우 기부금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밖에도 사회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는 경우에도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기부에 대해 잠재적 기부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기부의 참여 그리고 기부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교육 수준: 설문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기부행위와의 참여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사회의 후생을 높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기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어 기부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 연령, 종교 유무, 거주지역: 위에서 설명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94) Brown & Lankford(1992), Schiff(1990), Menchik & Weisbrod(1987) 등에서는 자원봉사와 화폐적 기부행위는 보완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설명변수들 이외에도 응답자의 연령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한 수준의 연령을 넘는 경우에 따라 기부행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일정한 연령을 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기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⁹⁵⁾. 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기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기부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유무 여부가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웃을 돕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를 가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또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자선적 활동이나 비영리활동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여부를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부행위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기부의 결정 여부와 기부금액에 지역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나. 2000년 조사자료의 분석

1) 추정모형과 추정결과⁹⁶⁾

위에서 설명한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기

95) 기부자의 연령이 노령일수록 기부행위에 대한 보다 관대하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찬성으로는 Clotfelter(1985), Weisbrod & Dominguez (1986), Schiff(1985) 등이 있고 반대로는 Smith et al.(1995)등이 있다.

96) 박태규 외(2003)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음.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Tobit 추정방법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Heckman's two-stage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Heckman's two-stage 방법은 두 단계의 추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⁹⁷⁾. 두 가지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변수들이 2000년의 조사자료에서 어떻게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위의 설명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변수(income): 실증분석을 위한 2000년의 설문자료에서는 소득 수준의 단일값이 아닌 구간별 소득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즉, 설문자료에서는 월평균 60만원 미만, 6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 150만~200만원 미만, 200만~250만원 미만, 250만~300만원 미만, 300만~350만원 미만, 350만~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등 모두 9개의 소득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은 구간별 대표값을 사용하게 된다. 9개 구간 중 6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을 제외한 7개 구간의 경우에는 구간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6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구간의 대표값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서의 최하위 구간인 연평균 소득 8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소득인 457,758원을, 400만원 이상 구간의 대표값으로는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의 최상위 3개 소득 구간의 평균치인 5,190,895원을 사용한다⁹⁸⁾.
- 직업(Occupation)의 변수가 설문조사의 자료에서는 사무/기술직,

97) 이 추정방법은 Heckman's two-step method로 불리고 있으며 Smith et al.(1995)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98) 설문조사 자료의 소득구간의 대표값을 사용할 때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의 평균소득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값 선정에 큰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자료의 6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과 4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 속하는 표본의 비율들과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의 최하위 구간과 최상위 3개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간에는 약 20%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60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상의 대표값 선정에는 오차가 있다.

경영/관리직/전문직 경우가 가정주부, 기능, 숙련공, 판매서비스 직, 농업, 어업, 임업, 자영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사회적 체면이 요구되는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전문직, 자영업의 경우에는 '1'을 아닌 경우는 '0'으로 표시하는 더미변수로 다루어지게 된다.

- 기부가격(Givingprice)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에서 개별 기부자에 대해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Givingprice = 1 - (\text{산출세액}/\text{과세표준})$ 로 표시된다. 이 때 소득구간별로 필요한 Givingprice를 구하기 위해서는 산출액과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⁹⁹⁾. Givingpric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가 필요한데 가구원 수는 소득구간의 대표값을 선정하는 과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각 소득구간의 평균가구원 수를 사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한 소득구간별 Givingprice의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⁰⁰⁾.

〈표 V-1〉 소득구간별 Givingprice의 추계

소득 구간	60만원 미만	6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350	350~400	400만원 이상
Giving price	1.0	1.0	0.9	0.9	0.8770	0.8548	0.8423	0.8346	0.8126

99)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그리고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4천만~8천만원 이하인 경우 30%이며 누진공제액은 각각 0, 100만원, 500만원이다.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대표값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외했음. 산출세액, 과세표준의 산출과정은 생략함.

100) 여기서 산출된 Givingprice의 의미는 일정한 금액의 기부를 하는 경우 세감면의 혜택으로 인해 (기부금액) * (Givingprice의 비율)로 기부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여기서 Givingprice를 산출하는 과정에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세제와 공제, 보조금제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득세율만을 고려했으며 또한 기부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을 상정해서 Givingprice를 추계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사업소득자들이 전체의 9%만을 차지하고 있고 기부자들이 평균적으로 세제에서 인정하는 공제범위를 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설문응답자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여 Givingprice를 추계해도 별다른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¹⁰¹⁾.

자원봉사 경험(volunteering)의 경험변수는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 그리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한다¹⁰²⁾. 특히 한국의 경우 1999년의 시기에는 자원봉사가 한국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자원봉사의 경험이 금전적 기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¹⁰³⁾.

기부에 대한 태도(Attitude)는 기부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부의 기부행위

101) 1999년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정기부금의 형태로 기부를 하면 전체 소득의 5% 이내에서 특별공제의 형식으로 세공제의 혜택을 받았던 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필요경비)의 7% + 출자금액(50억 한도)의 2% 내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가 보다 유리한 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102) 2000년의 조사자료는 주로 금전적 기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이후의 조사자료와는 달리 기부 경험만을 묻고 있다.

103) 정영석(2001)에서는 과거 기부 경험이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부경험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History1, History2 두 개의 History 변수를 사용한다. History1은 과거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험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History2는 자선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 비종교단체에 기부한 경험의 유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과거의 기부 경험에 대한 질문은 2000년의 조사에서는 2년 전의 기부 경험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조사자료에서는 응답자들의 기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변수를 이 Attitude1, Attitude2, Attitude3, Attitude4, 그리고 Attitude5 등 모두 5개로 구성하고 있다. Attitude1은 자선 및 기부에 대한 질문 중, “기부의 이유는 사회에 무엇인가를 환원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질문이다. Attitude2와 Attitude3은 모두 기부행위를 하는 이유와 관련된 질문으로 Attitude2는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으며, Attitude3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기부행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다. 그러나 Attitude4는 민간의 기부행위와 정부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만일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면 자선이나 기부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동의한다면 만일 정부의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간기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수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민간의 기부의 대체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Attitude4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공공재 모형에 의해 기부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재 모형에 따라 기부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정부의 재정지출과 민간의 기부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Attitude5는 “나는 세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자선이나 기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있는 변수이다. 이 질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기부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과 현재 조세를 통해 정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를 묻는 Attitude1, Attitude2, Attitude3만을 기부에 대한 태도변수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러 세 가지 기부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1’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처리한다¹⁰⁴⁾.

교육(Education)변수는 실증분석에서는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과 그 이하의 교육 수준으로 나누어 대학 이상 교육 수준의 경우가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 경우 1, 대학교육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 더미변수로 하고 있다. 연령(age65)의 경우 2000년의 조사자료분석에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1,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종교(religion)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1, 종교가 없는 경우 0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변수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두 변수를 별도로 더미변수로 응답자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Tobit모형의 추정에서는 피설명변수를 기부금액으로 하고 Heckman's two-step 추정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 기부행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 1단계에서는 기부행위의 유무와 기부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¹⁰⁵⁾.

$$\text{Giving} = b Z + v$$

여기서는 기부를 했으면($G > 0$), $\text{Giving} = 1$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 ($G = 0$), $\text{Giving} = 0$

104)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1) '대체적으로 반대한다'(2) '대체적으로 동의한다'(3) '절대적으로 동의한다'(4)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의 경우 더미변수 '1'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와 '대체적으로 반대한다'의 경우는 더미변수 '0'의 값을 갖는다.

105) 1 단계의 기부참가의 여부에 대한 모형은 probit 모형으로 추정되고 2번째 단계의 추정은 OLS 방법으로 추정된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Greene(1991) pp. 740~747 참조.

2단계: 1단계에서 기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에 국한하여 기부자들의 기부금액과 기부금액을 결정하는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text{Donation} = \text{Giving} > 0) = aX + bK + u$$

여기서 Donation은 기부금액의 수준을 말한다.

2) 실증분석의 결과와 가설검증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두 단계의 추정방법으로 얻은 실증분석을 근거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 수준과 기부행위

소득 수준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Tobit 모형 추정에서는 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eckman's two-step 모형 추정의 1단계 추정인 소득 수준이 기부행위에 참가하는 지에 대한 추정과 2단계인 일단 기부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기부자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기부금액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 모두에서 기각되었다¹⁰⁶⁾. 따라서 2000년의 조사자료의 분석에서는 소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나) 조세감면의 혜택과 기부행위

조세감면으로 인해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givingprice)에 따라 기부결정의 여부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효과는 Tobit 모형과 Heckman's tow-step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106) 소득 수준이 기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의 추정결과로, 그리고 소득수준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 추정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에 따라 조세감면 때문에 기부에 참여하거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고려해서 기부금액이 결정된다는 주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 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기부행위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Tobit 모형과 Heckman's two-step 모형의 추정 모두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Heckman's two-step 모형의 1단계 추정에서 기부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부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기부참가자들의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2단계 추정에서도 자원봉사의 경험이 기부자들의 기부 수준에 정(+)의 효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기부행위에 대한 태도와 기부행위

기부자의 동기가 '사회에 대한 환원', '도덕적 의무감', '종교적 신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Tobit 모형의 추정에서는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동기 중 '사회에 대한 환원'이라는 동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가지인 '도덕적 의무감'과 '종교적 신념'의 태도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감'은 기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적 신념'은 예상과는 달리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Heckman's two-step 모형의 추정에서는 태도1(사회에 대한 환원)과 태도3(종교적 신념)이 1단계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2단계의 추정에서는 기부에 대한 태도변수 3가지가 모두 기부에 참가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결정에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종교적 신념의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직업, 교육 수준, 종교 유무, 65세 이상의 노령, 지역변수와 기부행위

직업변수는 Tobit 모형의 추정과 Heckman's two-step 모형의 두 단계 추정에서 모두 예상대로 기부행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는 경우 기부 여부의 결정에는 Tobit, Heckman's two-step 모형의 1단계 추정에서 예상과는 달리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eckman's two-step 모형의 2단계 추정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의 결정에는 교육 수준이 유효한 설명변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경우는 Tobit 모형에서 정(+)의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Heckman's two-step 모형의 1단계 기부 여부의 결정뿐 아니라 2단계의 기부참가자들의 기부 수준 결정에서도 모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 유무의 여부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¹⁰⁷⁾.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보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기부의 참가율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기부금액의 결정에는 유효한 결정요인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역변수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기부행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거주지역이라는 변수는 기부행위와는 무관한 변수로 밝혀졌다.

107)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설문조사의 결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의 비율이 높으며 기부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라는 사실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표 V-2〉 Tobit 모형 추정결과(1999)

독립변수	추정계수	Z-통계치
상수항(C)	-16,818	-0,609
소득(Income)	0,626	0,554
기부가격(Givingprice)	7,817	0,599
직업(Occupation)	1,235	2,530**
자원봉사경험(volunteering)	3,807	7,381**
기부태도1(Attitude1)	0,977	3,539**
기부태도2(Attitude2)	0,268	1,130
기부태도3(Attitude3)	-1,035	-4,391**
교육수준(Education)	-0,872	-1,995**
연령(Age65)	-2,131	-1,926*
종교유무(Religion)	6,247	14,640**
거주지역1(large city)	1,569	0,728
거주지역2(Medium city)	0,790	0,365

Adjusted R² = 0,232
 Log likelihood = -3984,32
 Sample size = 1,680

주: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이고,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V-3〉 Heckman's Two-step 모형 추정결과(1999)

독립변수	1단계추정(Probit 모형)	2단계추정(OLS)
상수항(C)	-3,013(-0,62)	5,426(0,687)
소득(Income)	0,087(0,442)	0,222(0,689)
기부가격(Givingprice)	1,475(0,644)	-0,407(-0,109)
직업(Occupation)	0,162(1,846)*	0,679(3,205)**
자원봉사경험(volunteering)	0,835(7,415)**	0,462(3,205)**
기부태도1(Attitude1)	0,169(3,433)**	0,170(2,116)**
기부태도2(Attitude2)	-0,018(-0,429)	0,636(9,539)**
기부태도3(Attitude3)	-0,158(-3,792)**	-0,238(-3,456)**
교육수준(Education)	-0,193(-2,485)**	0,041(0,331)
연령(Age65)	-0,446(-2,376)**	0,599(1,727)
종교유무(Religion)	0,896(12,228)**	1,669(8,610)**
거주지역1(large city)	0,316(0,896)	-0,539(-0,767)
거주지역2(Medium city)	-0,426(-0,605)	-0,539(-0,767)

Adjusted R² = 0,313
 Log Likelihood = -1973,067

주: 1. () 안은 t 통계량을 가리킴.

2.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이고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3) 2002년 조사 자료의 분석¹⁰⁸⁾

2001년도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 1999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obit 모형과 Heckman's Two-Stage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정결과를 얻게 되었다. 2001년의 개인기부자료를 이용한 기부분석을 위한 변수들은 1999년의 분석과 비교하기 위해 피설명변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즉, 소득, 기부가격, 직업, 자원봉사경험, 기부태도1, 기부태도2, 기부태도3, 교육 수준, 종교 유무, 연령, 거주지역 등이다. 그러나 2001년의 기부자료 분석에서는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지 않고, 대도시만을 더미변수로 처리했다¹⁰⁹⁾.

가) Tobit 모형의 추정결과

그러나 1999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변수를 발견할 수 있다. 소득과 조세감면의 경우 지난 연구의 결과에서는 모두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을수록,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의 한도가 5%에서 10%로 상승한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아 세제 혜택의 이유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9년의 기부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 유의적인 변수로 채택되었던, 연령과 교육 수준은 이번 추정에서는 기각되었다. 또한 기부에 대한 태도변수의 경우 '사회적 환원의 의무감'과 '도덕적 의무감'은 모두 영향을

108) Park & Park(2004)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다.

109)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의 하향 조정은 50대의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신념’은 조사자료의 분석에서 처럼 부(-)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Heckman two-step 모형의 추정결과

(1) 소득수준과 기부행위

Tobit 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9년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기부에의 참여 여부와 기부금액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가설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의 각각의 경우에서도 역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이전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조세감면의 혜택과 기부행위

조세감면으로 인해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질수록 기부 여부와 기부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의 추정에서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1999년의 기부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세감면을 이용하여 기부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9년도의 결과와는 다르게 기부에 대한 조세 혜택이 기부자들의 실질적인 기부의 비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와서 기부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보다 정확한 조세감면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액에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2000년도에 있었던 개인기부자들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공제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자원봉사의 경험과 기부행위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기부금액에 있어서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원봉사와 기부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부행위에 대한 태도와 기부행위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로서는 1999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환원의 의무감'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의 동기가 기부행위의 참여 여부와 기부금액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변수들의 경우 '사회적 환원의 의무감'과 '종교적 신념' 모두 Tobit 모형과 Heckman's two-step 모형의 1단계와 2단계 추정에서 모두 예상과는 달리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의무감'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교육 수준, 종교 유무, 50세 이상의 연령, 지역변수와 기부행위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개인기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는 1999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기부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였다는 사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기부행위에 보다 익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부 참여와 기부금액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은 1999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인 연령, 교육 수준은 모두 기

각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의 경우 기부예의 참여와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Tobit 모형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통계치)
상수(C)	2.638147 (0.814036)
소득(INCOME)	0.224628 (0.903759)
기부가격(GIVINGPRICE)	-2.345613 (-1.061793)
직업(Occupation)	0.119863 (1.035223)
자원봉사 경험(VOLUNTEER)	0.500822*** (3.766769)
태도1(ATTITUDE1)	-0.183776** (-2.299487)
태도2(ATTITUDE2)	-0.006870 (-0.086573)
태도3(ATTITUDE3)	-0.278836*** (-3.413685)
교육(EDUCATON)	-0.008422 (-0.068412)
연령(AGE)	0.105985 (0.741799)
종교 유무(RELIGION)	2.188209*** (16.56760)
거주지역(REGION)	-0.066719 (-0.596477)
표본수	834
R-square	0.35141
Log likelihood	-1459.35

주: *, **, ***은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자료: Park & Park(2004)

〈표 V-5〉 Heckman's Two-step 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1st step Probit Model (z-Statistics)	2nd step OLS (t-statistics)
성수(C)	-0.491261 (-0.229907)	-0.201209 (-0.058686)
소득(INCOME)	0.168231 (1.029398)	0.415860 (1.599675)
기부가격(GIVINGPRICE)	0.095147 (0.064852)	-1.974058 (-0.982740)
직업(OCCUPATION)	0.037467 (0.470146)	0.169595 (1.533102)
자원봉사경험(VOLUNTEER)	0.477169*** (4.273366)	1.042002*** (3.096100)
태도1(ATTITUDE1)	-0.080132 (-1.470044)	-0.293025*** (-3.108550)
태도2(ATTITUDE2)	0.082954 (1.523917)	0.142788 (1.539000)
태도3(ATTITUDE3)	-0.238263*** (-3.988822)	-0.606316*** (-3.224468)
교육(EDUCATION)	-0.017205 (-0.206609)	0.010420 (0.092649)
연령(AGE)	-0.015328 (-0.153151)	0.035463 (0.268287)
종교유무(RELIGION)	0.710163*** (8.966284)	3.018150*** (4.848316)
거주지역(REGION)	0.055772 (0.731044)	0.007564 (0.069904)
λ	-	3.030665* (1.905460)
표본수	1322	828
R-square	0.111117 (McFadden R-square)	0.350305
Log likelihood	-761,5295	-1464,301

주: *, **, ***은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자료: Park & Park(2004)

4) 2005년 개인기부 자료의 분석결과

2005년도에 시행한 개인기부 조사자료를 2002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2년도의 자료를 이용해서 얻은 우리 사회의 기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특징이 2005년도 자료의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부 참여에 영향을 주거나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미 2002년도 분석을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 조세감면의 혜택, 자원봉사의 경험, 기부에 대한 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이 있다. 2005년도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도 동일한 변수들이 기부 참여율 또는 기부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기 위해 tobit, Heckman's two-stage 등의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2005년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한 기부가격, 직업, 자원봉사의 경험, 교육 수준, 연령, 종교의 유무, 지역, 그리고 기부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를 선정했다. 우선 2005년도의 조사자료에서의 특징은 앞서의 조사자료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2002년에 비해 기부가 언론기관의 ARS를 통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도 일년 동안 기부에 참여한 많은 경우가(61% 이상) 언론사가 주관하는 ARS를 통해 기부한 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¹¹⁰⁾. 기부의 경험자 중에서 ARS를 통해 기부를 한 응답자들이 경우에는 대체로 일년에 1~2회 정도의 적은 횟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 ARS를 통한 기부의 경우 금액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분

110) 2000년과 2002년의 조사에서는 ARS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자료에서도 ARS를 통해 기부한 경험이 2005년의 조사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에서는 ARS만을 통해 기부에 참가한 기부자를 제외한 경우(표본-1)와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경우(표본-2)로 구분했다.

또한 2005년도의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조세 혜택을 감안한 Givingprice 변수의 경우 2000년과 2002년의 자료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근로소득자로 가정하고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실효세율만큼을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기부한 금액을 추정해서 변수로 사용했다¹¹¹⁾. 따라서 2005년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Givingprice의 추정방법을 기존의 방법과 더불어 모든 응답자들이 근로소득자로 가정하고 이들이 기부하는 경우 한계세율을 이용해서 Givingprice를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¹¹²⁾.

〈표 V-6〉 Givingprice(1)

소득 구간	Givingprice(1)
99만원 이하	1.0
100~149만원 이하	0.964
150~199만원	0.962
200~249만원	0.945
250~299만원	0.917
300~349만원	0.894
350~399만원	0.881
400~449만원	0.872
500만원 이상	0.817

111) 2000년의 조사자료에서는 응답자의 53% 정도가 근로소득자인 반면 200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근로소득자로 나타나고 있다.

112) 한계소득세율 구하기 위한 산출세액과 과세표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2004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분	산출액의 55%	6,250,000원
50만원 초과분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12,647,059원
한도	50만원	

〈표 V-7〉 한계세율에 의한 Givingprice(2)

과세표준	한계소득세율	Givingprice(2)
0원	0	1.0
1,000만원 이하	$0.08 * 0.55 = 0.044$	$0.956 = 1 - (0.08 * 0.55)$
1,000만원 초과~1,264만원 이하	$0.17 * 0.3 = 0.051$	$0.949 = 1 - (0.17 * 0.3)$
1,264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0.17	0.83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0.26	0.74
8,000만원 초과	0.35	0.65

가) Tobit 분석의 결과

(표본-1)을 대상으로 해서 ARS에만 기부한 기부자들을 제외한 경우 Tobit 추정결과는 Givingprice를 어떻게 추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Givingprice(1)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가격, 직업, 자원봉사의 경험, 종교 유무 등의 설명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진 않지만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이 아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부가격을 추정하는 데 있어 한계세율의 Givingprice(2)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 기부가격, 자원봉사의 경험, 종교 유무, 지역 등의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Givingprice(2)를 사용한 경우에는 설명변수들의 부호들이 예상대로 나타났으며, 소득, 자원봉사 경험, 종교 유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표본인 (표본-1)과 (표본-2)를 이용하고 Givingprice(1)과 Givingprice(2)를 이용해서 T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ARS만을 이용해서 기부한 사람들을 제외한 (표본-1) 그리고 기부가격에서는 한계세율을 이용해서 얻은 Givingprice(2)의 경우가 가장 좋은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V-8〉 Tobit 모형 추정결과

	(표본-1)	(표본-2)
기부가격(1) Givingprice(1)	1) 기부가격, 직업, 자원봉사 경험, 종교, 지역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 변수임 2) 소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부호가 음(-)으로 예상된 부호가 아님	1) 기부가격, 직업, 자원봉사 경험, 종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 변수임 2) 소득변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지만 부호가 음(-)으로 예상된 부호가 아님
기부가격(2) Givingprice(2)	1) 소득, 기부가격, 자원봉사 경험, 종교, 지역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	1) 소득, 자원봉사 경험, 종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

〈표 V-9〉 Tobit 추정결과(표본-1, Givingprice(2))

	추정계수	t-통계치
상수(c)	9.6844	.75
소득(lnincome)	.81604**	1.97
기부가격(lntaxmar)	-3.8228*	-1.67
자원봉사 경험(volunteer)	3.7065**	10.57
태도1(attitude 1)	-.2723	-1.26
태도2(attitude 2)	.0973	.45
태도3(attitude 3)	-.3278	-1.50
교육(education)	.4065	1.24
연령(age50)	.2049	.55
종교 유무(religion)	1.4731**	4.17
거주지역(region)	-.6667**	-2.19

표본수: 1306
Pseudo R²= 0,052
Log likelihood: -1983,26

주: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나) Heckman's two-step 모형 추정

2002년의 자료에서처럼 2005년의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Heckman의 two-stage 모형을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이 추정에서도 Tobit 모형의 추정에서처럼 ARS만을 통해 기부한 사람들을 제외한 (표본-1)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표본-2)를 나누어 추정하고, 기부가격의 경우에도 Givingprice(1)과 한계세율로 산출한 Givingprice(2)를 모두 이용해서 각각 추정할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우선 (표본-1)을 이용한 추정에서 기부가격은 Givingprice(1)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단계의 추정에서는 기부의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그리고 추정의 2단계에서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고 있다. 추정의 1단계에서는 직업, 자원봉사 경험, 지역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추정의 2단계에서는 소득, 직업, 자원봉사 경험, 그리고 종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도 Tobit의 추정에서처럼 소득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부호가 예상과는 달리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본-1)을 이용하고 기부가격은 한계세율을 이용한 Givingprice(2)를 사용한 경우에는 설명 변수들의 부호는 추정의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예상대로 나타났다. 추정 1단계에서 기부의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업, 자원봉사 경험, 그리고 종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의 2단계에서는 소득, 직업, attitude1, attitude3, 그리고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1)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계세율을 이용한 Givingprice(2)를 이용한 추정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¹³⁾. 즉, 기부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직업, 자원

113) ARS만을 이용해서 기부한 경험자들도 포함한 (표본-2)를 이용해서 추계하는 경우

봉사 경험, 그리고 종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직업 등이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태도인 attitude1과 attitude3, 그리고 거주지역 등의 변수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정(+)의 방향이 아닌 부(-)의 방향으로 추정의 2단계에서만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단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기부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 수준과 기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자원봉사의 경험이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부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기부금액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2002년의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일단 기부에 참여를 결정한 사람들은 기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의 경험보다는 소득, 기부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⁴⁾.

에는 Givingprice(2)를 이용한 경우에도 만족할만한 추정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추정 1단계에서는 직업, 자원봉사 경험, 그리고 종교 등이 기부의 참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나 추정의 2단계에서는 유의적인 변수들이 하나도 없었다.

114) 이미 시기적으로 2002년과 2005년의 기간 동안 기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져 기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부 참여를 결정한 이후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의 여력을 말해주는 소득 수준, 그리고 기부에 대한 태도 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V-10〉 Heckman's two-step 추정(표본1, Givingprice2)

	1st Step(Probit)		2nd Step(OLS)	
	Coefficient	S. E.	Coefficient	S. E.
상수(c)	1.7617	3.1264	6.8998	6.1768
소득(income)	.14492	.1003	.4752*	.2811
기부가격(Givingprice(2))	-.7540	.5542	-1.6670	1.4434
직업(Occupation)	.2022**	.0802	.7583**	.3062
자원봉사경험volunteer	.8741**	.0899	1.5981	1.1112
기부태도1(Attitude1)	-.0446	.0530	-.1898*	.1148
기부태도2(Attitude2)	.0324	.0532	-.0617	.1113
기부태도3(Attitude3)	-.0752	.0541	-.2429*	.1408
교육(education)	.0316	.0829	.0316	.1644
연령50(age 50)	.0484	.0919	.0484	.1848
종교유무(religion)	.3539**	.0840	.3539	.5241
거주지역(region)	-.1215	.0747	-.1215*	.2199
rho: .89355				
sigma: 1.8969144				
lambda: 1.6949792 2.0474				

주: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3.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가. 기부횟수 분석의 의미와 분석방법

개인기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부의 금액, 기부의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기부의 정기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볼런티어21과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서는 모두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많은 기부 참여자들이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질문에 의해서도 기부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왜 이들이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기부의 정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기간 동안 기부횟수가 많다는 것은 기부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분석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을 위한 질문이 포함된 경우는 (사)볼런티어21의 조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을 한다.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방법론의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기부의 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대다수가 1년 동안 3~4회 정도의 기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기부횟수의 특징으로 보아서 기부횟수가 이루는 분포가 포아송(Poisson)분포에 접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포아송 분포함수를 이용한 분석을 할 수 있다¹¹⁵⁾. 또한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부자들은 1년 동안 3~4회 이내의 기부를 하고 있는 비정기적인 기부자인 데 비해 기부자의 일부는 연 7~8회 이상의 기부를 하는 정기적인 기부자군(群)을 구성하고 있다. 즉, 기부자들이 적은 횟수의 기부를 하는 그룹과 여러 번의 기부를 하는 그룹으로 나뉘질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서 기부자들의 기부횟수가 구성하는 분포가 포아송 분포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포아송 분포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포아송 분포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부자들의 기부횟수를 기준으로 기부자 그룹이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지 아니면 두 개 또는 세 개의 그룹을 형성하는지를 확인하는 통

115) 포아송분포를 이용한 기부횟수의 분석은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횟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

계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기부자를 한 그룹 또는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형성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기부자들이 몇 개의 그룹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통계적 처리상의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형성되는 경우 두 개의 그룹이 분리된 그룹인지 아니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자들이 몇 개의 그룹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면 기부자들이 형성하는 그룹의 모습이 어떤 분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의 기부횟수가 갖는 분포를 확인한 다음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함으로써 기부횟수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사)볼런티어21에서 시행한 2001년 한 해 동안 기부자들의 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얻은 기부횟수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를 얻게 되었다.

나. 2001년 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 분석

2001년도 기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광의의 기부와 협의의 기부로 구분해서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기부한 순수 종교적 헌금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기부를 광의의 기부로 정의하고 종교적 헌금을 제외한 기부를 협의의 기부로 정의하고 있다. 1,456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2001년 한 해 동안 협의의 기부행위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응답자는 50.6%인 737명이었으며, 종교적 헌금을 포함한 광의의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체의 61.88%였다. 그러나 종교적 헌금에 대해서는 기부횟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기부금액에 대해서만 조사한 반면, 협의의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액과 더불어 기부횟수를 조사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협의의 기부만을 분석의 대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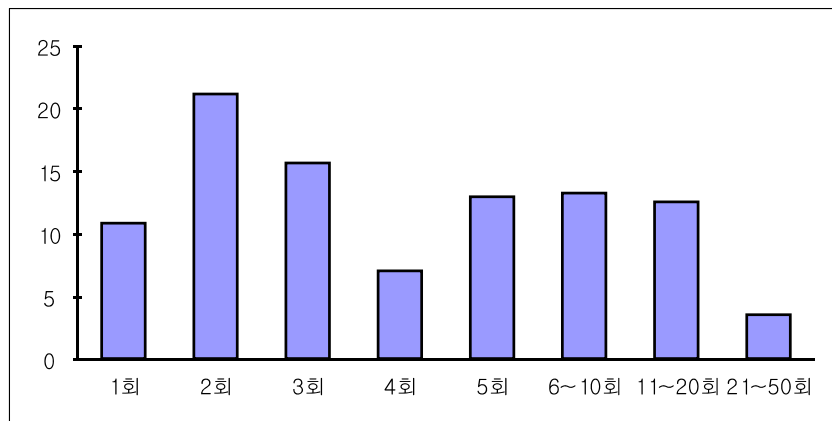
로 하고 있다. 총 1,456명 중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1,422명을 대상으로 기부횟수에 자료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1〉 2001년도 기부횟수 분포

(단위: %)

지난 1년 동안 기부횟수	비율
1회	11
2회	21,3
3회	15,8
4회	7,2
5회	13,1
6~10회	13,4
11~20회	12,7
20회 이상	5,5

[그림 V-1] 기부횟수 분포(2001)



위의 기부횟수에 대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횟수의 분포는 하나의 분포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횟수 8회를 기준으로 기부횟수가 두 개의 분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부횟수가 8회 이상인 기부를 자주 하는 기부자 집단인 ‘큰 군’과 기부횟수가 8회 이하인 기부를 자주하지 않는 기부자 집단인 ‘작은 군’ 등 두 개의 기부자 군(群)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기부횟수가 반응변수이므로 기부횟수가 형성하는 분포를 포아송 분포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기부자 집단인 ‘큰 군’과 ‘작은 군’이 각기 포아송 분포를 형성하는 혼합분포로 상정하고 기부횟수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를 찾았다. 아직은 시각적으로는 기부횟수가 그리고 있는 분포가 두 개의 분포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단은 한 개의 포아송 분포의 혼합분포로 기부횟수를 반응변수로 모형화한 회귀모형인 혼합포아송 회귀모형¹¹⁶⁾을 통해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모수추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¹¹⁷⁾.

이상에서 설명한 바대로 김인영 외(2006)의 분석에서는 우선 기부횟수의 분포가 하나의 포아송 분포를 형성하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분포를 형성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두 개의 혼합된 포아송 분포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¹¹⁸⁾.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

$$116) f(y; \Theta) = \sum_{i=1}^g \pi_i f_i(y; \theta_i), \quad \Theta = (\theta_1, \dots, \theta_g), \pi_i \geq 0, i = 1, \dots, g, \sum_{i=1}^g \pi_i = 1$$

117) 여기서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log L_c(\Psi) = \sum_{i=1}^g \sum_{j=1}^n z_{ij} \{ \log \pi_i + \log f_i(y_j; \theta_i) \}$, 로그 우도함수의 조건 기대값을 구하는 E(expectation)단계와 이 단계를 이용해서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한 모수를 추정하는 M(maximization)단계로 이뤄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영 외(2006)을 참조.

118) 김인영 외(2006)에서는 Akaike의 정보기준(AIC)를 사용해서 이 값이 작은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Akaike, 1974) 즉, $AIC = -2 \log L + 2v$ 로서 L은 우도함수를, v는 모형에 있는 모수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인 외(2006)에서는 AIC는 표본 수가 작거나 모수가 많을 때는 과대 적합하는 경향이 있어 AIC를 수정한 정보이론

해 두 개의 혼합된 혼합모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수를 추정함으로써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정하고 있다¹¹⁹⁾.

반응변수인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했다. (i) 기부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부횟수의 변수로 선정했다¹²⁰⁾. (ii) 기존의 기부 연구에서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원봉사의 경험 여부(예: 1, 아니오; 0)를 선택했다. 자원봉사의 경험 여부는 기부참여율, 기부금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이기에 기부횟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 여부(예: 1, 아니오; 0)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 경험이 있는 다수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기부하는 여부가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iv) 이 밖에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교육 수준(대졸 이상; 1, 대졸 이후; 0) 그리고 성별(남; 1, 여; 0) 등이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알려진 변수들 중에서 추정상의 편의를 위해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변수들의 수를 축소했다.

그리고 기부횟수가 8회 이하인 ‘작은 군’과 기부횟수가 8회 이상인 ‘큰 군’으로 나누어 혼합 포아송 회귀모형에서 모수를 추정했다¹²¹⁾.

AIC_c를 이용하고 있다(Hurvich & Tsai, 1989).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 개의 혼합된 포아송을 상정하기보다는 두 개의 혼합된 포아송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19) 김인영 외(2006)에서는 혼합된 포아송 분포 모형의 모수 추정은 EM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Dempster et al., 1977).

120) 기부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원 이하, 150만원~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등 구간으로 설정했다.

〈표 V-12〉 혼합 포아송 분포의 기부횟수 분석 추정결과(2001)

군(비율)	변 수	추정된 모수	표준편차
'작은 군'(0.698)	상수항	-1,898*	0.377
	소득	7,542*	2.262
	자원봉사 여부	0,973*	0.209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 여부	-0.038	0.216
	교육	0.020	0.202
	연령	0.143	0.183
	성별	0.123	0.213
	'큰 군'(0.302)	상수항	1,487*
소득		2,337*	0.893
자원봉사 여부		0,329*	0.089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 여부		0,124	0.084
교육		-0.017	0.095
연령		0.040	0.091
성별		-0.005	0.093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자료: 김인영 외(2006)

두개의 혼합 포아송 회귀분석의 결과 '작은 군'의 비율은 0.698 그리고 '큰 군'의 비율은 0.303으로 나타나 기부를 한 해 8회 이하로 한 기부자들의 비율이 전체의 70%에 해당되고 8회 이상 한 기부자들의 비율이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부횟수가 8회 이하인 '작은 군'의 경우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자원봉사의 경험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해에 기부횟수가 8회 이상인 '큰 군'의 경우에도 가구소득과 자원봉사의 경험 여부가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¹²²⁾. 즉, 기부횟수가 '작은 군'과 '큰 군' 모두에서 가구소

121) 김인영 외(2006)에서는 기부횟수가 8회 이하인 '작은 군'과 8을 초과하는 '큰 군'으로 나누고 소득, 자원봉사,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 교육, 나이, 성별 등 각각을 두 구간 분할표 분석의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소득, 자원봉사 여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여부 등이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해서 '큰 군'과 '작은 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득이 높을수록 기부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횟수가 8회 이하인 ‘작은 군’에서는 8회 이상인 ‘큰 군’에 비해 가구소득과 자원봉사 경험의 두 변 수 모두에서 추정된 모수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과 자원봉사의 경험이 ‘큰 군’보다는 ‘작은 군’에서 기부횟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과는 기부횟수가 한 해 8회 이상인 기부자들의 경우 이미 기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기부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기부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기부참여율과 기부금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던 소득의 변수가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와의 관계는 기부횟수가 ‘작은 군’과 ‘큰 군’ 모두에서 보완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 참여율, 기부금액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한국의 개인기부와 관련한 분석에서 개인기부에 관한 반응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이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기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의 기존 문헌에서는 화폐적 기부와 시간적 기부 간의 관계에서 보완관계보다는 오히려 대체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도 있다¹²³⁾.

122) 김인영 외(2006)에서는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1,000번의 붓스트랩 표본을 추출하여 각 모수의 표준편차와 2.5%와 97.5%에 기초한 백분위수 신뢰구간을 보완한 BC_a(bias-corrected and accelerated) 신뢰구간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123) 화폐 기부와 시간 기부 간 대체관계는 Brown & Lankford(1992)에서, 그리고 보완 관계는 Kingma (1989), Clotfelter(1985)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다. 2005년도 기부조사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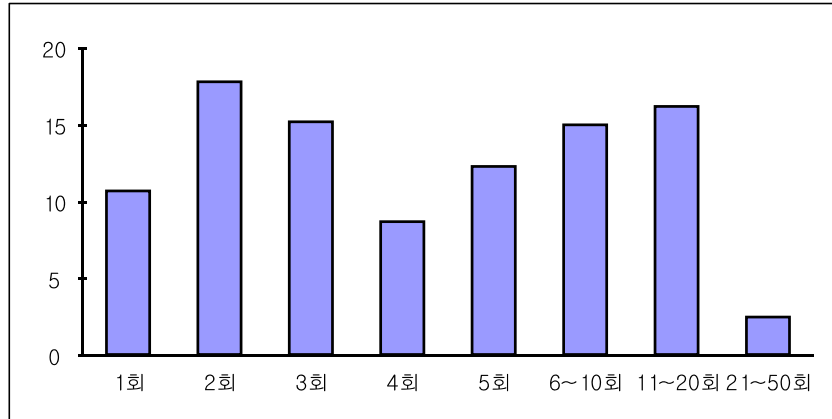
위에서 기부횟수에 대한 2001년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에 대한 분석은 과거의 기부 참여율, 기부금액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부 횟수에 대한 분석이 한국 사회의 기부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인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부횟수가 큰 기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1년도의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도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은 위에서 설명한 2001년도의 분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 2004년도의 기부횟수를 중심으로 두 개의 혼합된 포아송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3〉 2004년 기부횟수

(단위: %)

지난 1년 동안 기부횟수	비율
1회	10,8
2회	17,9
3회	15,3
4회	8,8
5회	12,4
6~10회	15,1
11~20회	16,3

[그림 V-2] 기부횟수 분포(2004)



<표 V-14> 기부횟수에 대한 혼합 포아송 회귀모형 추정결과(2004)

군(비율)	변 수	추정된 모수	표준편차
'작은 군'(0.771)	상수항	-1.001	0.276
	소득	1.688*	0.478
	자원봉사 여부	0.964*	0.173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 여부	0.175	0.178
	교육	0.247	0.206
	연령	0.121	0.221
	성별	-0.003	0.180
	'큰 군'(0.229)	상수항	1.973
소득		0.734*	0.333
자원봉사여부		0.212	0.126
종교적 신념에 의한 기부 여부		0.214	0.144
교육		0.068	0.145
연령		0.023	0.153
성별		0.099	0.138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자료: 김인영 외(2006)

2004년도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한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도의 기부횟수를 동일한 두 개의 혼합 포아송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01년도 자료의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도의 분석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기부횟수가 8회 미만인 경우에는 ‘작은 군’, 8회 이상인 경우에는 ‘큰 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기부횟수에 대한 원자료를 관찰한 결과 8회를 중심으로 두 개의 군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자료의 경우에는 원자료를 관찰한 결과 10회 미만과 10회 이상의 두 개의 군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연 10회 미만 기부에 참여한 군을 ‘작은 군’ 10회 이상 참여한 군을 ‘큰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두 개의 군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두 개의 혼합된 포아송 분포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2001년의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04년도의 경우 추정 결과 ‘작은 군’을 구성하는 비율이 200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연 10회 이상 기부하는 ‘큰 군’의 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하고 10회 미만 기부하는 ‘작은 군’의 비율이 7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군’의 기준을 2001년도의 8회에서 2004년도에는 10회로 상향 이동했기 때문이다. 2001~2004년의 기간 동안 거의 매달 기부에 참여하는 고정적인 기부자들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4년도의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2001년의 10만원 정도에서 19만원 정도로 증가했다. 이처럼 ‘큰 군’의 비율이 200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기부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부자의 가구소득과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이 ‘작은 군’과 ‘큰 군’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도의 경우 두 군에 모두 자원봉사 경

험과 기부자의 가구소득 수준이 기부횟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데 비해 2004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작은 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경험과 가구소득 수준이 모두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큰 군’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수준만이 유의적인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기부횟수가 연 10회 이상인 기부를 자주 하는 기부자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경험이 기부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1년도의 경우 연 8회 이상의 기부를 하는 ‘큰 군’의 기부자들에게 자원봉사의 경험이 기부횟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작은 군’에 비해서는 영향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2001년 이후 기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2004년 연 10회 이상 기부를 하는 ‘큰 군’의 기부자들에게는 이미 기부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¹²⁴⁾. 둘째, 2001년에 비해 ‘큰 군’의 기준을 2001년 8회에서 2004년에는 10회로 상향 이동시켜 2004년에는 기부를 더 자주 하는 기부자들만을 ‘큰 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이유가 더욱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4년도의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을 2001년도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대부분이 아직은 간헐적으로 하는 ‘작은 군’에 속하고 기부를 정기적으로 자주하게 되는 ‘큰 군’의 비율이 30% 이하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직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가 아직은 특별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큰 군’의 기준을 2001년도의 연 8회에서 2004년

124) 2005년의 Heckman's two-step 모형에서도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에 자원봉사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소득은 기부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군’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 분석에서는 10회를 2회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큰 군’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회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군’의 비율면에서 2001년도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부횟수의 분석에서는 2001~2004년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표상으로는 기부횟수에 의한 개인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¹²⁵⁾.

125) 기부횟수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과 2005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2002년의 자료의 경우에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아 기부횟수가 0인 관찰의 빈도가 697개로 두 개의 혼합된 포아송 모형으로 예측된 빈도는 584개뿐이었다. 또한 2005년의 자료에서는 기부횟수가 0인 관찰빈도가 787개였고 예측된 빈도가 790개였다. 이처럼 0인 관찰빈도가 예측빈도보다 크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0’이 추가된 포아송 모형을 고려한 ZIP(zero inflated Poisson) 모형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vad den Broek, 1995). 그러나 두 개의 분포를 형성하는 경우 ZIP 모형은 보다 복잡한 추정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로 남겨놓고 있다.

Ⅵ. 기업의 기부

1. 기업의 기부 관련 선행연구

가. 이론적 분석

기업의 기부를 분석한 이론적 모형은 이윤극대화 모형과 매니저(소유주)의 효용극대화 모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기업의 기부가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부를 통해 기업의 판매가 증가하거나 또는 비용이 감소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Schwartz(1968)의 주장처럼 기부를 통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제고되어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기부를 통해 기업의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Clotfelter(1985)에 의하면, 기부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면 본 기업의 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도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로 인하여 기업의 노동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Navarro(1988)는 기부가 기업의 다른 비용(운영비용, 자본비용, 규제 및 정부 관련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모형에 대하여 Clotfelter(1985)에서 논의된 이론적 모형을 기초로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한다.

1) 이윤극대화 모형

한 기업의 생산함수를 $Q(X, G)$ 라고 하면 G 는 기부를, X 는 다른 생산요소를 나타낸다. 세율을 t , 제품가격을 p , 생산요소가격을 s 라 하고,

기업의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된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순이익 (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 = [pQ(X, G) - sX - G](1 - t)$$

기부의 수요를 결정하는 1차조건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 \cdot \partial Q(X, G) / \partial G - 1 = 0, \Rightarrow p \cdot \partial Q(X, G) / \partial G = 1$$

즉,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수준의 기부는 한계생산의 가치가 기부 1원의 세전가격과 일치할 때 발생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과는 세율이 최적수준의 기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Clotfelter(1985)에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기부의 함수, $s(G)$ 로 모형을 확장하여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Navarro(1988)에서는 이윤극대화 모형을 수입 측면(revenue consideration)과 비용 측면(cost consider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기부를 전사적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할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기부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노동비용, 자본비용, 운영비용, 규제 및 정부 관련 비용 등을 경감시킬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Navarro(1988)도 Clotfelter(1985)에서와 같이 세율이 최적수준의 기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Clotfelter(198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율이 최적수준의 기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현실과 같이 기부의 일부분만 소득공제가 허용된다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생겨 분석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Clotfelter(1985)와 Boatsman & Gupta(1996)에서는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과세소득의 10%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가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 소득공제의 한도가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개인기부의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의 가정에 무리가 있으며, 이 가정을 완화할 경우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데 세율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기업의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로 낮은 수준이며, 또한 기업기부의 대부분이 대규모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기부의 규모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윤극대화 모형에서 기초하고 있는 기부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가정은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기업의 기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소득공제가 허용된다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자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기보다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는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기부의 규모가 세법이 허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수준의 기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세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효용극대화 모형

기업의 경영자(또는 소유자)는 본인의 효용극대화가 목적이며, 효용을 세후이익(N)과 기부(G)의 함수로 가정하면 경영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G, (1-t) \cdot \{p \cdot Q(X, G) - s \cdot X - G\}]$$

효용극대화를 위한 1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partial U / \partial G + \partial U / \partial N \cdot (1-t) \cdot [p \cdot \partial Q / \partial G - 1] = 0$$

$$(\partial U / \partial G) / (\partial U / \partial N) = (1-t) \cdot [1 - p \cdot \partial Q / \partial G]$$

효용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경영자가 받는 기부로부터의 효용($\partial U / \partial G$)이 0이 아닌 한 세율(t)이 최적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만약 경영자가 기부로부터 전혀 효용을 받지 않는다면, 즉 $(\partial U / \partial G) = 0$ 인 경우, 효용극대화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cdot \partial Q(X, G) / \partial G = 1$$

즉, 이윤극대화 모형의 1차조건과 같아짐을 알 수 있다. Clotfelter (1985)는 세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은 2차방정식으로, 제품의 가격은 $p=1$ 로 가정하였다.

$$Q(G) = a + b \cdot G - c \cdot G^2$$

구체적인 생산함수의 형태를 활용하여 효용극대화를 위한 1차 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artial U / \partial G) / (\partial U / \partial N) = (1-t) \cdot [1 - b + 2c \cdot G]$$

$$\Rightarrow G = (\partial U / \partial G) / (\partial U / \partial N) / [(1-t)2c] + (b-1)/2c$$

여기서 기부에 대한 세율변화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위 표현을 세율

(t)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partial G/\partial t = (\partial U/\partial G)/(\partial U/\partial N)/[(1-t)^2 \cdot 2c] > 0$$

즉, 세율의 인상이 기업의 기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영자가 기부의 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Williamson(1967)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모형에서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자는 대리인, 주주는 주인에 해당한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자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주주가 요구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달성한 이윤(재량적 이윤)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본인의 효용을 위해서 사용할 동기가 존재하여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경영자가 충분한 재량적 이윤을 갖고 있는 경우, 즉 이론적으로는 균형이 제약조건(주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이윤)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세율과 기부의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 Williamson(1967)과 Clotfelter(1985)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세율 인상애 따른 부(-)의 소득효과보다 정(+)의 대체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 즉 경영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이윤이 없어 기부의 결정이 주주가 요구하는 제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세율 인상애 따른 부(-)의 소득효과가 정(+)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세율과 기부의 부(-)의 관계가 성립된다.

나. 실증적 분석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이윤극대화 모형과 효용극대화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윤극대화 모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업이 매출의 증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기부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실증분석을 위하여 매출 증가와 관련된 변수로 광고선전비(advertising expenses), 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 등의 변수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용 절감과 관련된 변수로는 노동비용 비중(labor intensity)이 사용되고 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으로 기부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이 기부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Schwartz(1968), Levy & Shatto(1978), Maddox & Siegfried(1980), Navarro(1988), Boatsman & Gupta(1996) 등 많은 연구결과들이 본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기업의 기부는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많은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다. Murray(1991)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성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로인해 단기적 성과와 관련이 작은 기부에 대한 지출을 축소할 것이라 한다. Johnson(1966), Bennett & Johnson(1980) 등에서는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된 반면, Pittman(1976), Maddox & Siegfried(1980), Navarro(1988) 등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노동비용의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의 이미지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우수 인력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다. Navarro(1988), Boatsman & Gupta(1996) 등에서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Galaskiewicz(1985)에서는 두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모형과 관련된 실증분석에서는 그 동안 대부분

의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변수로 세율이 유리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Navarro(1988)에서 경영자의 재량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Boatsman & Gupta(1996)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회귀분석에 추가로 포함된 변수에는 부채비율, 경영권의 귀속과 관련된 변수, 전년 대비 배당금의 변화 등이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최적자본구조와 대리인문제의 문헌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자신의 직업 안정성 등 효용극대화를 위한 경영자의 경우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채비율과 기부와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다. Navarro(1988)와 Boatsman & Gupta(1996) 모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경영권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경영자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주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로 경영자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의 기부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다. Navarro(1988)에서는 가설을 지지하는 계수의 부호는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전년 대비 배당금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배당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주주들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것이므로 경영자가 본인의 효용 증대를 위하여 기부를 더 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다. Navarro(1988)에서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된 반면, Boatsman & Gupta(1996)에서는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모형과 관련된 실증분석의 핵심변수인 세율의 경우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Schwartz(1968), Nelson(1970), Levy & Shatto(1978), Clotfelter(1985)에서는 세율과 기부가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설문 결과를 사용한

McElroy & Siegfried(1986)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세금감면과 기부와는 관계가 거의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시도한 Navarro(1988)에서는 세율과 기부 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다. Boatsman & Gupta(1996)는 기업 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평균세율이 아닌 한계세율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데 추정 결과는 세율과 기부가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추정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기부와 세율 간에 부(-)의 관계가 도출된 결과는 이윤극대화 모형보다는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기업기부의 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가 소득이다. 본 실증분석에서 소득 관련 변수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기업기부에 대한 소득탄력도의 측정은 경기 변동 등 경제현상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자선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둘째, 소득 관련 변수는 기업의 규모 또는 기업의 기부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부 관련 실증분석에서 기업의 규모 또는 기업의 기부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소득과 세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수를 불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을 변수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수들 이외에 비시장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가 실증분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소재한 도시에 십일조클럽(tithing club)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기부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한 연구로 Navarro(1988)와 Freeman(1991)이 있다. 십일조클럽의 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소득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

기로 약속하게 되는데, 물론 회원가입은 자율적이지만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회원가입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Navarro(1988)는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도시에 십일조클럽이 있는 경우, 십일조클럽의 존재와 기부와 강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Freeman(1991)에서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십일조클럽의 존재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기부가 유사기업과 비교된다는 부담 때문에 기업의 기부가 증가한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이 수행되었는데, Harris & Klepper(1976), McElroy & Siegfried (1986) 등에서는 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Navarro(1988)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이 기부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산수익률(ROA)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 패널자료를 사용한 Boatsman & Gupta(1996)에서는 반대의 부호를 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는 김진수(1997)에서 Navarro(1988)의 모형을 사용하여 1988~1996년 사이의 국내기업 재무자료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Navarro(1988)의 결과와는 달리 세율과 기부와의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으며, Navarro(1988)에서와 같이 이윤극대화 모형보다는 경영자 효용극대화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실증분석

가. 자료

실증분석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재무자료 중 최근 10년, 1997~2006년 기간 동안의 상장기업 결산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재무자료 건수는 5,670개이며 이 중에서 분석기간인 10년간 계속해서 존재했던 기업을 추출하기 위하여 매출액 자료가 없는 기업을 제외하면 5,630개의 재무자료를 얻게 된다.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미치는 효과 및 기부의 소득탄력성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은 본 자료를 기본으로 수행된다. 기업기부의 동기가 이윤극대화에 있는지 아니면, 경영자의 효용극대화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장된 모형의 회귀분석은 추가되는 변수의 구성 때문에 축소되는 자료를 토대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패널자료는 Slemrod and Shobe(1990)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분석기간중에 세율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또한 관찰되지 않지만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고려하는 데 다른 형태의 자료보다 우월하다.

나. 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세제도가 기업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율과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기본적 모형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기업기부의 소득탄력성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윤극대화 모형과 효용극대화 모형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된 변수를 기본적 모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에 포함될 변수와 그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기업의 기부금액(CON)이며 각 기업의 재무제표로부터 구한 값을 사용하며 기부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변수로 사용한다.

2) 독립변수

가) 소득 (INC)

소득은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변수로 사용하고, 기부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기부와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변수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나) 세율 (TAX)

세율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평균세율을 사용하였는데, Boatsman & Gupta(1996)에서는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하고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현행 세법이 소득과 손실에 대하여 비대칭적 조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계세율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Shevlin(1990)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신승묘·함창모(2003)에서 우리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계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월결손금공제,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규정 중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이월결손금만을 반영하여 한계법인세율을 추정하였다.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차기 5년간 이월되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이월결손금의 존재는 한계법인세율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이 과세소득(결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을 과세소득(결손)자료로 이용하였으며¹²⁶⁾, 한계법인세율을 추정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계법인세율은 법인의 소득이 1원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126) 오성렬(1996)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사업연도 소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음.

할 조세부담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한계세율 역시 확률로 추정된(random walk 가정) 현재가치의 기대값이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계산이 용이한 기타 대용치들이 시뮬레이션 절차에 의해 추정된 한계법인세율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대용치 중 삼분더미변수는 완전예측한계법인세율과 86.73%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뮬레이션 한계법인세율 다음으로 완전예측한계법인세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과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atsman & Gupta(1996)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한계법인세율보다 계산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 확대에 따른 자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 완전예측한계법인세율과의 상관관계도 높은 삼분더미변수를 한계세율로 사용한다.

삼분더미변수(TRI: Trichotomous variable)는 역시 Shevlin(1990)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과세소득과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여 한계세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과세소득의 대용변수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음수인 경우를 이월결손금으로 이용하여 한계세율을 산출한다.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과세소득이 있고 이월결손금이 없으면 한계세율은 법정최고세율 적용
- (2) 과세소득이 있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과세소득이 없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 한계세율은 (법정최고세율 \times 0.5)
- (3) 과세소득이 없고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한계세율은 0

1997~2006년 기간에 해당하는 5,630개 기업에 대해 삼분더미변수에 의해 산출한 한계법인세율 평균은 21.80%이고 연도별 한계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Ⅵ-1〉 연도별 한계법인세율

(단위: 개, %)

	대상기업 수	평균세율	법정최고세율
1997	563	22.68	28
1998	563	21.68	28
1999	563	22.33	28
2000	563	22.08	28
2001	563	21.41	28
2002	563	21.92	27
2003	563	22.08	27
2004	563	22.18	27
2005	563	20.80	25
2006	563	20.87	25

이상의 변수로 수행할 회귀분석의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CON = \beta_0 + \beta_1 TAX + \beta_2 INC + \epsilon$$

다) 광고선전비 (ADV)

광고선전비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윤극대화 모형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의 비중을 변수로 사용한다.

라) 노동비용 (LAB)

노동비용의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은 좋은 이미지 때문에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윤극대화 모형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매출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변수로 사용한다.

마) 부채비율 (DER)

경영자의 효용극대화와 관련된 변수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사용한다.

바) 배당금의 변화 (DIV)

배당비율이 증가하면 주주의 간섭이 축소되어 경영자의 기부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자의 효용극대화와 관련된 변수이다. 전년 대비 주당 배당금의 변화를 산출하여 변수를 구성한다.

사) 차기연도 세율 (TAX1)

차기연도 세율을 회귀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기부 결정의 동학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Boatsman & Gupta (1996)에서 처음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기본적 모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장된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CON = \beta_0 + \beta_1 TAX + \beta_2 INC + \beta_3 TAX_1 + \beta_4 ADV + \beta_5 LAB + \beta_6 DER + \beta_7 DIV + \epsilon$$

다. 방법 및 결과

총 5,630개의 재무자료에서 기부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부와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4,047개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기본모형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기본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은 기부의 소득탄력성뿐만 아니라 세율이 기부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분석이

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현행 세제의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세제는 기업의 기부에 대하여 소득의 5%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기부금액 규모가 당해기업 소득의 5%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5%에 미치지 못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차별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자료를 소득의 5%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면 기업의 기부금액 규모가 소득의 5%를 초과하는 기업이 626개로 전체 표본의 15.5%(패널A)에 이르고, 5%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 3,421개로 전체 표본의 84.5%(패널B)에 이르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단순통합횡단면 모형(simple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model)을 사용하는 경우, 관찰되지 않는 기업의 특성이 기업의 기부에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추정에 사용되는 최소자승법(OLS)은 일관성 있는(consistent) 추정계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단순통합횡단면 모형은 미포함변수편이(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FEM)의 경우 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수(constant)를 통해 각 개별 기업의 차별성을 고려함으로써 미포함변수편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에도 추정계수가 표본의 특성만을 반영하는 성질이 있어서 표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임의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REM)의 경우 각 기업의 특성을 정상분포를 가지는 임의변수로 가정함으로써 표본 밖의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효과모형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각 개별 기업의 특성이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 소개한 3개의 모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표 VI-2>는 세 가지 추정 방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VI-2〉 기본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패널 A (기부/소득 < 5%)		패널 B (기부/소득 ≥ 5%)	
I. 단순통합횡단면 모형(Simple-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Regression)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TAX	9.017*** (13.084)	TAX	3.414*** (3.733)
Ln(INC)	1.025*** (56.847)	Ln(INC)	0.902*** (51.961)
Constant	-7.878*** (-22.581)	Constant	-1.226*** (-3.411)
F(2, 3418) = 1660.82 Adj.R ² = 0.493		F(2, 623) = 1364.29 Adj.R ² = 0.814	
II.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Regression)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TAX	5.494*** (8.177)	TAX	-0.372 (-0.355)
Ln(INC)	0.453*** (17.360)	Ln(INC)	0.593*** (19.132)
F(542, 2878) = 19.23 Adj.R ² = 0.743		F(263, 362) = 21.90 Adj.R ² = 0.898	
III. 임의효과 모형(Random-Effects Regression)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TAX	6.960*** (11.243)	TAX	2.601** (3.113)
Ln(INC)	0.696*** (32.359)	Ln(INC)	0.811*** (40.086)
Constant	-2.136*** (-5.467)	Constant	0.309 (0.794)
R ² = 0.493		R ² = 0.814	

주: ***는 1% 신뢰수준 유의

**는 5% 신뢰수준 유의

*는 10% 신뢰수준 유의

독립변수의 추정계수에 대한 설명 이전에 3개 모형에 대하여 분석 결과 산출된 통계를 바탕으로 검증한다. 고정효과 모형(FEM)과 단순통합 횡단면 모형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도비율 검증(likelihood ratio test)의 통계량이 패널A의 경우 2913.33, 패널B의 경우 716.92이고, 모두 1% 이내에서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크므로 고정효과 모형(FEM)이 단순통합횡단면 모형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임의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REM)의 경우에도 LM(Lagrange Multiplier)검증의 통계량이 패널A의 경우 1437.28, 패널B의 경우 21.51이고, 모두 1% 이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커 고정효과 모형(FEM) 역시 단순통합횡단면 모형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FEM)과 임의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REM)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증하는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의 통계량은 패널A의 경우 281.43, 패널B의 경우 90.26으로 모두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여 고정효과 모형(FEM)이 임의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REM)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실증분석의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고정효과 모형(FEM)의 추정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다.

INC는 기업의 소득을 나타내며 분석에서는 자연대수값을 취하여 그 추정계수는 기부의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패널A, B 모두 예상대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탄력성은 패널A의 경우 0.453, 소득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초과하는 패널B의 경우 0.593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부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별 기업 단위의 미시자료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Navarro(1988)는 0.85, Boatsman & Gupta(1996)는 0.09로 탄력성의 범위가 연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시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Levy & Shatto (1978)는 0.03, Clotfelter(1985)는 0.54로 역시 연구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의 중간값

정도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이고,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부에 대한 세제의 효과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며, <표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널 간에 서로 다른 부호를 보이고 있다. 기부의 규모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 포함된 패널A의 경우 세율과 기부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도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하다. 반면에 기부가 소득의 5%를 초과하는 기업이 포함된 패널B의 경우 세율과 기부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의 기부 동기를 이론적 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율에 대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세율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이윤극대화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여기에 적용하면, 패널A는 효용극대화 모형을 지지하고, 패널B는 이윤극대화 모형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가정과 다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기업을 분리하여(패널B)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기부 규모와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 기업의 경우에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패널B의 추정 결과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윤극대화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기부와 세율 간의 부(-)의 관계가 도출된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해석하면, 이론적 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자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기보다는 소득공제 한도

가 없는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기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기부의 규모가 세법이 허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수준의 기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세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표 VI-3〉 확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Fixed-Effects Regression)

변수	패널A (기부/소득 < 5%)		패널 B(기부/소득 ≥ 5%)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TAX	5.613*** (7.444)	4.271*** (4.898)	0.188 (0.172)	-0.922 (-0.830)
TAX1	0.341 (0.430)	-0.266 (-0.307)	-0.473 (-0.464)	-0.448 (-0.375)
Ln(INC)	0.432*** (15.059)	0.470*** (13.621)	0.570*** (17.115)	0.607*** (13.685)
ADV		5.724 (1.591)		4.043 (0.933)
LAB		-0.996 (-0.541)		0.116 (0.759)
DER		0.437 (0.994)		-0.740 (-0.865)
DIV		0.135 (0.188)		-0.481 (-0.397)
R ²	0.743	0.761	0.902	0.916

주: ***는 1% 신뢰수준 유의
 **는 5% 신뢰수준 유의
 *는 10% 신뢰수준 유의

기업의 기부 동기에 대한 각 이론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기본모형에 추가하여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VI-3〉에 있다. 기본모형 분석과 같이 패널A와 패널B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모형1은 기본모형에 다음 기의 세율을 추가하였고,

모형2는 모형1에 추가하여 이윤극대화와 관련된 변수로 ADV와 LAB를 포함하고, 효용극대화와 관련된 변수로 DER과 DIV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본 모형의 경우와 같이 단순통합횡단면 모형 (simple pooled cross-section time-series model), 고정효과 모형 (FEM), 임의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REM)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관련 통계량이 기본모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정효과 모형(FEM)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표 IV-3>에는 고정효과 모형(FEM)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다.

패널자료를 사용하는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율 변화에 대한 기업 기부의 동태적 결정 유무를 검증하고자 다음 기의 세율(TAX1)을 변수로 포함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패널A의 경우 ADV와 LAB, 패널B의 경우 ADV와 DER에 대한 추정계수는 부호는 이론적 논의와 부합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부의 현황,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 개인기부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설문조사 결과 등 개인기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축적되어 온 자료에 대한 심층적 소개, 개인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기업기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기업기부에 대한 세제효과 및 기업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민간기부의 현황 부문에서는 국세청, 전경련,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부와 관련하여 통계가 생산되는 각종 기관의 자료와 주요국의 기부 현황을 소개·분석하여 미래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최근에 개정된 세제를 포함하고, 주요국의 기부 및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를 소개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국별로 정리한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개인기부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2000년 이후 3개 기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설문조사의 방법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기부와 관련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에 따라 설문 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와 각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부 동기 및 세제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 기부의 소득공제 한도(현재 소득의 5%) 때문에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윤극대화 모형에서도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개인기부에 관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소득,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그리고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개인기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개인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는 것은 개인기부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외국의 연구들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반드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기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앞서 설명한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특정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¹²⁷⁾.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대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총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기부참가율, 개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자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활동에

127)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공제제도가 기부에 미치는 효과는 2002년의 자료분석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6th ISTR Conference, Toronto, Canada, 11-14 July 2004 참조.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로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동시에 주는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 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많은 금액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공익적 활동에 자신들의 시간을 기부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금전적 기부인 기부활동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 더욱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부 참여율, 기부자 1인당 금액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에 탄탄한 기부의 저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부횟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못한 기부자들에 비해 보다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한국이 기부자들은 기부를 간헐적으로 하는 그룹과 정기적 기부자 그룹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원봉사의 경험을 가진 기부자들이 두 번째 그룹인 정기적인 기부자 그룹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¹²⁹⁾.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의 경험 여부에 따라 기부자들의 기부행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28) 자원봉사와 기부 참가율, 기부금액에 대한 영향은 1999년과 2001년의 자료분석에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규, 정영석(2003),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참조.

129) 김인영 · 김병수 · 박수범 · 박태규(2003)를 참조

자원봉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¹³⁰⁾.

1.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위에서 논의한 개인기부의 현황과 요인분석에 따르면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개인들의 기부금액뿐 아니라 전체 개인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선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기부활동에 이미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대부분 간헐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정기적인 기부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이미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기부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원

130) 강철희(2006)에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기부 참여와 자원봉사의 관계가 보완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자원봉사 경험보다 현재의 자원봉사에 참여 유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개인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가.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개인기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과 기부금액에 조세혜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비율이 5%에서 10%로 증가한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 혜택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비율이 5%로 한정되었다가 200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10%로 상향조정되면서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도 세제 혜택이 기부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30~50%로 정해져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는 등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개인기부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9년 12월까지 15%로 조정하고 이후 2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¹³¹⁾. 이러한 세제감면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실현된다면 개인기부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기부금을 소득자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기부금 공제의 인적 범위를 확대하는

131) 2007년 12월 세법개정.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까지 상향조정하는 경우 기부자의 99.7%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원익(2007).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선적 단체에 대해서도 설립법의 근거에 따라 상이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현행 기부금 관련세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통해 기부자들의 기부단체 선정에 있어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부금 악용의 사례가 수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이는 기부문화 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허위,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강화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기부금명세서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부금명세서의 제출자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허위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기부금 공제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나. 자선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인기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선단체를 비롯한 기부의 대상 기관들의 투명성의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대상인 자선단체들이 과연 기부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롯해서 정확한 회계기록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지 등의 투명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부자들 그리고 잠재적 기부자들이 기부대상기관의 운영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사회에서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기부의 활성화와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업기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선단체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선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자격을 받는 경우에는 재무회계상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¹³²⁾. 재무회계상의 기록뿐 아니라 자선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 사회의 많은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 개인기부의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을 위한 역할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도 민간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민간의 자율적 기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추진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민간단체인 일명 ‘Guidestar’의 경우 자선적 단체에 대한 재무회계, 활동사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기부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선단체의 기부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자들의 기부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대한 자료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자선적 단체들의 경우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사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단체의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해 가산세를 상향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정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취소

132) 2007년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개정에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토록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자선단체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경험이 개인들의 기부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뿐 아니라 기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와 금전적 기부는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자원봉사와 개인기부는 일관되게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개인기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뿐 아니라 기부금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기부의 참여율과 기부금액뿐 아니라 기부의 횟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횟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현재 개인기부의 중요한 문제인 정기적인 개인기부자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단시일 내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성세대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만 미래의 잠재기부자인 청소년의 기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미래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대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되어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법적인 지위 획득, 자원

봉사센터의 설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제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법인기부에 대한 정책시사점

법인기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는 기업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즉,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개별 기업의 기부 규모와 당해기업의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들의 예상 기부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대효과를 산출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기부와 관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언론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정부도 개인기부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의 결과 2000년 이후 개인의 기부가 기업의 기부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2:8의 비중에서 최근 6:4의 비중으로 변화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의 기부는 경영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세전소득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사실상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기부는 주주의 권익에 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서 이와 같은 내용(주인-대리인 문제)을 분명히 보일 수는 없었지만,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세제가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결과가 이윤극대화 모형에서 설명이 될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아이디어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2006.
- 김인영·박수범·김병수·박태규, 「포아송 분포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기부횟수 자료 분석」, 『응용통계연구』, 한국통계학회, 제19권 1호, 2006. 3.
- 박태규·박원순·손원익·하승수,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기부관련세제의 개선방향」,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4-1, 박영사, 2004. 7.
- _____, 정영석·박수범, 「기부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요인분석」, 재정공공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3. 3.
- _____, 「플뿌리 기부문화 의의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 30주년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6. 11.
- (사)볼런티어 21,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 한국갤럽, 2005. 4.
- _____,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 한국갤럽, 2002.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제4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4 자료집』, 2004. 11.
- _____,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움 기빙코리아 2006: 『한국인의 기부지수 발표 및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2006. 11.
- _____, 기빙코리아 202: 2001년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와 제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움 『아름다운 재휴 기업과 NGO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2002. 11. 20.

- 강철희·김창식, 「한국인의 기부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제4회 국제
기부문화심포지움 기빙코리아 2004, 2004. 11.
- _____,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
움 기빙코리아 2006, 2006. 11.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자선 및 기부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리
서치, 2004. 2. 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손원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
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손원익·김진수, 기부문화 및 공익
법인에 관한 정책토론회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7.7.
- _____,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 신승묘·함창모, 「한계법인세율 대응치의 비교분석」, 『산업과 경영』,
제15권, 제2호,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3.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한국비영리학회, 『기업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전
국경제인연합회, 2005.
- 한신평, 「결산재무자료」.

- Abrams, Burton A. and Mark Schmitz, “The Crowding Out Effect of
Government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Vol. 33, No. 1, 1978, pp. 29~39.
- _____,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al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 Cross-section Evidence,”
National Tax Journal, Vol. 37, No. 4, 1984, pp. 563~568.
- Akaike, H.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74, 19, pp. 716~723.
- Amos, O. M., "Empirical Analysis of Motives Underlying Individual Contributions to Charity,"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 10, No. 4, 1982, pp. 45~52.
- Andreoni, J., W. G. Gale, & J. K. Scholz, and J. Straub,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isconsin, 2004.
- _____, "The Economics of Philanthropy,"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isconsin, 2000.
- _____,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Economic Journal*, 1990, 100, pp. 464~477.
- _____,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9, 97, pp. 1447~1458.
- _____, "Privately Provided Public Goods in a Large Economy: the Limits of Altruis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8, 35, pp. 57~73.
- Bennett, James, and Manuel Johnson, "Corporate Contributions: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Public Choice*, Vol. 35, No. 2, June, 1980, pp. 137~43.
- Bregstrom, T., L. Bloome, H. Varian, "On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9, 1986, pp. 25~49.
- Brown, E. & H. Lankford, "Gifts of Money and Gifts of Time:

- Estimating the Effects of Tax Prices and Available Ti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7, 1992, pp. 321~341.
- CAF, Briefing Pape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2006.
- Clotfelter, C. T.,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1980, pp. 319~340.
- _____, *Federal Tax Policy and Charitable Giv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Dempster, A.P., Laird, N.M. and Rubin, D.B. “Maximum likelihood from incomplete data via the EM algorithm,”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A*, 162, 1997, pp. 194~209.
- Diamond, P. “Optimal Tax Treatment of Private Contributions for Public Goods with and without Warm Glow Prefer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 2006, pp. 897~919.
- Duncan, B.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1999, pp. 213~242.
- Feldstein, M.,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Part I—Aggregate and Distributional Effect,” *National Tax Journal*, 28, 1975a, pp. 81~100.
- _____,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Part II – The Impact on Religious, Educational and Other Organizations,” *National Tax Journal*, 28, 1975b, pp. 209~226.
- Freeman, Richard, “Pricking Business' Bleeding Heart: Corporate giving in the 1980s,” NBER and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1991.

- Galaskiewicz, Joseph, *Social Organization of an Urban Grants Economy: A Study of Business Philanthrop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985.
- Giving USA Foundation, *Giving USA 2007 The Annual Report for the Year of 2006, 2007*.
- Glazer, A. & K.A. Konrad, "A Signaling Explanation for Char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996, pp. 1019~1028.
- Glenday G., A. K. Gupta, & H. Pawlak, "Tax Incentives for Personal Charitable Contribu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6, pp. 688~693.
- Giving USA 2007.
- Harbaugh, W. T., "What Do Donations Buy?: A Model of Philanthropy Based on Prestige and Warm Glow,"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7, 1998a, pp. 269~284.
- _____, "The Prestige Motive for Making Charitable Transf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998b, pp. 277~282.
- Harris, James, and Anne Klepper, *Corporate Philanthropic Public Service Activities*, New York: Conference Board, 1976.
- Hurvich, C.M. and C.L. Tsai, "Regression and Time Series Model Selection in Small Sample," *Biometrika*, 76, 1989, pp. 297~307.
- James R. Boatsman and Santa Gupta, "Taxes and Corporate Charity: Empirical Evidence from Micro-Level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49, No. 2, June, 1996, pp. 193~213.
- Johnson, Orace, "Corporate Philanthropy: An Analysis of Corporate Contributions," *Journal of Business* 39, Oct. 1966, pp. 489~504.

- Kingma, B. R., "An Accurate Measurement of the Crowd-out Effect, Income Effect, and Price Effect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pp. 1197~1207.
- Lankford, R. H. & J. H. Wyckoff, "Modeling Charitable Giving using a Box-Cox Standard Tobit Mod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1991, pp. 460~470.
- Levy, Ferdinand, and Gloria Shatto, "the Evaluation of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Vol. 33, No. 1, Mar. 1978, pp. 19~28.
- Maddox, Katherine, and John Siegfried, "the Effect of Economics Structure on Corporate Philanthropy," In *The economics of Firm Size, market Structure and Social Performance*, Federal Trade Commission, edited by John Siegfried, 1980, pp. 102~25.
- McElroy, Katherine, and John Siegfried, "the Community Influence on Corporate Contributions," *Public Finance Quarterly* 14, No.4, Oct. 1986, pp. 394~414.
- Menchik, P. & B. Weisbrod, "Volunteer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 1987, pp. 159~183.
- Murray, Victor, *Improving corporate Donations: New Strategies for Grantmakers and Grantseekers*, 1991.
- Navarro, Peter, "Why Do Corporations Give to Charity?," *Journal of Business* 61, No. 1, 1998, pp. 66~75.
- _____, "The Income Elasticity of Corporate Contribution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8, No.4, 1988, pp.66~75.

- Nelson, Ralph, "Economic Factors in the Growth of Corporate giving," *NBER Occasional Paper* 111, 1970
- Park, Tae Kyu & Su-Bum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presented at 6th conference of ISTR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July 9-12, 2004, Toronto, Canada.
- Ribar, D.C. and Wilhelm, M. O. "Altruistic or joy-of giving motivations in charitable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 2002, pp. 425~457.
- Roberts, R.,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Wealth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1984, pp. 584~599.
- Salamon, Lester et al.(ed.),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Kumarian Press Inc., U.S.A., 2004.
- Schiff, J., "Does Government Spending Crowd out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38, 1985, pp. 535~546.
- Schwartz, robert, "Corpor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Finance* 23, No.3, June, 1968, pp. 479~97.
- Shevlin, Terry, "Estimating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with asymmetric Treatment of Gains and Loss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 No.2, 1990, pp. 51~67.
- Slemrod, Joel, and William Shobe, "The Use of Panel Data in the Analysis of the Behavioral Response to Taxation," In *Simulation Modes in Tax and Transfer Policy-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edited by J. Brunner and H. G.

- Petersen, 1990, pp. 447~60.
- Smith, V., M. R. Kehoe, & M. E. Cremer,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Altruism and Voluntary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 1995, pp. 107~126.
- Steinberg, R., "Empiric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Spending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4, 1985, pp. 54~64.
-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Facts and Figures from the Nonprofit Almanac 2007.
- UK Giving 2004/05.
- Van den Broek, Jan, "A score test for zero inflation in a Poisson regression," *Biometrics*, 51, 1995, pp. 838~743.
- Warr, P.,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nd Private Char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 1982, pp. 131~138.
- Weisbrod, B. A. & N. D. Dominguez, "Demand for Collective Goods in Private Nonprofit Markets: Can Fundraising Expenditures Help Overcome Free-Rider Behaviou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0, 1986, pp. 83~95.
- _____, *The Nonprofit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Boston, MA, 1988.
- Williamson, Oliver, *The Economics of Discretionary Behavior: Managerial Objectives in a Theory of the Firm*, 1967.

부록: 개인기부에 대한 자료

개인기부를 포함한 민간기부의 규모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신고한 기부금공제액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¹³³⁾.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5년도의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총 7조 1,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소득자에 의한 개인기부가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4조 3,400억원이고 법인기부는 전체의 39.1%인 2조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¹³⁴⁾. 2000년 이후 민간기부 중 개인기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05년 현재 민간기부 중에서 개인기부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민간에 의한 기부의 규모도 1999~2005년의 기간 동안 2.5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개인 중심의 기부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수 있다¹³⁵⁾. 개인기부의 확산은 개인들의 기부금 공제를 위한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이용해서는 민간기부에서 개인기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략적 윤곽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기부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개인기부의 구조적인 특

133)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자료는 손원익(2007)에서 인용하고 있다.

134) 법인기부에는 재단법인에 의한 기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기부는 개인들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와 유산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속, 증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기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기부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5)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손원익(2007)에서는 이런 개인기부의 증가는 2000년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세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 세법개정과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기부를 지정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의 100%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세법개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징은 무엇인지? 개인기부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0년 이후 개인기부의 증가는 세계 혜택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다. 개인기부와 관련한 많은 질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개인기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미시적인 자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우선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기부의 규모, 구성,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인기부는 개인들이 기부하는 과정에서 세계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세신고나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개인들의 기부규모, 구성, 특징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매년 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국 기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부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자료는 기부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렇지 않은 기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다. 또한 설문조사는 과거의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무당국의 자료는 이런 점에서 우월하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기부에 대한 분석의 용도에 보다 적합한 방법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논의에서도 전체적인 개인기부에 대한 규모와 구조뿐 아니라 미시적인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도 납세자가 기부금의 세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무당국 자료는 접근의 제약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면서 미시적으로 개인기부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자료를 같이 이용한다.

1. 한국에서의 개인기부 설문조사자료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모두 세개 기관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 중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2000년 2월에 이루어진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¹³⁶⁾.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볼런티어21’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볼런티어 21에서는 2002년과 2005년 3년의 기간을 두고 전년도 개인기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모두 4회에 걸쳐 전년도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¹³⁷⁾. 우선 2000년 2월에 시행된 설문조사는 가장 먼저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조사는 외환위기가 시작된 다음 해인 1999년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특별한 상황인 기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즉,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1999년도의 기부에 대해 실시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사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의 2월의 설문조사는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해 처음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136)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시행했다.

137) 2001년의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과보고서가 없이 2002년 조사보고서에서 200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는 2001년의 조사는 제외한다.

의미를 갖는다. 2000년 연세대학교의 NPO연구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와 뒤이어 설문조사를 시행한 (사)볼런티어21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두 기관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발적인 개인기부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가 있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종교단체에 속한 개인들이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기관의 조사에서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한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는 자발적이며 자선적 기부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³⁸⁾. 두 기관에서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은 제외하고 소속된 종교단체의 자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만을 자발적 개인기부에 포함하고 있다¹³⁹⁾.

(사)볼런티어21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에서는 유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두 기관의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의 현상과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기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문제이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자발적 개인기부의 범위에 친인척을 돕기 위한 부분과 길거리의 걸인을 위한 자선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2002년, 2004년, 2006년도에 시행된 조사에서 기부의 범위가 (사)볼런티어21의 기부에 대한 정의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기부형태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기부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진다.

138) 미국의 기부에 대한 Giving USA의 조사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139)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활동을 위한 기부금은 포함한다.

우선 개인기부의 이론적 정의상 길거리의 걸인에 대한 자선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세계 혜택을 위한 기부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기부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친인척에 대한 도움을 기부에 포함하는 것은 기부의 정의에서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친인척에 대한 도움은 도움을 주는 측에서는 도움을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기부의 동기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친인척에 대한 도움은 불특정한 다수인 사회 구성원을 위한 기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⁴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개인기부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록 개인기부의 범위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2000년 초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NPO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와 2002년, 2005년 (사)볼런티어21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분석한다.¹⁴¹⁾ 2000년의 설문조사에서는 순수한 종교적 헌금을 기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설문조사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먼저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자료로서 이후에 시행된 조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 2002년 그리고 3년간의 시차를 둔 2005년의 조사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조사된 자료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⁴²⁾.

140) 세법에서도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을 위한 기부에 한정해서 세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친인척에 대한 배려는 자선적 기부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14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자료는 경제적 모형의 분석에서는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사회의 개인 기부현황을 파악하는데 보완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142) (사)볼런티어21의 조사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들 사이에는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보고서의 결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표 1〉 설문조사별 기부의 규정범위

설문조사	조사 연도	기부의 범위
연세대학교 NPO센터	2000년	종교단체에 대한 순수 종교적 현금 등을 모두 포함
(사)볼런티어21	2002년 2005년	1) 종교단체에 대한 순수 종교적 현금 제외 2) 종교단체를 통한 자선적 활동을 위한 현금 포함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2년 2004년 2006년	1) 종교단체에 대한 순수 종교적 현금 제외 2) 종교단체를 통한 자선적 활동을 위한 현금 포함 3) 친인척에 대한 도움 포함 4) 길거리 걸인, 노숙자에 대한 자선 포

2. 1999~2005년 기간 동안의 개인기부 현황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가 수행한 2000년의 조사 이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사)볼런티어21의 두 단체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조사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표본을 설정하고 모두 개인기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는 개인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비슷한 비중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볼런티어21의 조사는 자원봉사와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되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두 조사는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2003년, 2005년에 걸쳐 조사한 바 있고, 볼런티어21의 조사는 2002년과 2005년에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¹⁴³⁾. 두 조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개인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기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도에 실시된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두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통해 1999~2005년

143)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도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한 바 있다.

의 기간 동안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동향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1999년에 대한 개인기부 조사 결과와 (사)볼런티어21이 수행한 조사를 중심으로 개인기부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의 결과를 통해 보완적인 분석의 자료로 사용한다¹⁴⁴⁾.

가. 2000년도 개인기부 설문조사의 결과

2000년도에 시행된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자료는 2000년 2월 11일부터 3월 30일 동안에 전국에 거주하는 1,75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¹⁴⁵⁾. 조사의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 추출하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1대 1인의 개별면접에 의해 기부행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전체 설문대상자 1,758명 중 서울 538명, 경기/강원 444명, 부산/경남 319명, 대구/경북 184명, 광주/전남 북 163명, 그리고 대전/충남북 110명의 표본이 구성되었다¹⁴⁶⁾.

144) 개인기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자료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며, 경제적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의 설문문항 내용의 적합성으로 인해 (사)볼런티어21의 조사를 주로 이용한다.

145) 설문조사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NPO센터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시행했다.

146) 설문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의 기혼자 70%, 미혼자 30%이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53%, 대학 재학 및 졸업 28%, 중학교 졸업 10%, 무학/초등학교 졸업 7%, 대학원 재학 이상 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대상자의 65%는 대도시 거주자이며 중소도시 거주자 34% 그리고 농어촌 거주자 1%로 구성되었다. 연령층은 10대~60대로서 연령별 인구비율에 따라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18%, 50대 10%, 60대 5%, 그리고 18세 이상의 10대가 4%를 구성한다. 설문대상자의 직업은 가정주부 18%, 학생 8%, 기타 12%를 제외한 나머지 62%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기능/숙련공/일반작업/생산직 등 생산직 근로자 27%, 판매/서비스직 11%, 사무/기술직 10%, 농림어업/자영업자 9%이다. 또한 설문대상자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53% 무교는 47%로 분포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1,758명 중 63%인 1,102명이 1999년 한 해 동안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부경험의 수준은 동일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비율 70%에 비해서는 7%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볼 때 기부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여자의 경우가 70%로 남자의 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기부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아 70%의 비율을 보였고 30대가 그 뒤를 이어 67%로 전체 연령의 평균 참여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대와 20대는 각각 59%, 5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그러나 50대 57%, 60대 54%로 40대 이후 연령층의 기부 참가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기부행위에 참가한 비율을 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의 가구의 경우가 전년도에 기부한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66%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기부 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부 참가비율이 훨씬 낮은 5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기부 참가비율이 53%인 데 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비율은 67%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표 2〉 1999년도 기부참가 비율

전 체 : 설문대상자(1,758명)의 63%(1,102명)						
성 별	남 자 : 56 %			여 자 : 69%		
연령별	10대: 59%	20대: 58%	30대: 67%	40대: 70%	50대: 57%	60대: 54%
소득별	100만원 미만: 54%	100~200만원: 66%	200~300만원: 62%	300만원: 63%		

자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2001)

되어 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 중 기독교 25%, 불교 21%, 천주교 6%, 그리고 기타종교 1%로 구성되었다. 설문대상자가 소속된 가구의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300만원의 범위 내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100만원 이하 12%, 300만원 이상 17%, 그리고 소득에 대한 무응답도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 기부를 한 경험에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기부를 행한 분야를 보면 종교단체, 자선기관/단체, 사회복지단체, 의료/보건단체, 교육 및 연구단체, 시민단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단체 등으로 되어 있다. 전체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1,102명이 1999년 한 해 동안 중복해서 기부행위에 참가한 것을 포함할 때 총 1,510건의 기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⁷⁾. 이것을 기부 분야별로 보면 다음 <부표 3>과 같다.

<부표 3> 기부분야별 기부금액(1999)

(단위: 원, %)

기부분야 ¹⁾	지난해 기부금액 ²⁾		지난달 기부금액 ³⁾	
	기부금	구성비	기부금	구성비
종교단체	151,618	86.28	15,397	87.93
사회복지단체	7,592	4.32	976	5.58
교육 및 연구단체	4,928	2.8	158	0.9
자선기관, 단체	4,406	2.51	358	2.04
시민단체	1,270	0.72	160	0.92
국제교류단체	800	0.46	2.92	0.02
의료 및 보건단체	746	0.42	46.73	0.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단체	232	0.13	30.96	0.18
문화 및 예술단체	89	0.05	3,949	0.53
환경단체	53	0.03	2.92	0.02
산업, 전문직, 노동단체	36	0.02	0.00	0.00
정치단체	2.98	0.00	0.00	0.00
기타	3,949	2.25	282.59	1.61
합 계	175,728	100.0	17,510	10.0

주: 1) 사회복지단체에는 양로원, 고아원이 설문문항에 예로 제시되었고, 자선단체에는 TV, 신문사, 모금기관, 구세군이, 국제교류단체에는 UNICEF, 산업 및 전문직, 노동단체에는 노총, 교총, 변협 등이, 정치단체에는 정당 및 정치인 후원금이 포함.

2)와 3) 각기 1999년과 지난달에 기부경험이 있는 가구 중 기부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대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음.

자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2001)

147) 1999년도 한 해 동안 1,102명의 응답자가 1회 또는 그 이상 기부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와 자선기관/단체의 2회에 걸쳐 두 곳에 기부한 중복해서 기부한 건수를 포함해 1,102명이 1999년에 모두 1,510건에 달하는 기부행위에 참여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35.0%를 비롯해, 자선기관/단체 34.3%, 기타 11.7%, 사회복지단체 8.0%, 의료/보건단체 6.6%, 교육 및 연구단체 2.2%, 시민단체 1.5%, 그리고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단체 0.7%를 구성하고 있다¹⁴⁸⁾.

이 설문조사에서는 기부 동기와 기부 참여 여부와 관련해 설문대상자들의 태도와 의견을 묻는 10개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 ‘기부의 동기’, ‘민간기부와 정부의 역할과의 관계’, ‘기부행위에 대한 변화 추세’, ‘민간기부행위의 필요성’, ‘기부행위에 대한 기본적 견해’ 등 기부행위와 관련한 질문으로 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사회에 무엇인가를 환원한다는 생각에서 참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고 있으며, 기부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51%, 그리고 기부행위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¹⁴⁹⁾. 기부행위에 대한 태도로 기부행위는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라는 응답이 27% 그리고 기부행위는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기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부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기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응답자는 전체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기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¹⁵⁰⁾. ‘세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기부할 필

148) 1,758명의 설문대상자 중 전체의 84%가 전년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기부를 경험한 비율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9년의 기부활동을 2년 전인 1997년의 기부활동과 비교할 때 기부활동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758명의 28%가 2년 전 기부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대답하고 있어 2%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 전인 1997년과 1999년을 비교하여 전체 응답자의 29%가 같은 정도의 기부를 한 것으로 응답했고 14%는 더 많이 기부를 한 것으로 그리고 14%는 적게 기부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도 전체 설문대상자의 최소 57% 이상이 1997년과 1999년 두 해에 모두 기부를 한 경험이 있으며 그 액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9) 기부에 대한 동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한 가지 이유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동기로 인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한다면 민간의 기부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53%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의 기부나 자선활동을 통해 도우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응답의 결과는 민간의 기부행위는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1999년 한 해 동안의 평균기부금액은 175,728원으로 나타났다¹⁵¹⁾. 분야별로는 총 기부금액의 86.28%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교단체에 기부되었으며, 사회복지단체 4.32%, 교육 및 연구단체 2.80%, 자선기관 및 단체 2.51%, 시민단체 0.72%, 국제교류단체 0.46%, 의료 및 보건단체 0.42% 등의 비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기부금액이 분야별로 극히 편중되어 있으며 종교부문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 대한 개인기부액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아직 한국에서 개인기부는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편중되어 있고, 시민단체, 의료 및 보건단체, 문화 및 예술단체, 환경단체, 정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전체 기부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기부의 경우 교육 및 연구단체에 대한 기부액도 전체 기부액의 2.8%에 머물러 기초과학, 문화 및 예술, NGO 지원 등을 통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0)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에서 기존의 기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1) 1999년 기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02명이었으나 기부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는 1,024명으로 평균기부금액은 1,024명 응답자가 대답한 평균금액이다. 지난달 기부금액은 월평균 17,510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210,120원으로 한 해 동안의 기부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 2002년 설문조사에 따른 개인기부 현황

2002년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는 2002년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512명(제주도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표본 추출하여 선정되었다. 전체 설문대상자 1,512명은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서울 348명, 인천/경기 363명, 강원 54명, 대전/충청 151명, 광주/전라 183명, 대구/경북 174명, 부산/울산/경남 239명의 표본이 구성되었다¹⁵²⁾.

2002년 개인기부 조사에서는 기부에 대한 참가율이 52.3%,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10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의 63%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기부조사에서는 1999년의 기부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종교단체의 순수한 운영을 위한 기부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들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기부한 것은 자선적 활동을 위한 기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¹⁵³⁾. 그러나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기부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대한

152)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각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이 가장 높은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재 이상, 중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종교는 전체의 44%가 기타/무교이며, 불교가 26.7%, 개신교 20.7%, 천주교 8.7%로 구성되었다. 직업구성을 보면 가정주부, 학생, 무직을 합한 40.2%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은 농/임/어업 8.2%, 자영업 18.1%, 블루칼라 16.9%, 화이트칼라 16.5%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월소득 150만~249만원 이하의 구간에 있는 가구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149만원 이하, 250만~399만원, 4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153) 종교단체의 회원으로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한 기부를 자선적 기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도 모두 포함해서 기부 참가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대한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기부는 일종의 회비로 간주해서 자선적 기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0년의 기부 참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소속된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한 기부를 제외하는 이유는 2000년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거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차지하고 있는바, 종교단체를 제외한 기타의 비영리활동을 위한 기부의 규모가 작아서 자선적 기부활동에 대한 분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표 4〉 2001년도 기부 참가율

전체 : 설문대상자 1,512명의 52.3% ¹⁾				
성 별	남		여	
	52.9%		47.1%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46.4%	52.3%	58.9%	52.1%
소득별	149만원 이하	150~249만원	250~399만원	400만원 이상
	46.1%	51.8%	61.7%	57.4%

주: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은 제외된 것이나 종교단체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는 포함하고 있음.

자료: (사)볼런티어21(2002)

2001년도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부 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58.9%로 가장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소득별로 보면 250만~399만원의 구간에서 61.7%로 기부 참가율이 가장 높았다.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의 분포는 1만~5만원의 비중이 전체 기부자의 4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만원 이하의 경우가 전체 기부자의 29% 이상을 차지해 전체 기부자들의 70% 이상이 5만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교적 전체 기부자의 20%이하의 기부자들만이 10만원 이상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조사자

료에서는 종교단체를 제외하게 되면 연 5만원 이하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¹⁵⁴⁾.

〈부표 5〉 2001년도 기부금액별 기부자 분포

금 액	비율(%)
1만원 이하	29.2
1만원 초과~5만원	41.1
5만원 초과~10만원	8.8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8.2
2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6.3
50만원 초과	4.7
모름/무응답	1.8

자료: (사)볼런티어21(2002)

기부처별로 기부자들이 기부 참가의 분포에서는 종교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로 나타나 이 두 기부처에 대한 기부 참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 환경, 공익민간단체 등 다른 기부처에 대한 기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자료에서는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과 2001년에 실시된 자선적 기부의 현황 조사의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기부 참여율의 경우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를 감안하면 기부 참여율에서는 별다른 변

154) 2000년의 조사에서는 기부자별 기부금액의 분포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종교단체의 경우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위한 현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제외한 기부금액에서는 2001년 이루어진 개인기부의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기부금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로 이루어졌으나 2001년에는 기부가 자선적 목적을 위한 종교단체 이외에도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표 6〉 2001년도 기부처별 기부참가 분포¹⁾

기부분야	비율(%)
종교단체(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44.6
사회복지기관	23.1
교육기관	7.8
환경단체	4.3
공익민간단체	3.8
국제기구	3.7
보건의료기관	2.9
기업재단 및 민간재단	2.8
예술, 문화, 스포츠 단체	2.2
청소년 단체	1.8
성인, 취미단체	1.3
기타	58.8

주: 1) 기부처의 경우 중복되어 이루어져 전체 분포의 합이 100을 초과한다.
자료: (사)볼런티어21(2002)

또한 200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종교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운영을 위한 기부를 제외하고 종교단체에서 수행하는 자선적 활동을 돕기 위한 기부와 종교단체 이외의 비영리단체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위한 기

부를 구분하였다. 1999년의 조사에서는 종교단체 기부에만 참가한 비율이 17.4%이었고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 모두에 대한 기부에 참가한 비율이 12.97%, 그리고 비종교단체에만 기부한 비율이 32.31%이었다. 그러나 2001년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참여율이 10.84%로 하락하고 종교단체, 비종교단체 모두의 기부에 참가한 비율이 31.15%, 그리고 비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참가한 비율이 21.3%로 나타났다. 여기서 1999년도에 비해 2001년도의 경우 종교단체에만 기부하는 비율과 비종교단체에만 기부하는 비율이 각각 감소하는 대신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 모두에 기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부터 1999년에 비해 2001년도의 개인기부는 종교단체에만 기부하던 기부자들이 종교단체 외에 다른 비영리단체에도 기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 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수행하는 자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던 기부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소속되지 않은 외부의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위해서도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부표 7〉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비율

(단위: %)

연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기부한 경우	종교단체, 비종교단체 모두에 기부한 경우	비종교단체에만 기부한 경우
1999	17.40	12.97	32.31
2001	10.84	31.15	21.30
2004	7.20	11.48	31.91

자료: (사)볼런티어 21(2002), (2004),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2001)

다. 2005년도 기부조사의 결과

(사)볼런티어 21에서는 2001년도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04년도의 개인기부 조사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1,611명의 표본 설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2004년도의 기부 참여율은 2001년도의 52.3%에 비해 다소 낮아진 50.6%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193,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⁵⁾. 2001년도의 동일한 조사에서는 기부에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을 제외하고 종교단체를 통해 이웃돕기와 같은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기부는 포함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에는 2002년도와는 달리 남성보다 여성의 기부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이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02년과 같이 40대가 가장 높고 뒤이어 50대, 30대의 순으로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력이 약한 20대와 경제적 능력이 소진되는 60대 70대의 기부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표 8〉 2004년 기부 참가율

전체 : 설문대상자 1,611명의 50.6%						
성별	남		여			
	48.6%		52.5%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44.4%	52.8%	56.8%	54.7%	43.4%	46.4%
소득별	149만원 이하	150~249만원	250~399만원	400만원 이상		
	42.9%	49.6%	49.9%	69.8%		

자료: (사)볼런티어21(2005)

155)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한 것은 1999년도와 2001년도의 경우에도 자선적 기부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가장 높은 소득계층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소득 수준과 비례해서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기부 참여에 중요한 변수로 보여지는데, 이는 2002년도에 가장 높은 소득계층의 기부참여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과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5년도 기부자들의 기부단체별 기부행태를 보면 종교단체에만 기부한 응답자의 비율이 7.2%, 종교 및 비종교단체에 모두 기부한 응답자 비율이 11.48% 그리고 비종교단체에만 기부한 응답자의 비율이 31.91%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2002년도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표 7>에서 보여주듯이 2002년에는 종교단체의 자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와 비종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중복으로 한 경우가 31%가 넘었는데 비해 2005년에는 이렇게 중복해서 기부한 비율보다 비종교단체에만 기부한 비율이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도 자신들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속한 종교단체에만 기부한 비율이 하락하고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에 모두 기부한 비율이 크게 하락한 데 비해 비종교단체에 대해서만 기부를 한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종교단체에 속한 기부자들이 과거 자신들이 속한 종교단체의 자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줄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속한 종교단체를 떠나 무관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말한다. 즉, 과거 자신들이 속한 종교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자신들과 무관한 비영리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개인기부가 우리 사회의 비영리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02년 개인기부가 소속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5년에는 이런 기부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부표 9〉 2004년도 기부금액의 분포

금 액	비율(%)
1만원 이하	30.3
1만원 초과~5만원	23.3
5만원 초과~10만원	14.7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0.8
2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9.6
50만원 초과	9.1
모름/무응답	2.2

자료: (사)볼런티어21(2005)

기부자들이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부금액의 분포를 보면 2004년 동안 1만~5만원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23.3%로 가장 많은 높은 비중을, 그리고 1만원 또는 1만원 이하 금액의 기부금이 30.3%로 거의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나타났다. 즉 연 5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으로 기부금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전체 기부금의 65%로 나타나 연 10만원 이하의 낮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전체 개인기부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10만원 이상의 비교적 많은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의 기부는 전체 기부금의 3분의 1 정도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 5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액도 전체의 9%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2년의 경우에 비해 고액의 기부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2002년의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1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의 경우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5만원 이하의 기부자의 분포가 70%대에서 50%대로 하락했는데 이는 5~10만원을 기부한 기부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비율이 2002년 20% 정도에서 1.5배 정도 증가하여 29%에 이르고 있다. 특히 5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 2001년의 4.7%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고액기부의 비율이

2002~2005년의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1만원 이하의 소액 규모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에 비해 비교적 많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0~2005년 기간의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이 상향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방송사 등 대중매체에서 ARS를 통해 모집하는 기부가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36.9%가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사회복지기관이 28.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국제기구, 공익민간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예술문화스포츠단체나 성인취미단체 등을 통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기부처별 기부 분포에서는 신문사, 방송사 ARS를 통해 기부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액면에서 개인기부의 많은 비중을 소액 기부금이 차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문사, 방송국의 ARS를 통한 기부가 대개 소액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¹⁵⁶⁾.

〈부표 10〉 2004년 기부처별 기부분포¹⁾

기부여부	비율(%)
신문사 방송사 ARS	61.1
종교단체	36.9
사회복지기관	28.1
교육기관	5.4
국제기구	4.9
공익민간단체	4.5
청소년단체	2.8
기업재단 및 민간재단	2.8
환경단체	2.2
보건의료기관	2.0
예술문화스포츠단체	1.7
성인취미단체	1.5

주: 1) 기부처의 경우 중복되어 이루어져 전체 분포의 합이 100을 초과한다.
자료: (사)볼런티어21(2005)

156) 이런 현상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2005년 기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개인기부 현황

(사)볼런티어21이 수행한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유사한 시기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도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1년, 2003년과 2005년도에 개인들의 기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개인들의 기부에 대해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와 종교 이외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로 구분해서 조사했다. 20세 이상의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2001년도의 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 비율은 45.4% 그리고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 비율은 48%로 나타났다¹⁵⁷⁾.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의 경우 48만원,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의 경우 98,660원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남자가 평균 151,720원으로 여자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136,83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별로는 대재 이상이 175,480원 그리고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가 120,340원, 소득 수준별로는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233,40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선적 기부의 경우 기부의 동기로는 동정심, 사회 개선에 도움, 도덕적 의무감, 사회환원, 종교적 신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선적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기부처의 신뢰성, 사용 목적, 기부절차의 용이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기부처에 대한 불신, 기부처 선택의 어려움, 기부방

157) 종교적 목적과 자선적 목적을 구분하지 않던 2000년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기부 참여율은 57%로 나타났다.

법을 모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⁸⁾.

아름다운재단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는 2003년부터 개인기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01년의 조사와 차별성을 가진다. 즉, 2003년의 개인기부에 참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친척과 친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포함하고, 2001년과는 달리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011명의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부 참여율이 64.3%로 2001년보다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1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2001년도의 기부 참여율에 비해 커다란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기부금액은 기부자 평균 90,401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에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부한 기부 참여율은 20.6%로,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은 평균 57만 4천원으로 2001년도의 48만 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자선적 목적의 개인기부에서 기부금액의 규모를 보면 남성이 12만 8천원으로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기부금액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19만 5천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의 성별, 연령별 기부금액의 구조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준과 직업별로 보면 2001년의 경우와는 달리 2003년에는 고졸이 11만 9천원으로 대재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기부자들에 비해 보다 많은 기부금을, 그리고 자영업자가 32만 5천원으로 화이트칼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기부의 동기 측면을 보면 2001년도와 같이 동정심, 사회 개선을 위해, 도덕적 의무감, 종교적 신념의 순으로 기부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2001년도

158) 기부의 동기와 기부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결과는 (사)볼런티어21의 조사결과와도 유사하다.

와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 기부처의 불신, 기부처 선택의 어려움, 기부방법의 모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부참여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기부금의 사용 목적, 기부처의 신뢰성, 사회적 개선효과, 기부절차의 용이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3년간 기부를 하려는 이유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03년도에 조사된 개인기부의 기부대상별 특징을 보면 금액에서는 이익 및 경제인단체, 친인척에 대한 보조, 정당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부에 참가한 비율로(기부자의 수)보면 재해 및 불우이웃돕기, 자선모금단체, 결인/노숙자에 대한 보조,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시행된 전년도에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는 2001년, 2003년도에 대한 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도의 기부에 참여한 비율은 68.6%로 2003년도에 비해 4%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2003년도와 동일하게 기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ARS를 통한 기부, 적십자사회비, 친인척에 대한 보조(경조사비), 결인/노숙자등에 대한 보조,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단체의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02,550원으로 2003년의 9만원에 비해 상승했다. 2005년도의 기부대상별로 보면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경조사비로 가장 많은 금액인 520,400원이었고 교육기관, 이익단체,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단체 지원, 재해 및 불우이웃돕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자들 중 기부처별 기부자 수를 보면 경조사비가 628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재해 및 불우이웃돕기, 결인돕기,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돕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액의 규모면에서 2001년, 2003년도와는 달리 2005년도에는 여성이 평균 110,4000원을 기부하여 평균 9만원을 기부한 남성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평균 11만원 정도로 유사한 반면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

재 이상이 120,40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140,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부의 동기에 있어서는 2001년, 2003년에 이어 2005년에도 동정심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나눔실천의 가족 전통,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개인적 행복감, 종교적 신념이 순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나눔과 실천의 가족전통이라는 친인척 간의 도움도 개인기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처를 신뢰할 수 없어서,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 방법을 몰라서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고 있어 과거의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기부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기부대상의 분야, 기부처의 신뢰성, 기부의 사회적 개선효과, 기부의 용이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부시 고려사항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특정단체 기부를 고려하는 경우 기부처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기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1년의 조사에서는 (사)볼런티어21의 조사와 기부 참여율 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2003년의 조사부터는 포괄적 기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부 참여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일 두 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동일하다면 두 기관의 조사의 결과는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기부의 동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의 정기성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볼런티어21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¹⁵⁹⁾.

159) 기부의 정기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고 있다.

3. 기부참여율, 기부의 정기성, 기부횟수

한국사회에서 기부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기부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인기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부자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볼런티어 21의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부자들의 평균기부금액이 1999년, 2001년에 이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부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자들의 기부 참여율, 기부자들의 기부에 대한 정기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하더라도 기부 참여율이 높지 않다면 개인기부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기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들의 평균 기부금액에서는 커다란 증가가 있었더라도 기부 참여율이 50%대에서 별로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기부에 참여하는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부자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부의 정기성 여부가 현재의 기부자들의 기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액이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가 많다는 것은 기부활동을 일시적으로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기부활동에 대한 충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록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의 수가 많아 기부 참여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들의 기부가 일년에 특별한 계기에 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를 위한 저변이 잘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사)볼런티어21의 조사에서 나타난 기부 참여율을 보면 2001년 2004년 각기 52.3%, 50.6%로 50%대 초반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서도 이런 수준과 유사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서는 2001년, 2003년, 2005년 각각 48%, 64.3%, 68.6%로서 2003년과 2005년의 경우 (사)볼런티어21의 조사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의 2003년과 2005년의 조사에서는 친인척에 대한 부조, 그리고 걸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기부에 포함하고 있다¹⁶⁰⁾.

〈부표 11〉 기부 참여율, 정기성비율(1999~2004)¹⁾

(단위: %)

	2001년	2004년
기부 참여율	52.3	50.6
기부 정기성 비율(1)	24.5	21.6
기부 정기성 비율(2)	24.7	20.4

주: 1) 기부참여율은 (사)볼런티어21의 조사 결과, 기부 정기성 비율(1)은 (사)볼런티어21, 기부 정기성 비율(2)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로 2002년, 2005년의 비율임.

기부의 참여율과는 별도로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질문을 (사)볼런티어21과 아름다운재단의 개인기부 조사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볼런티어21의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질문에서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은 2001년의 경우 24.5%, 2004년에는 21.6%로 나타났다. 이같이 기부의 정기성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전체 기부자들의 75% 이상이 1년에 3,4회 이내의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160) (사)볼런티어21의 정기성조사에서는 ‘매월’, ‘분기별’, ‘반기별’ 기부를 하는 경우 정기적 기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단순히 ‘정기적 기부’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기부자들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1년 18.2%, 2003년 24.7%, 그리고 2005년 2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¹⁾. 기부의 비정기성의 문제는 비록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기부 참여율이 높았다 하더라도 기부자들의 기부의 정기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기부자들의 수는 적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기부를 경험한 사람들의 구성이 변화하는 즉, 매년 기부자들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해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몇 번의 기부활동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기부활동에 충실한 기부자를 확보했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개인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부의 참여율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기부자들 가운데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지난 1999년 개인기부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이들 기부자들 중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는 기부자들의 비율도 또한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개인기부가 이루어지는 채널을 볼 때 많은 기부자들이 ARS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의 정기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 민간기부 특히 개인기부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61) (사)볼런티어21의 조사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는 1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정기성의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4. 개인기부 정착의 세 지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인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액과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자체는 매우 중요한 개인기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개인기부문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찾아볼 수 있다. 개인기부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양적인 지표로는 우리 사회의 개인(또는 가계)가 얼마나 많이 기부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부 참여율’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에 의한 ‘기부금액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한 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개인기부가 정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중요한 양적인 지표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 즉, 1년 동안 특정한 시기에 한 두 번의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보다는 정기적으로 여러 번의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 따라서 세 번째 양적인 지표로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횟수’를 들 수 있다. 기부횟수가 많은 기부자의 수가 많아지만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는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¹⁶²⁾.

162) 강철희·김창식(2004)에서는 개인기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 노력은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의 규모로 정의되고 있고 가구소득과 부모의 기부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난 반면, 교육, 종교의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민간기부 중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가는 구성비를 보임으로서 개인기부 위주의 기부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체 민간기부 중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전의 낮았던 비중과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99~2005년의 기간 동안 민간기부액의 규모가 2.5배 정도 증가한 데 비해 개인기부의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하여 개인기부의 규모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도 개인기부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⁶³⁾. 그러나 양적인 지표상으로 개인 기부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기부의 구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양적인 측면의 지표상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들이 기부한 영역을 보면 개인기부의 최소 80% 이상이 종교분야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⁴⁾.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는 아직은 기부자들이 속한 종교단체를 위한 기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물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에서 일부는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 장학, 환경 등 사회적 공익 증진을 위한 분야에 널리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¹⁶⁵⁾.

163) 인용된 손원익(2007)의 자료에서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개인들이 기부한 기부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상속·증여 과정의 기부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개인기부의 증가는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164) 손원익(2007)에서 인용. 또한 개인기부가 종교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개인기부에 대한 서베이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1999년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에서 시행한 개인기부에 대한 서베이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전체 개인기부금액의 8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 개인기부의 금액 중 80%가 종교부문에 대한 기부로 나타나고 있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는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외부의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한 지원을 포

두 번째, 개인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계 또는 개인들이 얼마나 기부활동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 보다 많은 개인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기부금 공제신청자 수가 1999~2005년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기부활동에 참여한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에서는 기부 참가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자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⁶⁶⁾.

1999~2004년 기간 중 개인의 기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기부활동 참가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기부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개인기부(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포함)에 참여한 비율이 63%인 기부자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1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가 전체 기부금액의 86%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종교적 목적 이외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기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적 목적을 제외한 기부 참가율은 50%를 상회하는 정도였다. 이후 2001년도의 개인기부(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를 제외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2.3%가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금액은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의 조사에서는 50.6%의 기부(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를 제외)에 참여하고 평균 19.3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

함하고 있다. 개인기부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추정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전체 기부금액의 80%에서) 약 6% 정도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부로 추정되고 있다.

166) 미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89% 정도가 기부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볼런티어 21에서 시행한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9~2004년의 기간 동안 기부활동 참가율은 60%(순수 종교 목적 기부 포함)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는 60%대의 기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친인척에 대한 도움, 길거리의 걸인 등에 대한 도움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기부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일 종교적 목적을 제외한 기부를 제외한다면 기부 참여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균 개인기부의 금액은 1998년에 비해서는 이 기간 동안의 소득 증대와 개인기부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을 판단할 수 있는 양적인 지표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부에 참가한 개인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이런 지표로서 한 해 동안 아무리 기부에 참가한 인원이 많았다 하더라도 기부횟수가 1년에 1~2회에 지나지 않는 간헐적인 기부활동을 한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사회에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기부에 참여한 개인들이 한 해 동안 꾸준히 여러 번에 걸쳐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진정한 기부 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기부 참여자들의 기부횟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의 정착은 기부자 개인별 금액의 증가보다 오히려 기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기부자가 많아질 때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1999년 이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기부횟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개인기부자들이 기부금액의 증가는 기부횟수의 증가를 통해 기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부자들이 증가할 때 비로소 기부금액도 증가할 것이다.

〈부표 12〉 기부횟수의 분포¹⁾

(단위: %)

1년 동안 기부횟수	2001년	2004년
1회	11.0	10.8
2회	21.3	17.9
3회	15.8	15.3
4회	7.2	8.8
5회	13.1	12.4
6~10회	13.4	15.1
11~20회	12.7	16.3
21~50회	3.7	2.6

주: 1) 50회 이상은 생략했음
 자료: (사)볼런티어21 조사자료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부자들의 기부활동이 정기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이는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서 기부횟수가 낮은 기부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⁷⁾.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에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도 개인들의 기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부자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부횟수에 대한 조사에서 연 1~3회 기부에 참가하는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 중 50% 그리고 연 8회 이상 기부에 참가하는 기부자가 전체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부횟수가 연 8회 미만이 전체 기부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¹⁶⁸⁾. 2004년 동안에 이루어진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인들의 기부횟수가 다소간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부자들 중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

167) 자원봉사와 기부횟수와의 관계는 김인영 외(2006)참조.

168) 2003년도의 개인기부활동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서도 기부자들의 80% 이상이 비정기적인 기부자로 기부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기부의 정기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기부가 어느 상태에 있으며, 향후 개인기부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즉, 개인기부의 참여, 개인기부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개인기부의 정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몇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개인기부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손원익 · 박태규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부의 동기를 규명하고 기부 관련세제의 기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기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에서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가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특정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총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기부참가율, 개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자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활동에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로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동시에 주는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 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 (2) 자선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3)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기부의 소득공제 한도 때문에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윤극대화 모형에서도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시사점은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개별 기업의 기부규모와 당해기업의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들의 예상 기부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대효과를 산출한 후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bstract〉

A Study on Private Donation of Korea

Wonik Son · Tae-Kyu Park

This study analyzes the motivation of private donation and the effect of tax policy on private donation. It is known that the individual donation is seriously affected by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of the society. The analysis on the individual donation of Korea shows that the tax policy affects the decision of individual donation. The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y on individual donation is shown that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has been increased as the tax allowances for donation in social welfare area was increase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lossom the culture of individual donation is not only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but also the number of donation for each individual. In other words, how often each individual donates is the key index to measure the level of donation in a society. Another important finding of the previous study is that the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is deeply related to the number of individual's donation and the amount of donation. The study shows that individuals who have more experiences of volunteer work tend to donate more often and more amoun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itions are made to boost individuals'

donation in Korea;

- (1) increase tax incentives for individuals' donation
- (2)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haritable organizations
- (3) induce more active volunteer work to blossom the culture of individual donation

An empirical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finding of the analysis is that the tax rate can affect the decision of corporate donation even in the frame of profit-maximizing model as long as a part of donation is not deducted due to the limit of tax deduction.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motivation of corporate dona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corporation's situation which is affected by the amount of tax deduction available and the amount of marginal donation. We may derive the following tax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corporate donation from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xpected effects of tax policy changes should be calculated by incorpo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he marginal donation and the limit of tax deduction for each individual corporation.

손 원 익

- 미국 William Penn College 경제학과 졸업
- 미국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 미국 California-Santana Cruz 객원조교수
-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태 규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Indiana) 경제학 박사
- 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2008년 2월 25일 인쇄

2008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代) FAX: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386-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정가 8,000원